제410회국회(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4084호)
▣ 정운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4085호)

2023.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개 요 ····· 20

1. 전부개정안 구성 및 주요내용 ····· 20

2. 전부개정안의 취지 및 총괄 검토 ····· 25

Ⅳ. 주요 내용별 검토의견 ····· 35

1. 제명 및 총칙(제1편,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 35

가. 제명 및 목적(안 제1조) ····· 35

나. 정의(안 제2조) ····· 36

2.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운영(제2편,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 38

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제1장,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 38

(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안 제10조) ····· 38

(2)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독자권역 설정(안 제11조) ····· 40

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제2장,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43

3. 글로벌 생명경제 선도(제3편, 안 제15조부터 제116조까지) ····· 48

가. 생명산업 육성(제1장, 안 제15조부터 제48조까지) ····· 48

(1)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제1절, 안 제15조부터 제28조까지) ····· 48
1)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등(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 48
2) 농생명지구 내 개별법 적용의 특례 및 각종 지원(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 54
3) 기타 농생명산업 관련 지원 등(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 59
(2)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제2절, 안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 63
1) 지역특화 라이프 및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육성 특례(안 제29조) ····· 63
2)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 진흥 특례 등(안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 68
(3) 청정 에너지산업 진흥(제3절, 안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 ····· 73
1) 수소특화단지 등 육성 특례(안 제35조 및 제36조) ····· 73
2)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특례(안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 75
(4) 생명서비스산업 육성(제4절, 안 제42조부터 제48조까지) ····· 81
1)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의 진흥(안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 ····· 81
2)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특례(안 제48조) ····· 89
나. 전환산업 진흥(제2장, 한병도의원안 제49조부터 제82조까지,
정운천의원안 제49조부터 제88조까지) ····· 91
(1) 첨단소재 융복합 진흥(제1절, 안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 91
(2) 친환경 모빌리티산업 진흥(제2절, 안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 95
(3) 국제 문화관광 거점 조성(제3절, 한병도의원안 제56조부터 제68조까지,
정운천의원안 제56조부터 제74조까지) ····· 101
1) 케이팝국제교육도시의 조성(정운천의원안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 ····· 101
2) 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 지정 등(한병도의원안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정운천의원안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 105
3) 디지털치유콘텐츠 시범사업 실증 특례 등(한병도의원안 제59조부터 제68조까지,
정운천의원안 제65조부터 제74조까지) ····· 111
(4)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제4절, 한병도의원안 제69조부터 제82조까지,
정운천의원안 제75조부터 제88조까지) ····· 125
1) 친환경 산악관광특구의 지정 ····· 125
2)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 130
3) 특구 내 적용되는 각종 특례 등 ····· 138
다. 생명경제 기반 구축(제3장, 한병도의원안 제83조부터 제116조까지,
정운천의원안 제89조부터 제116조까지) ····· 148
(1)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이민·외국인근로자 및 생활인구 확대(제1절,

한병도의원안 제83조·제84조, 정운천의원안 제89조부터 제97조까지) ····· 148
1) 이민·외국인근로자 확대를 위한 특례(정운천의원안 제89조부터 제95조까지) ····· 148
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특례(한병도의원안 제83조·제84조, 정운천의원안 제96조·제97조) ····· 156
(2) 생명경제 인재거점 조성(제2절, 한병도의원안 제85조부터 제98조까지, 정운천의원안 제98조부터 제110조까지) ····· 159
1) 전북과학기술원 설립(한병도의원안 제85조) ····· 159
2) 국제학교 설립 등(한병도의원안 제86조부터 제98조까지, 정운천의원안 제98조부터 제110조까지) ·· 161
(3) 금융산업 및 투자유치 진흥(제3절, 한병도의원안 제99조부터 제113조까지, 정운천의원안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 172
1) 금융산업 진흥(한병도의원안 제99조부터 제103조까지) ····· 172
2) 투자유치 진흥(한병도의원안 제104조부터 제108조까지, 정운천의원안 제111조 및 제112조) ····· 177
3) 산업단지 등 조성 특례(한병도의원안 제109조부터 제113조까지, 정운천의원안 제113조) ····· 182
(4) 글로벌 관문 및 생명경제 거점 조성(제4절, 안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 ····· 188

4. 공정한 삶의 질 제고(제4편, 안 제117조부터 제163조까지) ····· 191
가. 균등한 정주기반과 생활환경 개선(제1장, 안 제117조부터 제136조까지) ····· 191
(1) 교통여건 개선(안 제117조부터 제123조까지) ····· 191
(2) 기타 생활환경 개선(안 제124조부터 제126조까지) ····· 197
나. 필수 의료·복지·안전체계 구축(제2장, 안 제127조부터 제134조까지) ····· 200
(1) 필수의료·복지체계 구축(안 제127조부터 제131조까지) ····· 200
(2) 안전체계 구축(안 제132조부터 제134조까지) ····· 206
다. 지역특화 발전과 민생경제 활력(제3장, 안 제135조부터 제149조까지) ····· 210
(1) 지역중소기업 등 지원·육성(안 제135조부터 제138조까지) ····· 210
(2) 섬 및 수산업 관련 지원(안 제139조부터 제144조까지) ····· 216
(3) 각종 점용·사용료, 개발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4조부터 제149조까지) ····· 221
라. 생태자원의 현명한 활용(제4장, 안 제150조부터 제162조까지) ····· 225
(1) 생명경제 녹색도시의 조성 등(안 제150조부터 152조까지) ····· 225
(2) 환경영향평가 등 권한 이양(안 제153조부터 156조까지) ····· 228
(3) 물·해양·공원관리 권한 이양(안 제157조부터 160조까지) ····· 231
(4) 각종 부담금 징수비용 특례(안 제161조부터 163조까지) ····· 235

5. 자치권 강화(제5편, 안 제164조부터 제210조까지) ····· 238
가. 자치 조직과 인사 보장(제1장, 안 제164조부터 제175조까지) ····· 238
(1) 자치조직권 특례 등(안 제164조 및 제165조) ····· 238
(2) 정원·승진·승급·채용 등 특례(안 제166조부터 170조까지) ····· 241
(3) 도의회 조직 및 의원정수·선거 등 특례(안 제171조부터 175조까지) ····· 245
나. 자치 행정의 확대(제2장, 안 제176조부터 제185조까지) ····· 255
(1) 통합지방자치단체 특례 등(안 제176조부터 제179조까지) ····· 255
(2) 주민투표 특례 등(안 제180조부터 제185조까지) ····· 263
다. 자치 교육의 실현(제3장, 안 제186조부터 제196조까지) ····· 266
(1) 교육지원청 설치 등 특례(안 제186조부터 제191조까지) ····· 266
(2) 지방교육재정 관련 특례(안 제192조부터 제196조까지) ····· 272
라. 지속가능한 자치 재정 확보(제4장, 안 제197조부터 제201조까지) ····· 277
(1) 지방교부세 특례 등(안 제197조 및 제198조) ····· 277
(2)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등(안 제199조부터 제201조까지) ····· 280
마. 감사위원회의 설치(제5장, 안 제202조부터 제210조까지) ····· 281

6. 보칙 및 벌칙(제6편 및 제7편, 안 제211조부터 제219조까지) ····· 294
가. 청문(안 제211조) ····· 294
나. 개별 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안 제216조부터 제218조까지) ····· 295

7. 부 칙 ····· 297

[참고자료]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방향, 비전 및 주요 추진 과제 ····· 301

Ⅰ. 제안경위

1. 한병도의원안

가. 발　의　자 : 한병도의원 등 23인

나. 발의연월일 : 2023. 8. 30.

다. 회부연월일 : 2022. 8. 31.

2. 정운천의원안

가. 발　의　자 : 정운천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3. 8. 30.

다. 회부연월일 : 2022. 8. 3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한병도의원안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법은 특별자치도로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핵심 요소들이 법안 제정 당시 부처 간 이견 등으로 빠지게 되면서 지난해 12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 담은 28개 조항으로 국

회를 통과하여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지적이 있음.

전북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따라서 전통농업을 기반으로 생명산업 등 첨단과학산업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생명경제 특화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전통문화와 청정자원을 활용하여 국제적 관광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등 지역의 역사적·인문적·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제15조부터 제28조까지)

1) 도지사가 농생명산업을 전북자치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적으로 거점화하기 위하여 산업적 특수성 및 위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생명산업지구를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함.

2) 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생명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도지사가 농생명산업지구에 한하여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4) 국가가 전북자치도 내에 곤충종자보급센터 설치·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꿀벌 품종개량을 위하여 도조례로 지정한

지역에 한하여 개량업무를 저해할 수 있는 개체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5) 국가가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지구 내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6)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새만금 농생명용지협의체를 두도록 함.

7)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조성된 식품전문산업단지를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

8) 도지사가 전북자치도에서 생산·선발된 유전능력이 우수한 고품질 한우를 대상으로 J-카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이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전북자치도 내 특정지역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및 헬스케어특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북자치도 내 공공기관을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북자치도의 탄소소재 의료기기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의 설립을 허가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컴퓨터·화

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도지사가 정한 지역에 한하여 의료인 또는 환자에게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함.

4) 국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을 전북자치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5) 국가가 전북자치도의 동물용의약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의 시험·검사의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6) 도지사가 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청정 에너지산업 진흥(제35조부터 제41조까지)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북자치도에 수소특화단지 및 그린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일치화를 위하여 도조례로 분산에너지 규모를 달지 정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하여 보급사업을 전북자치도에서 별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4) 도지사가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육성하며, 발전지구 주변 지역을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생명서비스산업 육성(제42조부터 제48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고, 해당 지역을 복합단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와 전북자치도가 복합단지에 입주한 연구개발기관 등에 숙소, 편의시설, 탁아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첨단소재 융복합과 모빌리티산업 진흥(제49조부터 제55조까지)

1) 도지사가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및 핵심 원재료 재활용 등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 도지사가 전기차용 이차전지 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자동차 대체부품 검사·인증장비 등을 갖춘 기관을 대체부품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4) 전북자치도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하여 구역형 유상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5) 도지사가 새만금에 드론, 무인농업기계, 자율주행차, 무인선박 및 부품 등 무인이동체산업의 기술상용화를 위한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 구축 등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

6) 도지사가 하이퍼튜브 등 차세대 철도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 특성화된 대학 등 교육기관을 운영·지원하고, 전문연구기관 및 단체를 지도·육성할 수 있도록 함.

바. 국제 문화관광 거점 조성(제56조부터 제68조까지)

1) 도지사가 케이문화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케이문화융합산업의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 도지사가 태권도의 교육·산업·관광 등의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이 태권도원에서 실시하는 국제행사 및 연수 등에 참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기준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가 전북자치도의 치유관광, 야간관광 등 지역특화 관광산업 진흥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

5) 도지사가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제69조부터 제82조까지)

1) 전북자치도 산악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존을 위하여 도지사는 산악관광특구를 지정하고, 특구의 지정·변경·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2) 산악관광특구 활용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구 지정 시에는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택지개발계획 수립,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

3) 도지사가 산악관광특구사업 시행자를 지정 및 취소 또는 대체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4)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건축허가,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도로점용허가 등 각종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함.

5) 산악관광특구사업을 위하여 산지전용, 행위제한 등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백두대간 보호지역 행위제한에 관한 산림청장과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6) 산악관광특구 개발촉진을 위하여 초지법, 자연공원법, 산림보호법 등 행위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아. 생명경제 인재거점 조성(제85조부터 제98조까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생명경제 분야 혁신을 선도할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2) 전북자치도가 글로벌경쟁력 증진과 기업·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학교법인이 전북자치도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3) 도지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학의 학생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자. 금융산업 및 투자유치 진흥(제99조부터 제113조까지)

1) 금융위원회가 전북자치도 내에 있는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의 금융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도지사가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을 통한 생명경제 금융산업(연금 및 보험업과 부동산간접투자상품 및 연기금·보험 상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업) 발전을 위하여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도지사가 전북핀테크육성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북핀테크기업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사항을 심사하는 전북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함.

4) 지방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한 기준 등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5) 도지사가 전북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자치도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함.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생명경제 연구산업진흥을 위하여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새만금사업지역에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차. 의료·복지·안전 체계와 민생경제 활력(제127조부터 제149조까지)

1) 도지사가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성장촉진지역 내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과 의료기관·연구기관 등을 전북자치도에 우선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도지사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 신청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활성화라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교·공공급식 등에 전북자치도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함.

5) 도지사가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도시 외 지역을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카. 생태자원의 현명한 활용(제150조부터 제163조까지)

1) 이 법에서 지정한 지구, 특구, 산업단지 및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세부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2) 「자연환경보전법」의 자연경관영향협의는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자치도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3) 기후변화영향평가에 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도록 함.

타. 자치권 강화(제164조부터 210조까지)

1)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정원이 증가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2) 지방의회의원의 정책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두는 등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전북자치도 관할 구역 안의 시·군 통합은 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기간을 10년으로 함.

4)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5)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책정 등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함.

2. 정운천의원안

제안이유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고 내년 1월 공식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특별자치도로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핵심 요소들이 빠져있음.

제주특별자치도법의 경우 2006년 법 제정 당시에 300여 개 이상의 조문으로 구성된 법안이 수정가결되었으며, 강원특별자치도법은 당초 25개 조문에서 84개 조문으로 늘어난 전부개정안이 2023년 5월 25일에 국회 본회

의를 통과하였으나, 전북특별자치도법은 특별자치도 설치 근거와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28개 조항에 불과해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과 관련된 지역특화산업의 진흥과 국제적 인재의 양성,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지역특화형 이민제도 마련, 자치권의 강화와 균형발전 추진 등에 대한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제15조부터 제28조까지)

1) 도지사가 농생명산업을 전북자치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적으로 거점화하기 위하여 산업적 특수성 및 위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생명산업지구를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함.

2) 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생명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도지사가 농생명산업지구에 한하여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4) 국가가 전북자치도 내에 곤충종자보급센터 설치·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꿀벌 품종개량을 위하여 도조례로 지정한 지역에 한하여 개량업무를 저해할 수 있는 개체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5) 국가가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지구 내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6)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새만금 농생명용지협의체를 두도록 함.

7)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조성된 식품전문산업단지를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

8) 도지사가 전북자치도에서 생산·선발된 유전능력이 우수한 고품질 한우를 대상으로 J-카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이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전북자치도 내 특정지역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및 헬스케어특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북자치도 내 공공기관을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북자치도의 탄소소재 의료기기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의 설립을 허가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도지사가 정한 지역에 한하여 의료인 또는 환자에게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함.

4) 국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을 전북자치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5) 국가가 전북자치도의 동물용의약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의 시험·검사의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6) 도지사가 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청정 에너지산업 진흥(제35조부터 제41조까지)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북자치도에 수소특화단지 및 그린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일치화를 위하여 도조례로 분산에너지 규모를 달지 정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하여 보급사업을 전북자치도에서 별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4) 도지사가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육성하며, 발전지구 주변 지역을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생명서비스산업 육성(제42조부터 제48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고, 해당 지역을 복합단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와 전북자치도가 복합단지에 입주한 연구개발기관 등에 숙소,

편의시설, 탁아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첨단소재 융복합과 모빌리티산업 진흥(제49조부터 제55조까지)

1) 도지사가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및 핵심 원재료 재활용 등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 도지사가 전기차용 이차전지 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자동차 대체부품 검사·인증장비 등을 갖춘 기관을 대체부품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4) 전북자치도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하여 구역형 유상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5) 도지사가 새만금에 드론, 무인농업기계, 자율주행차, 무인선박 및 부품 등 무인이동체산업의 기술상용화를 위한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 구축 등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

6) 도지사가 하이퍼튜브 등 차세대 철도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 특성화된 대학 등 교육기관을 운영·지원하고, 전문연구기관 및 단체를 지도·육성할 수 있도록 함.

바. 국제 문화관광 거점 조성(제56조부터 제74조까지)

1)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가 새만금사업지역을 케이팝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케이팝국제교육도시로 지정하고, 케이팝국제학

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2) 도지사가 케이문화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케이문화융합산업의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도지사가 태권도의 교육·산업·관광 등의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이 태권도원에서 실시하는 국제행사 및 연수 등에 참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기준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4) 국가가 전북자치도의 치유관광, 야간관광 등 지역특화 관광산업 진흥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

6) 도지사가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제75조부터 제88조까지)

1) 전북자치도 산악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존을 위하여 도지사는 산악관광특구를 지정하고, 특구의 지정·변경·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2) 산악관광특구 활용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구 지정 시에는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택지개발계획 수립,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

3) 도지사가 산악관광특구사업 시행자를 지정 및 취소 또는 대체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4)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건축허가,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도로점용허가 등 각종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함.

5) 산악관광특구사업을 위하여 산지전용, 행위제한 등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백두대간 보호지역 행위제한에 관한 산림청장과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6) 산악관광특구 개발촉진을 위하여 초지법, 자연공원법, 산림보호법 등 행위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아. 이민·외국인근로자 및 생활인구 확대(제89조부터 제97조까지)

1) 법무부장관이 전북자치도의 설치 취지를 살려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전북자치도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 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2) 도지사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장기체류자격 중 유학자격의 규정을 받는 전북자치도 내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학생 부모에게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3) 법무부장관이 전북자치도 내의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

교,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 등에 입학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도지사가 추천하면 체류자격 요건을 달리 부여할 수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에게 도지사가 추천하면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중 전북자치도에 거주 또는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전북자치도 이민자격”이라고 하고, 법무부장관이 전북자치도 이민자격을 도지사의 추천에 따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5) 도지사가 새만금 사업지역에 새만금 고용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새만금 고용특구 지역을 상생형일자리지원사업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추천하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자. 생명경제 인재거점 조성(제98조부터 제110조까지)

1) 전북자치도가 글로벌경쟁력 증진과 기업·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학교법인이 전북자치도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2) 도지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학의 학생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차. 의료·복지·안전 체계와 민생경제 활력(제127조부터 제149조까지)

1) 도지사가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성장촉진지역 내 지방의료원의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과 의료기관·연구기관 등을 전북자치도에 우선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도지사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 신청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활성화라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교·공공급식 등에 전북자치도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함.

5) 도지사가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도시 외 지역을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카. 생태자원의 현명한 활용(제150조부터 제163조까지)

1) 이 법에서 지정한 지구, 특구, 산업단지 및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세부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2) 「자연환경보전법」의 자연경관영향협의는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자치도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3) 기후변화영향평가에 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도록 함.

타. 자치권 강화(제164조부터 210조까지)

1)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정원이 증가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2) 지방의회의원의 정책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두는 등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전북자치도 관할 구역 안의 시·군 통합은 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기간을 10년으로 함.

4)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5)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책정 등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함.

Ⅲ. 개 요

1. 전부개정안 구성 및 주요내용

한병도의원과 정운천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본칙 7편·14장·12절 총 219개 규정 및 부칙 6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 성	한병도의원안	정운천의원안
본 칙		
제1편 총칙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2편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운영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제1장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2장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3편 글로벌 생명경제 선도	**안 제15조부터 제116조까지**	
제1장 생명산업 육성	**안 제15조부터 제48조까지**	
제1절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안 제1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절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	안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제3절 청정 에너지산업 진흥	안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	
제4절 생명서비스산업 육성	안 제42조부터 제48조까지	
제2장 전환산업 진흥	**안 제49조부터 제82조(제88조)까지**	
제1절 첨단소재 융복합 진흥	안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제2절 친환경 모빌리티산업 진흥	안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3절 국제 문화관광 거점 조성	안 제56조부터 제68조까지	안 제56조부터 제74조까지
제4절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	안 제69조부터 제82조까지	안 제75조부터 제88조까지
제3장 생명경제 기반 구축	**안 제83조(제89조)부터 제116조까지**	
제1절 인구감소 대응 생활인구 확대 (제1절 이민·외국인근로자 및 생활인구 확대)	안 제83조 및 제84조	안 제89조부터 제97조까지
제2절 생명경제 인재거점 조성	안 제85조부터 제98조까지	안 제98조부터 제110조까지

구 성	한병도의원안	정운천의원안
제3절 금융산업 및 투자유치 진흥	안 제99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1조부터 제113조까지
제4절 글로벌 관문 및 생명경제 거점 조성	안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	
제4편 공정한 삶의 질 제고	**안 제117조부터 제163조까지**	
제1장 균등한 정주기반과 생활환경 개선	안 제117조부터 제126조까지	
제2장 필수 의료·복지·안전체계 구축	안 제127조부터 제134조까지	
제3장 지역특화 발전과 민생경제 활력	안 제135조부터 제149조까지	
제4장 생태자원의 현명한 활용	안 제150조부터 제163조까지	
제5편 자치권 강화	**안 제164조부터 제210조까지**	
제1장 자치 조직과 인사 보장	안 제164조부터 제175조까지	
제2장 자치 행정의 확대	안 제176조부터 제179조까지	
제3장 자치 교육의 실현	안 제186조부터 제196조까지	
제4장 지속가능한 자치 재정 확보	안 제197조부터 제201조까지	
제5장 감사위원회의 설치	안 제202조부터 제210조까지	
제6편 보칙	**안 제211조부터 제215조까지**	
제7편 벌칙	**안 제216조부터 제219조까지**	
부 칙	**제1조부터 제6조까지**	

*괄호는 정운천의원안 기준 절 제목 및 조 번호

현행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본칙 28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조문의 개수로만 본다면 한병도의원안과 정운천의원안은 각각 191개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한병도의원안과 정운천의원안의 219개 조항 중 206개 조항은 조 번호를 제외한 실질적인 내용이 동일하며, 각 개정안에서 차별화된 조문은 각각 13개 조항임.

<한병도의원안과 정운천의원안의 차이>

구 분	분 야	조 번호 및 제목
한병도 의원안	인재육성 및 금융산업 진흥	제85조(전북과학기술원 설립 특례)
		제99조(금융전문인력 양성 특례)
		제100조(생명경제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 지원 특례)
		제101조(생명경제 금융교육 특례)
		제102조(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 특례)
		제103조(전자적 투자조언장치 활용 특례)
		제104조(새만금개발 촉진을 위한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등 금융 특례)
	투자유치	제106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특례)
		제107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109조(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특례)
		제110조(연구개발특구의 육성 특례)
		제111조(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등 특례)
		제112조(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특례)
정운천 의원안	국제문화 거점 조성	제56조(케이팝국제교육도시 지정·지원 등 특례)
		제57조(케이팝국제학교 설립 등)
		제5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9조(케이팝국제학교 설립 자격)
		제60조(케이팝국제학교 설립 승인 및 운영 등)
		제61조(케이팝 육성기업 지원)
	이민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89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제90조(외국인 유학생 특례)
		제91조(중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특례)
		제92조(전북자치도 이민비자자격 신설 특례)
		제93조(기술연수자격 확대 특례)
		제94조(새만금 고용특구 특례)
		제95조(해외 우수창업기업 체류자격 지원시설 특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한병도의원안과 정운천의원안의 공통부분과 차별화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공통부분으로, ①농생명산업지구의 지정·운영 근거, 원격의료 특례,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범사업 특례,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 조성·운영 근거,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촉진 특례,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운영 근거, 국제학교 설립·운영 근거를 규정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를 글로벌 생명경제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특례 및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제3편),

②버스 공영제 지원 특례, 의료취약지 응급의료 특례, 낚시어선의 이용 등 특례, 환경영향평가 권한이양 등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있으며(제4편),

③자치조직권 특례,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등 특례,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독립 설치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등 전북자치도 및 도교육청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각종 특례를 마련하고 있음(제5편).

이에 더해 한병도의원안은 전북자치도의 인재육성, 금융산업 진흥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하여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금융전문인력 양성,

전북자치도 투자진흥지구 지정·운영 근거 등을 추가로 마련하고 있고,

정운천의원안은 전북자치도의 국제문화 거점 조성, 이민·외국인근로자 고용 확대를 위하여 케이팝국제교육도시 및 케이팝국제학교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전북자치도 이민비자자격제도를 신설하고 있음.

2. 전부개정안의 취지 및 총괄 검토

현행법은 2023. 1. 17. 제정되어 2024. 1. 18.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전라북도를 폐지하고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당초 현행법 제정안[1]에는 발전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現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계정 설치,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운영 등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원방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어 현행법에는 전북자치도 설치 외 자치권 강화 등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은 부재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2]

이에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전북자치도 및 전북자치도 내 시·군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규제 완화, 국가의 권한 이양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전북자치도의 자립적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체계상·내용상·법제상 다음 사항을 고려할

---

1) [2115222]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안호영의원 등 17인)
[211690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정운천의원 등 13인)
[2116907]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한병도의원 등 21인)
이상 세 건 병합심사

2) '특별자치도' 간판만 바꾸나?..내실화 '과제', 전주MBC, 2022. 12. 29.
https://www.jmbc.co.kr/news/view/29252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체계와 관련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법」"이라 함)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는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국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거나, 새만금사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도지사가 각종 사업·시책·계획을 시행·수립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3)]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새만금법」은 국가가 모든 권한을 가진 채 새만금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으로 현행법과 취지·목적의 차이가 있는 점, 「새만금법」에 따른 각종 사업은 새만금기본계획에 따라 새만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각종 규정은 현행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다만, 새만금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여전히 진행 중인 사업인 점, 사업지역은 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지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신규사업은 기본계획 및 각 부지의 용도와 조화롭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①국가의 권한 이양 등 새만금사업의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필요시 「새만금법」에 직접 반영할 필요가 있고,

3) 정운천의원안 제56조(케이팝국제교유도시 지정·지원 등 특례), 한병도의원안 제104조(새만금개발 촉진을 위한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등 금융 특례)·제109조(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특례)·제114조(새만금의 생명경제 거점화를 위한 특례) 등

②도지사의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각종 사업·시책 시행 등의 내용은 새만금사업의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새만금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새만금청장과의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수렴 등 보완 장치의 도입을 전제로 입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내용과 관련하여, ①글로벌생명경제도시라는 전북자치도 비전과의 연계성 및 체계적 달성을 위한 수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이고, ②국가의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에 대하여는 그 적정성 및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①먼저, 개정안은 농업, 금융 등 개별 분야와 관련하여 전북자치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나열하고 있을 뿐, 어떠한 방식으로 각 사업과 국가의 지원이 조합되어 글로벌생명경제도시라는 비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 방향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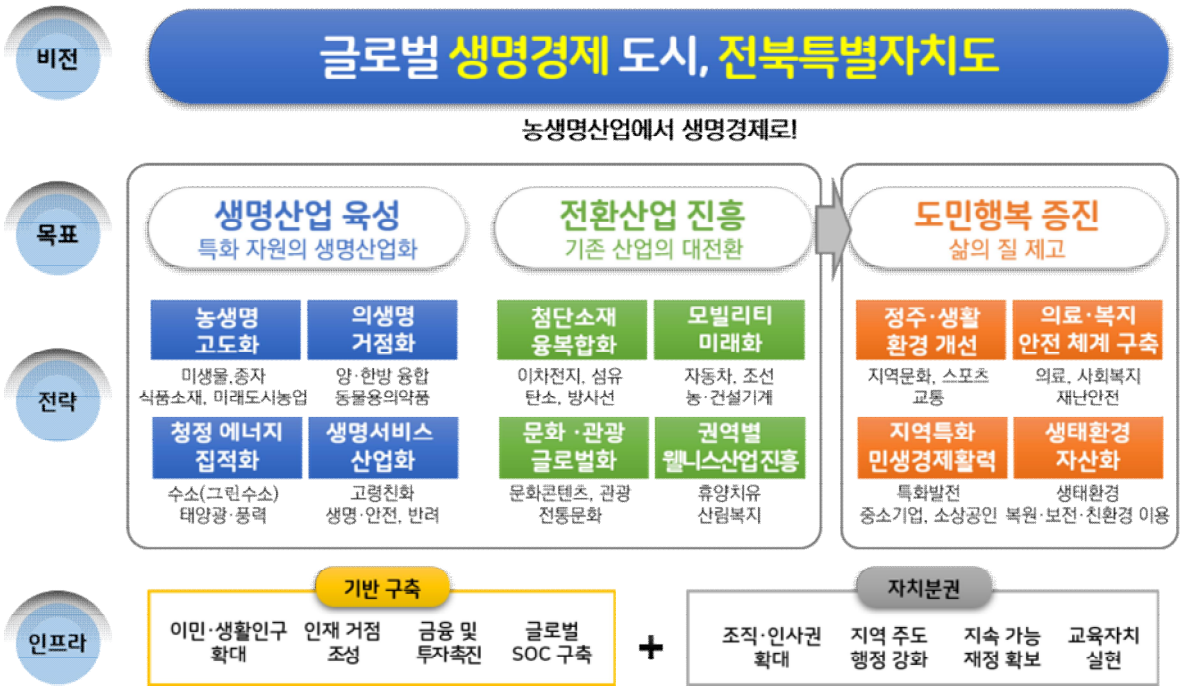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국제자유도시’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을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계획 수립, 개발사업 실시절차, 추진체계, 각종 특례 및 권한이양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미래산업글로벌도시’라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종합계획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이 존재함.

반면, 개정안은 특례 및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개별 규정에서 해당 규정의 목적에 ‘생명경제도시 실현’, ‘생명경제 기반 구축’, ‘생명경제 달성’. ‘생명경제 분야 선도’ 등의 표현을 일부 사용하고 있을 뿐,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각종 계획 수립·시행 및 관련된 각종 사업·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이 부재함.

전라북도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는 아래 그림과 같은 체계를 통해 달성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나,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및 절차 등이 현행법 및 개정안에 부재하므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의 구체적인 실현방안, 절차, 추진체계 등을 입법에 반영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비전체계>



②다음, 개정안에는 각종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를 위한 특례 부여 외에도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거나 그에 필요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음.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 규정 현황>

연번	관련 조문
1	제16조 (농생명지구 기본계획 수립 특례)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주요 시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19조(농생명지구 내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스마트농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제21조(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 도지사는 농생명지구 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연번	관련 조문
4	제22조(농생명지구 내 곤충산업 육성 특례) ② 국가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의 보급을 위하여 양봉 신품종 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시설을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지구 내에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	제23조(농생명지구 내 반려동물산업 육성)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지구 내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6	제30조(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 진흥 특례) ⑤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는 제4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	제31조(원격의료 특례) ④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자는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와 전북자치도는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8	제33조(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 특례)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신약 등 혁신형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의 시험·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9	제34조(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 특례)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0	제35조(수소특화단지 등 육성 특례) ③ 도지사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전북자치도 수소특화단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전북자치도 내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1	제44조(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 진흥계획의 수립) ③ 국가는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 진흥계획 수립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2	제46조(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지원) ⑥ 국가와 전북자치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3	제47조(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국가와 전북자치도는 재단 및 복합단지에 입주한 연구개발기관 등에 숙소, 편의시설, 탁아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4	제48조(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특례)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및 실증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5	제49조(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6	제50조(전기차용 이차전지 기술개발 시범사업 지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호 협의된 시범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7	제53조(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촉진 특례) ③ 국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전북자치도 내 자율주행자동차 도입·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18	제54조(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무인이동체 종합실증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9	제55조(하이퍼튜브 등 차세대 철도기술 개발 특례) ④ 국가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연번	관련 조문
20	제56조(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진흥지구 조성과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진흥지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가는 진흥지구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1	제56조(케이팝국제교육도시 지정 지원 등 특례) ③ 국가와 전북자치도는 케이팝국제교육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학교 설립 및 케이팝국제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2	제57조(케이문화융합산업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등 특례) ② 도지사는 케이문화융합콘텐츠의 효율적인 제작과 품질 향상, 콘텐츠 간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시행을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학기술, 디자인, 문화예술, 문화유산, 인문사회 등 다양한 학문 분야 간의 교류와 융합에 기반을 둔 케이문화융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설립된 콘텐츠 관련 기관을 연구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지정된 연구 주관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4	제59조(디지털치유콘텐츠 시범사업 실증 특례)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디지털치유콘텐츠 시범사업 추진 및 실증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5	제60조(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특례)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도지사가 육성·지원하는 이스포츠대회에 대하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6	제61조(태권도특구 지정 및 운영 특례) ③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구의 활성화 및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7	제63조(지역특화 관광산업의 육성) ① 도지사는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8	② 도지사는 야간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야간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9	③ 도지사는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의 진흥 및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전통무예 체험관광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0	제64조(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북자치도 내의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1	제65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산업과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2	제66조(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②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국제기구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3	제79조(친환경 산악관광특구의 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 ①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산악관

연번	관련 조문
	광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4	제82조(산림문화휴양복지 특례)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북자치도 내 지역특화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5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북자치도 내 지역특화 산림복지지구 등에 대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산림복지지구 등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6	제113조(국가 IT창업특구 조성·운영)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창업특구의 성장과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7	제120조(광역교통시설 국비 추가지원 특례) 국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중 전북자치도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38	제121조(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지원 특례) 국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0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를 건설·개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39	제128조(성장촉진지역 지방의료원 운영 지원 특례) 국가는 전북자치도 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에 설립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에 한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0	제130조(보건·복지 시설 설치·운영 기준 특례)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1	제136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례) 도지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의 기준을 달리 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활성화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2	제150조(생명경제 녹색도시의 조성)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명경제 녹색도시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3	제151조(지역특화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 등)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의 환경교육계획 시행이 국민의 환경보전의식을 향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범도시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고 환경교육도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4	제152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5	제177조(특별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특례) ② 국가는 「지방재정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46	제197조(지방교부세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북자치도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시·군 포함)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에 100분의 125를 곱한 금액을 교부한

연번	관련 조문
	다.
47	제201조(지방소비세 안분기준 변경 특례) 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하는 지방소비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가중치에도 불구하고 가중치를 100분의 500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조번호는 한병도의원안 기준, 연번 21을 제외한 나머지는 한병도의원안과 정운천의원안 공통사항임. 연번 21은 정운천의원안 한정

현행법 및 개정안에 따라 전라북도를 폐지하고 전북자치도를 설치하는 목적은 1)전북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2)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개정안의 경우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에 있으므로, 개정안에 포함된 각종 규정들은 전북자치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해야 함.

그런데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은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이나 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적절한 방안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최소한으로 입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의 국가의 재정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규정들에 대하여 규제개선을 통한 자율 성장이 우선시 되는 특별자치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국가의 재정지원은 지양할 필요가 있고, 유사사례인 강원특별자치도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과다한 부분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셋째, 법제와 관련하여, 전북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각종 정책을 함축하고 있는 특수한 용어·개념이 그대로 법 문장에 반영되어 있어 일반 국민의 이해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간결하고 일반화된 법률용어 또는 개념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정안에는 J-카우, 국가IT창업특구, 디지털치유콘텐츠, 태권도원, 전기차, 치유관광, 디지털헬스케어산업, 그린수소 등 영문자가 섞인 표현,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따른 브랜드 명칭, 개별 법령상 정의가 미비하거나 공식적인 정의와 다른 용어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개별 규정의 심사과정에서 이를 일반화된 용어로 순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의 개별 규정에 대하여는 전라북도의 지역적 특색 및 필요성의 반영 여부,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집행권한을 전북자치도에 이양하는 것의 적정성, 개별법과의 정합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도입여부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Ⅳ. 주요 내용별 검토의견

1. 제명 및 총칙(제1편,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가. 제명 및 목적(안 제1조)

현 행	개 정 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

개정안은 현행법의 제명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있음.

또한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라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함) 설치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

로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을 통한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추가하고 있음.

제명과 목적은 해당 법률의 내용과 해당 법률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반영되어야 하는 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 등 관련 본칙 규정의 도입 여부에 따라 제명 및 목적규정의 적절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정의(안 제2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명경제”란 생명과 친환경 성장을 목표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공익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글로벌생명경제도시”(이하 “생명경제도시”라 한다)란 생명경제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적 기준을 적용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개정안은 생명경제, 글로벌생명경제도시와 관련된 정의를 각각 신설하고 있음.

전라북도에 따르면 글로벌생명경제도시는 ‘기존 적자생존 경제를 지

속가능한 공존·공영의 생명경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대한민국 생명경제 중심을 넘어 세계 생명경제를 선도하는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전북자치도의 비전을 함축하는 표현에 해당하며,

'특별자치도'와 함께 제명에 해당 용어가 포함되어 있고, 글로벌생명경제도시의 조성을 위한 별도의 편과 장이 존재하는 등 개정안 전체에 걸쳐 사용되는 용어인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어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도법」"이라 함) 및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도법」"이라 함)도 각각 국제자유도시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2.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운영(제2편,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제1장,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안 제10조)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전북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제10조(전북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 또는 도의회 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또는 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조례·규칙 또는 도의 조례·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자치도의 조례·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 (현행과 같음)
⑦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또는 도세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를 시 또는 군과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에 전북자치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신 설>	⑨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시장 또는 군수와 동격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도지사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개정안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인용한

경우로서 전북자치도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를 시·군 또는 시장·군수와 동격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전북자치도 또는 전북자치도지사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함)와 같이 관할 구역에 시 또는 군을 유지하는 형태로 설치되는 전북자치도의 특성에 맞추어 관계 법령 상의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2)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독자권역 설정(안 제11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독자권역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 국토의 공간구조 및 기능 분담 등과 관련하여 전북자치도를 독자권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국토부장관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독자권역으로서 전북자치도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③ 국토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독자권역으로서 전북자치도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안이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4] 수립·변경시 전북자치도를 독자권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북자치도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안이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전라북도는 그간 국토종합계획에서 일관된 권역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설명임.

<국토종합계획상 전라북도의 권역 현황>

차 수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4차 수정	제4차 재수정	제5차
전라북도 권 역	금강유역권 전주권	서남권	전북권	군산·장항권	전북권	호남권	권역 미설정
기간	72'~81'	81'~90'	91'~99'	00'~20	06'~20'	11'~20'	20'~40'

※자료: 전라북도 바탕으로 재구성

4) **「국토기본법」**

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① 이 법에서 "국토계획"이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② 국토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종합계획,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한다.

1. 국토종합계획: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다만, 국토종합계획은 행정계획[5]으로서 계획 수립권자에게 목표의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의 선택 및 조정에 있어 폭넓은 재량(계획재량)이 인정되는 바, 개정안과 같이 계획의 구체적인 수립 방향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행정계획의 특성상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 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단수 또는 복수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는 별도의 권역 자체를 설정하고 있지 않은 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호 협의하에 설정한 권역을 대상으로 하여 '초광역권계획'[6]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5) 행정주체 또는 그 기관이 일정한 행정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선정하고 그러한 수단들을 조정하고 종합화한 것(행정법강의, 박균성)

6) **「국토기본법」**

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② 국토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종합계획,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한다.

1의2. 초광역권계획: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이하 "초광역권"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제2장,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전북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전북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전북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 ---------- ---------- ---------- ---------- ---------- ---------- ---------- ---------- ---------- ----------.
1. 전북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1. (현행과 같음)
2. 전북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3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2. (현행과 같음)
3. 제4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전북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신 설>	5.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
<신 설>	6.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과 그에

현 행	개 정 안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신 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8. (현행과 같음)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⑦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원위원회 심의 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위원회 심의 결과의 조치 등)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규제자유화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자치도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북자치도는 생명경제도시 조성에 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조례에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과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전북자치도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현 행	개 정 안
	규제를 도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와 규제개혁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원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후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현행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사항으로 전북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등 4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에 ①전북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고령친화·사회서비스복합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 ③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전과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④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안 제12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행정규제자유화 추진에 관한 실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4조).

개정안에서 추가하려는 심의사항 중 ①행정규제자유화 및 ④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은 「제주도법」 및 「강원도법」에도 포함되어 있는 점, 현행법의 제정목적, 전북자치도의 설치목적, 지원위원회의 기능 등에 비추어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②고령친화·사회서비스복합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 ③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전과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은 각각 개정안에서 신설하는 본칙규정의 도입여부에 맞추어 조정이 필요해 보임.

3. 글로벌 생명경제 선도(제3편, 안 제15조부터 제116조까지)

가. 생명산업 육성(제1장, 안 제15조부터 제48조까지)

(1)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제1절, 안 제15조부터 제28조까지)

1)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등(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농생명산업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을 전북자치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적으로 거점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도내 지역을 농생명산업지구(이하 “농생명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농생명산업에 대한 기반을 갖추고 산업을 확장·발전시킬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것 2.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3. 환경적·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의 농생명지구의 종류 및 기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농생명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 (농생명지구 기본계획 수립 특례)** ① 도지사는 농생명지구 지정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관할지역의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농생명지구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현 행	개 정 안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각 특화산업의 집적도, 시너지 효과 및 지역적 환경을 고려하여 산업별 특성에 맞게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농생명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농생명산업의 세부 분야별 농생명지구 지정 계획 3. 농생명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4. 농생명산업 진흥과 농생명지구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농생명산업 진흥과 농생명지구의 종합적·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주요 시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농생명지구 변경 및 해제)** ① 도지사는 정책 및 환경 변화로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농생명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농생명산업을 전북자치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적으로 거점화하기 위하여 농생명산업지구(이하 “농생명지구”라 함)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농생명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5년 단위 농생명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농생명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

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각종 법령 적용상의 특례가 인정되는 농생명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농생명산업'은 제3편제1절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나, 개정안 외 다른 법률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은 아니고, 그 의미가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농생명지구의 지정 절차에 대하여는 보완이 필요해 보임.

먼저, 농생명지구 지정 시 각종 개별법 적용의 특례 및 지원이 이루어지는 바, 지구 내 주민, 관련 산업 종사자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민의견청취, 지형도면 고시 등의 절차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다음, 농생명지구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①협의대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농생명지구에서 적용되는 특례는 농생명산업과 관련된 특례 외에 외국인근로자 파견근로 유연화(안 제25조[7]) 등의 분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

7) **안 제25조(농생명지구 내 외국인근로자의 파견근로 유연화 특례)**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지구 내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외국인근로자의 파견이 가능한 업무의 종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기본계획 외에 1년 단위 지구 지정계획 또는 시행계획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도지사는 5년 단위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만 하면 농생명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기본계획에는 농생명산업의 발전목표, 세부 분야별 농생명지구 지정계획, 농생명지구 활성화시책 등 기본적이고 추상적인 사항만 포함되어 있어 기본계획을 통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떠한 형태의 농생명지구가 지정·운영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관계 입법례를 참고하여, 농생명지구를 지정시 기본계획이 아닌 지구의 위치, 면적 등 실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지구 지정계획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관계 입법례>

「제주도법」

제221조(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등) ①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일정 지역을 국제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도시(이하 “영어교육도시”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영어교육도시의 개발은 「도시개발법」 제3조, 제3조의2 및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를 따른다.

「도시개발법」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제3조의2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이나 결합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6. 인구수용계획[분양주택(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및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분한 주택별 수용계획을 포함한다]
7. 토지이용계획
7의2. 제25조의2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8. 교통처리계획
9. 환경보전계획
10.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11.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2. 재원조달계획
13.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14.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5.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16. 제21조의2에 따른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특구육성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구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첨단기술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5.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定住)를 위한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8. 특구 운영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9.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10. 투자의 확대 및 재원(財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1. 특구의 체계적인 개발에 대한 사항
12. 특구의 산업 및 기술의 특성화 전략에 관한 사항
13. 특구 및 다른 지역과의 연계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14. 특구 내 테스트베드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하거나 변경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구별로 특구의 개발에 관한 특구개발계획(이하 “특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특구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특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구의 명칭·위치
2. 대상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3. 특구의 개발 필요성
4. 대상 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7. 재원조달방법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
10. 교통처리계획
11. 대학·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
12. 보건의료·교육·복지 시설 설치계획
13. 환경보전계획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생명지구 지정·변경·해제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환경부는 농생명지구 기본계획 수립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절차상, 내용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2) 농생명지구 내 개별법 적용의 특례 및 각종 지원(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농생명지구 내 농지법 적용의 특례)** ① 도지사는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지구 내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지구에 한하여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협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의(농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농지법」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지구에 한하여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농생명지구 내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 ① 도지사는

현 행	개 정 안
	농생명지구 내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스마트농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농생명지구 내 농어촌정비 특례)** ①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지구 내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지구에 한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2조제1항(공유지만 해당한다)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 및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 도지사는 농생명지구 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식품 및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집적화 단지 조성과 기업 등 지원 2. 민간육종단지 및 종자생명클러스터 입주 기업 등 지원 3.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스마트산지유통 시설 등 지원 4. 약용작물 육성을 위한 연구·가공·유통 시설 등 지원 5. 저탄소농산물·친환경농산물·우수농산물관리 등 인증 농산물의 생산·유통 지원
<신 설>	**제22조(농생명지구 내 곤충산업 육성 특례)** ① 국가는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지구 내 곤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곤충종자보급센터 설치·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② 국가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의 보급을 위하여 양봉 신품종 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시설을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지구 내에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꿀벌 품종개량을 위하여 도조례로 지정한 지역에 개량업무를 저해할 수 있는 개체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지구에 한하여 개량된 꿀벌 품종을 보급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농생명지구 내 반려동물산업 육성)** ① 도지사는 농생명지구 내에서 반려동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지구 내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농생명지구 내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등 특례)** ①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 중 「종자산업법」 제13조에 따른 종자기술연구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민간육종연구단지 내 재산을 입주기업 및 관련 기관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 농업인 또는 영농법인이 농생명지구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목적으로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농지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기간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농생명지구 내 외국인근로자의 파견근로 유연화 특례)**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지구 내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

현 행	개 정 안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외국인근로자의 파견이 가능한 업무의 종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농생명지구 내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허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20만 제곱미터 이상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안 제18조 및 제20조),

농생명지구 내 스마트농업, 진흥사업, 곤충산업, 양봉산업,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며(안 제19조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그 밖에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등 특례를 두고, 농생명지구 내 외국인근로자의 파견가능 업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25조).

개정안에 대하여는 전국에 산재한 농업진흥지역, 농지 등의 통일된 기준에 따른 일관된 관리 필요성과 전북자치도의 자율적 운영 필요성,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등 국가가 주도하여 수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국가의 추가적인 행·재정적 지원의 필요성, 과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 신설에 따른 국가의 부담 및 불필요한 기대형성 가능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안 제18조, 안 제22조제2항·제3항, 안 제23조제2항 및 안 제24조제2항의 경우 국토 및 농지의 체계적 관리 및 우량농지 보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관련 입법례, 현행 제도의 형해화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반려동물산업’은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수입업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는 안 제24조제1항의 경우 특례 적용대상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의계약이 일반화될 우려가 있고,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고용노동부는 안 제25조의 경우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력,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이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파견제도에 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경과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기타 농생명산업 관련 지원 등(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6조(새만금 농생명용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4조에 따른 농업용지(이하 “새만금 농생명용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관리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새만금 농생명용지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관한 사항 3.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등 4. 그 밖에 새만금 농생명용지 개발·관리·처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협의체는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협의체 위원장은 전북자치도의 새만금 농생명용지 관련 부지사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림축산식품부의 새만금 농생명용지 관련 국장, 전북자치도의 새만금 농생명용지 관련 국장 2. 새만금 농생명용지 관할 시·군의 부단체장 3. 새만금 농생명용지 개발 기반시설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등의 부사장급 관계자 4. 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등 ④ 위촉직 민간전문가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체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

현 행	개 정 안
	우 정례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수시 회의는 필요 시 개최한다.
<신 설>	**제27조(국가식품클러스터에 관한 특례)**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성된 식품전문산업단지는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28조(한우산업 보호·육성)** ① 도지사는 고능력 한우 선발 및 관리를 위한 우량집단 구축을 위하여 전북자치도에서 생산·선발된 유전능력이 우수한 고품질 한우를 대상으로 J-카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J-카우 지정에 대한 세부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J-카우에 대한 육종개량 시험연구와 보호·육성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전북자치도 한우의 개량, 그 유전자원의 수집 보존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축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전북자치도 내 한우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서 한우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의 기준과 사육규모 등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안 제26조)

개정안은 「새만금법」에 따라 조성된 농업용지(이하 “새만금 농업용지”라 함)의 효율적인 개발·관리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새만금 농생명용지협의체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농생명지구의 지정여부와 관계 없이 새만금 농업용지에 적용되므로, 법 체계상 「새만금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새만금법」과의 상충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27조)

개정안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식품전문산업단지를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8]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전라북도 익산시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식품전문산업단지)에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위를 부여하고,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으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는 현재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어 2단계 산업단지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상황, 공모절차를 거쳐 기 선정된 연구산업진흥단지(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8)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연구산업진흥단지의 조성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지정할 수 있다.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경우 입주기업 대부분이 식품제조업으로 연구산업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점, 연구산업진흥단지는 지방자치단체 공모,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될 필요가 있는 점, 공모 등의 절차에 참여했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28조)

개정안은 전북자치도 내 유전능력이 우수한 고품질 한우를 'J-카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북자치도에서 한우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기준 및 전북자치도의 한우 계량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북자치도의 한우를 보호·육성하려는 것임.

J-카우는 전라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있는 우수한우에 관한 정책용어이고, 법 문장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어야 하는 바, 알파벳을 포함하고 있는 정책용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전라북도 한우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기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므로, 별도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실익

도 적다고 보임.

한편, 안 제28조제5항은 전북자치도에서 한우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 외에 추가적인 제한요건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축산농가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안 제28조제5항의 경우 「축산법」상 한우산업에 진출하는 기업을 제한하는 근거가 없고, 기존 참여기업은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므로 독과점적 지위가 고착화되어 신규 진입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제2절, 안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1) 지역특화 라이프 및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육성 특례(안 제29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9조(지역특화 라이프 및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육성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전북자치도 내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로 선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전북자치도 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과 같은 법 제3조의3부터 제3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중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전북자치도 내 공공기관을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일정 지역을 헬스케어특화지구(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및 건강관리 등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특화상품 및 특화서비스 개발 등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화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특화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전북자치도는 제4항에 따른 특화지구의 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라이프 및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특화를 위한 시범사업의 발굴·추진 2. 라이프 및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산업의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라이프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창의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제4항에 따른 특화지구의 지정절차·방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와 전북자치도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안은 관계 법률상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북자치도에 대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연구중심병원 지정,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지정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헬스케어특화지구 지정·운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첨단의료단지 입지 선정 등의 행위와 관련하여, 각 제도의 취지, 전북자치도에 한정하여 개별 법률상 각종 선정·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성, 요건 완화에 따른 부실운영 등 가능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헬스케어특화지구 지정·운영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정부는 2023년 6월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추진전략 중 하나로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를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므로, 해당 추진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보건복지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현재 국가가 헬스케어특화지구를 지정·고시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점, 헬스케어특화지구의 지정 필요성·목적·역할에 관한 개념 정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 고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주요내용

1. 글로벌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1 중앙정부의 지원 패키지

❶ 규제 완화를 통해 클러스터 구성원 밀접 배치 촉진

- **용도변경, 클러스터 개발·관리계획 개정** 등을 통해 **기업·대학·연구소·사업지원서비스**(법률·회계 등) **기업** 등 **집적 추진**

* 스타트업이 클러스터 입주 법률·회계·컨설팅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등 지원

❷ 수요 맞춤형 네트워킹 활성화

-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창업자, 창업보육기관, VC, AC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신설**

❸ 앵커기업·스타트업 협력으로 개방형 혁신 활성화

- **클러스터 내 앵커기업-스타트업간 협력**시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선정 우대, 클러스터 전용 TIPS 프로그램 운영** 등 **개방형 혁신 촉진**

❹ 원천·상용화 기술 R&D 활성화 및 기술사업화 촉진

- MIT 등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R&D 협력을 추진**하고, 클러스터 內 **산·학·연 협력**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

❺ 성과물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 유망 벤처기업 **선별 체계 확립, 스케일업 지원** 및 **M&A 활성화*** 등을 통해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세액공제 대상 기술가치금액 범위 확대

❻ 우수 기업·인재 유치

- **첨단 클러스터 입주 외투기업**에 **현금지원 확대** 및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세제*·비자 인센티브 제공**

* 해외 우수인재가 국내 클러스터 내 대학 교수로 임용시에도 세액감면 적용

2 지자체의 지원 패키지

❶ 지자체·민간 주도로 클러스터 **계획 단계부터 집적 추진, 지자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기업·대학** 등 **적극 유치**

❷ 지자체, 지역금융기관, 지역기업 등이 **공동 출자**하는 **클러스터별 특화펀드를 신규·확대 조성**하여 **유망기업에 집중 투자**

❸ 일자리연계형 주택(LH) 공급 확대, **기숙사 신축, 상업·문화시설 확충 및 교통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 클러스터 내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 도입 -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23.下)

2. 바이오 분야 클러스터 육성·활성화 방안

1 디지털바이오 인프라 조성

❶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예: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 포함

❷ 디지털바이오 **7대 R&D 선도프로젝트*** 추진

* (예) 차세대 신약을 신속하게 설계하는 '항체설계 AI', 희귀질환·암 등을 유전자검사를 통해 예측·관리하는 '닥터앤서 3.0' 프로젝트 등

❸ **혁신적 바이오의약품의 R&D - 임상 - 수출 - M&A 등 全주기에 투자**할 수 있는 **메가펀드 1조원 조성**(~'25)

❹ **디지털바이오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Boston-Korea 프로젝트*** 추진

* 국내 우수 연구기관과 보스턴의 선도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개발·인력양성

2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

❶ **국가재정 투입 데이터**의 **개방·공유 의무화, 건강보험 데이터**의 **민간기업 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 개정** 및 **데이터 개방**('23.下)

❷ 민간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데이터**의 **표준화 촉진**을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 신설**

❸ 보건의료데이터 **수요·공급**을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 구축

* 보건의료데이터 민감성을 감안하여, 공공기관(보건의료정보원)이 데이터 탐색·매칭·분석 지원, 가명처리 적정성 등 모니터링

❹ **공공기관*** 및 **민간병원****의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병원→보험사, '23년 「보험업법」 개정)

* 건강검진정보(건보), 예방접종이력(질병청) 등 구체적 도입범위 검토('23.7월~, 행안부 고시)

** 검사결과(혈당, 심전도 등), 진료기록, 영상·사진(X-ray, CT, MRI 등) 등 단계적 확대('24~, 개보법 시행령)

❺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 허용 범위 지속 확대*, 가명처리**가 가능한 **유전체 정보 범위 확대****

* (현행) 웰니스 → (개선) 실증특례 등을 통해 검증된 주요 질병 항목 추가 검토

** (현행) 널리 알려진 질병에 관한 유전자 변이 정보, 종양의 신규변이 정보 등 2종에 한정 → (개선) '종양의 일부 유전자 서열정보' 등 데이터 활용 수요가 많은 항목 추가 검토

❻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절차 간소화***

* 데이터심의위원회(DRB) 심의 통과시, 'DRB 승인서' 및 '데이터활용계획서' 만으로 7일 이내 'IRB 심의면제 확인서'를 발급하는 신속절차 신설(「IRB 관리안내 지침」 개정)

2)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 진흥 특례 등(안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조(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 진흥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북자치도 내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탄소소재 의료기기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북자치도의 탄소소재 의료기기 육성을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전북자치도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8조제1항의 고시 지역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고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의 설립을 허가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는 제4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31조(원격의료 특례)** 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의료인과 환자에 관하여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원격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의료인에 대한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 2.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현 행	개 정 안
	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가. 지속적 관찰 나. 상담·교육 다. 진단 및 처방 ② 제1항의 원격의료 가능 의료취약지역 지정기준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원격의료를 하는 자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④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자는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와 전북자치도는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32조(감염병병원 설치 특례)** ① 도지사는 감염병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을 전북자치도에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제33조(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 특례)** ① 도지사는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신약 등 혁신형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의 시험·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 특례)** ① 도지사는 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안 제30조)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의 탄소소재 의료기기 육성을 위한 도내 기관·단체 등과의 협약을 통한 연구개발사업 수행, 보건의료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의 우선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 설립허가·지정,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연구시설 건축가능 지역 고시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각각 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이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탄소소재 및 수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1,046억원 규모로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이 시행될 예정인 점, 전북자치도의 탄소소재 인프라 및 경쟁력,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우주항공·방산 등 5대 수요산업별 탄소소재 핵심 기술개발을 통한 탄소소재 및 수요산업의 경쟁력 강화
◇ **사업 기간** / 총사업비 : ’24～’28년 / 1,046억원(국비 785억원)
◇ **지원 대상** : 대학, 연구소, 기업 등
◇ **주요 특징** :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증진을 위해 연구 개발 참여기관 간 공동특허 출원 및 공동특허 기반 신기술 인증 획득 의무 부여

※자료: “한국형 탄소(K-Carbon) 주력(Flagship) 기술개발 사업”예비타당성평가 통과,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3. 1. 12.

참고로, 보건복지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증진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주체로서 전북자치도에 특별한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과제 수행의 적합성 등 평가절차를 생략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중복지원으로 인한 비효율, 탄소소재 산업 육성에 대한 국가적 접근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31조)

개정안은 도지사가 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 대하여는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 등 의료인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것임.

원격의료는 의료체계 및 국민의 의료이용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내용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허용되는 의료행위·환자·의료기관의 범위 및 의료인의 책임 등이 사전에 명확히 정해질 필요가 있고, 전국단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9]이 보건복지위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9) 강병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2756호, 최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2780호 등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개정안은 도지사로 하여금 전북자치도의 감염병에 대한 역량강화(안 제32조), 동물용 의약품 산업의 진흥(안 제33조), 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안 제34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각각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감염병병원 설치 등 각각에 필요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각 시책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전북자치도가 도의 여건과 필요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점, 시책 마련·시행 및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외에 각각에 관련된 실체적인 내용이 부재하여 입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질병관리청은 안 제32조제2항에 대하여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의 선정이 이미 완료('17년도 공모 및 평가 절차를 거쳐 조선대학교병원 지정 완료)되어 관련 사업을 기 진행중에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청정 에너지산업 진흥(제3절, 안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

1) 수소특화단지 등 육성 특례(안 제35조 및 제36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5조(수소특화단지 등 육성 특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전북자치도에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소특화단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도지사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전북자치도 수소특화단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전북자치도 내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36조(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단지 지정 및 지원 특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그린수소(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로 물 등을 전기분해하여 생산한 수소를 말한다. 이하 “그린수소”라 한다)특화단지를 새만금사업지역 등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그린수소특화단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전북자치도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특화단지 내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새만금사업지역 등에 그린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수소는 12대 국가전략기술[10] 중 하나로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종합적으로 육성될 예정인 점, 전라북도 완주군이 수소특화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기 선정된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추가적인 수소특화단지 지정 특례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특히 안 제36조는 새만금사업지역에 관한 사항으로 법 체계상으로도 「새만금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10)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사용후핵연료 처분 기술 포함),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3. ~ 2030.(8년) ○ 위　　치 : 완주군 봉동읍 일원 1,652,500㎡ (50만평) ○ 사 업 비 : 2,562억원 ※ 공모제안서 기준 ○ 주요내용 : 중대형 수소모빌리티, 수소저장용기, 수소용품 관련 산업 기업유치 및 친환경·스마트·안전한 국가산단 조성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전북개발공사 * 전국 선정현황 15개소 - 대구1, 광주1, 대전1, 강원1, 경기1, 충북1, 충남2, 전북2, 전남1, 경북3, 경남1 ○ 향후계획 : 예비타당성조사(23~24), 산업단지계획수립(24~26), 토지보상+공사(26년 말 착공목표)

※자료: 전라북도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전북자치도에서 임의로 실시하는 시범사업 등에 대한 국가의 사업비 지원은 원인자부담원칙 등 비용부담의 원칙에 상충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특례(안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7조(에너지 생산·소비 일치를 위한 분산에너지 특례)** 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분산에너지와 각 분산에너지사업

현 행	개 정 안
	의 규모를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신청 및 계획을 도조례로 정하는 규모에 따라 달리 제안할 수 있다.
<신 설>	**제38조(「신재생에너지법」의 시범사업 특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의 이용·보급을 위하여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보급사업을 전북자치도 내에서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39조(신·재생에너지자원의 공공적 관리)** ① 도지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육성 및 해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주변지역을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40조(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참여와 사업투자권한 특례)**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1조(재생에너지의 직접 전력거래 특례)** 「전기사업법」 제16조의5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에서 공급되는 전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될 수 있다.

(안 제37조)

개정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분산에너지[11]의 종류와 규모,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절차, 계획제안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2023. 6. 13. 제정되어 2024. 6. 14. 시행될 예정인 시행예정 법률이며, 대통령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차원의 통일적이고 일관된 분산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1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안 제38조)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북자치도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전북자치도의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및 수요 현황,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통일적 기준에 따른 보급사업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신재생에너지집적화단지 지정절차, 현재도 필요시 지방자치단체를 시범사업 등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진행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39조)

개정안은 도지사에게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및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의 지정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제주도법」 제304조[12]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며, 탈탄소사

회로 전환되고 있는 국제적 추세를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안 제40조)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도지사로 하여금 전북자치도 내 공장·사업장·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 또는 이용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제2항),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수요를 창출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에 대하여는 전북자치도에 한정하여 달리 주민참여방식을 정하도록 할 필요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통일적 기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 신·재생에너지 이용 등 권고에 따른 공장·사업장·집단주택단지 등의 영업 및 주거의 자유 제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2) **「제주도법」**

제304조(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풍력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풍력발전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주변지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안 제40조제1항의 경우 주민참여사업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41조)

개정안은 「전기사업법」 제16조의5제3항[13]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되는 전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수입은 보통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하여 얻는 수익과 발전량에 따라 발급되는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의 합계로 결정되므로, 개정안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공급인증서 판매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증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13) **「전기사업법」**
제16조의5(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급되는 전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16조의5제3항이 전기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 공급인증서 발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공급인증서 과다공급에 따른 가격 안정의 필요성, 에너지 직접 공급 가격에 이미 공급인증서 가격이 반영되어 있어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경우 중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14], 신·재생에너지 직접 공급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순증효과를 유도하는 제도로 공급인증서 미발급을 전제로 하는 점을 고려한 것[15]인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다른 사업자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생명서비스산업 육성(제4절, 안 제42조부터 제48조까지)

1)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의 진흥(안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2조(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의 정의)**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에 관한 산업을 말한다.

14)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회의록, 2020. 11. 26.
15) 상동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3조(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의 입지선정 및 개발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이 절 이하 "복합단지"라 한다)의 입지를 선정하고 해당 지역을 복합단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복합단지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복합단지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복합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⑤ 복합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업시행자에게 복합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복합단지의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반시설(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전용시설을 포함한다)은 국가와 전북자치도가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44조(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 진흥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현 행	개 정 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 진흥계획(이하 이 조에서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2.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의 조성 목적 3.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의 시설 등의 배치계획 4.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의 운영계획 5.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 운영지원기관(재단)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 계획 7. 사업추진기간 및 연도별 사업추진 목표 8. 그 밖에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의 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는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 진흥계획 수립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45조(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전문연수기관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전문성 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연수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연수기관 내부설기관으로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분야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제46조(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지원)** ① 전북자치도와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연구개발기관 및 출연기관은 공동으로 출연하여 고령친화·사회서

현 행	개 정 안
	비스산업진흥재단(이하 제46조까지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③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의 연구성과 제고 및 지원 2.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에 입주한 연구개발기관의 제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유치·양성·활용에 대한 지원 4.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학계 및 산업계와의 협력 5.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연구개발기관 등과 공동연구를 통한 기반기술의 확보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 업무를 지원

현 행	개 정 안
	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사업 ⑤ 재단은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관련 연구개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1.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지원센터: 고령친화 제품 등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고 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고령친화제품 등을 개발하는 센터 2. 사회서비스산업 인재개발지원센터: 사회서비스 인력을 지원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업무를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산업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사회서비스 인력을 양성하는 센터 3. 그 밖에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연구개발 관련 자원관리센터 등 도조례로 정하는 센터 ⑥ 국가와 전북자치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재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47조(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의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국가와 전북자치도는 재단 및 복합단지에 입주한 연구개발기관 등에 숙소, 편의시설, 탁아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안 제42조)

개정안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고령친화산업[16] 및 「사회

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서비스[17]에 관한 산업을 합하여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에 관한 산업‘의 경우 개별법 제정 등을 통해 개념 정의 및 해당 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등이 우선적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절의 내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안 제43조 및 제44조)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북자치도에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이하 “복합단지”라 함)를 지정할

16)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제품등”이라 함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용품 또는 의료기기
나.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다. 노인요양 서비스
라. 노인을 위한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마.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바. 노인을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사.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아.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고령친화산업”이라 함은 고령친화제품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17)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6. 8.>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 있도록 하고,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개발 등에 관한 절차에 준하여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등 복합단지의 지정·운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도지사로 하여금 복합단지의 위치·면적 등 입지 선정, 조성목적, 시설 등 배치계획, 운영계획, 운영지원기관 등의 사항이 포함된 복합단지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령화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공통의 현상 내지 사회적 문제에 해당하는 바, 공모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능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전북자치도에 한정하여 국가차원에서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안 제43조에 따르면 복합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서 개발·운영될 예정인 것으로 보이고,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운영주체는 국가에 해당함.

그런데 안 제4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도지사로 하여금 복합단지의 지정·조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복합단지의 개발·운영주체와 개발·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주체가 상이하므로 복합단지의 성격 및 개발·운영주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주 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 및 완주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를 국가산단으로 지정한 만큼 신규 지정이 어렵고, 특히 '사회서비스에 관한 산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보건복지부는 단지조성의 필요성, 지역별 수요,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단위 입지 선정이 바람직하므로 전북자치도 내로 한정하여 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전문성 함양 등을 위한 전문교육연수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복합단지의 연구성과 지원 등을 위해 전북자치도 등이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진흥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진흥재단 및 복합단지 내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는 복합단지의 도입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그 도입여부에 맞

추어 조정이 필요해 보임.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안 제45조의 경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및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고령친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및 보건복지분야 업무종사자 양성 등을 위한 사업을 이미 시행중에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특례(안 제48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8조(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특례)** ①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외에도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자원순환이 실현되는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자원순환산업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자원순환시설 등이 집적화된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전북자치도 내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을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 연구개발 및 실증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및 실증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도지사에게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추진할 의무를 부여하고(제1항), 국가가 전북자치도에 자원순환산업 및 자원순환시설 등이 집적화된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며(제2항), 실증단지의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연구개발 및 실증 등의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제3항)하려는 것임.

제1항의 경우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기조를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음.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자원순환실증단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별도로 정의된 개념은 아니며, 그 취지상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0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18]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을 일컫는 표현인 것으로 보임.

그러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제명이 변경된 법률로서, 2024. 1. 1. 시행될 예정임. 규제특례에 관한 제30조 또한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시 함께 도입된 규

1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0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정으로 아직 운영 절차나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못한 상황이므로, 추후 법 시행 이후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나. 전환산업 진흥(제2장, 한병도의원안 제49조부터 제82조까지, 정운천의원안 제49조부터 제88조까지)

(1) 첨단소재 융복합 진흥(제1절, 안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9조(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사용후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및 핵심 원재료 재활용 등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50조(전기차용 이차전지 기술개발 시범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전기차용 이차전지 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8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전북자치도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호 협의된 시범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51조(자동차 배터리 자원순환 특례)** ① 도지사는 생명경제도시 실현을 위하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재활용사업자,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재활용하기 위한 제품의 재질·구조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안을 받은 때에는 제품의 안전성 등 특성 및 경제성이나 국내기술수준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안이 채택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그에 따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안 제49조)

개정안은 도지사가 사용후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및 핵심 원재료 재활용 등에 대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기자동차의 보급·확산 등으로 사용된 이차전지의 발생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사용된 이차전지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후 배터리 순환체계’,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 등 용어는 정책용어로서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마련을 논의 중에 있으며, 사용후 배터리를 지역별로 관리할 경우 국가적인 통합관리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부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50조)

개정안은 전기차용 이차전지 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8제1항[19]에 따른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8제1항에 따른 자동차기술 시범사업의 시행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므로, 전북자치도 내 자동차기술 시범사업 실시 권한 이양에 관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개정안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전기차 이차전지 기술이 「자동차관

19)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8(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리법」에 따른 자동차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차전지 산업과 자동차 산업은 별개의 산업인 만큼 이차전지의 기술을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기술로 보기는 어려운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51조)

개정안은 도지사로 하여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 하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3항[20]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아닌 도지사에게 폐전기·폐전자제품 등에 대한 경제적 재활용을 위한 개선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며, 제안이 채택된 경우 관련 내용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범위는 전북자치도의 관할구역에 한

---

2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2조(재활용정보의 제공과 재질·구조 등의 개선제안 등) ②재활용사업자,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환경을 보전하면서 경제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제품의 재질·구조 등에 대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환경부장관이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안을 받은 때에는 제품의 안전성 등 특성과 경제성이나 국내기술수준 등에 따른 타당성 검토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안을 채택한 경우에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그에 따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정되므로, 전북자치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현행법에 규정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개선사항 제안 및 제안채택에 따른 권고는 관련 사업자의 소재지, 관할 인·허가 지역 등과 관계 없이 모든 관련 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보이는 바, 관련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경우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에 따른 재질·구조 등의 개선 권고 대상이 해당하지 않는 점, 제안제도의 통일적 운영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친환경 모빌리티산업 진흥(제2절, 안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2조(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 등 특례)** ① 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자동차 대체부품 검사·인증장비 등을 갖춘 기관을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대체부품 인증의 인증표시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제3항에 따라 지정된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 본다.
<신 설>	**제53조(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촉진 특례)** 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북자치도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노선형이 아닌 택시 등 구역형 유상 여객운송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전북자치도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전북자치도 내 자율주행자동차 도입·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54조(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① 도지사는 새만금에 드론, 무인농업기계, 자율주행차, 무인선박 및 부품 등 무인이동체산업의 기술상용화를 위한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 구축 등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무인이동체 종합실증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55조(하이퍼튜브 등 차세대 철도기술 개발 특례)** ① 도지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이하 “하이퍼튜브”라 한다) 등 차세대 철도기술 전문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 특성화된 대학 등 교육기관

현 행	개 정 안
	을 운영·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이퍼튜브 등 차세대 철도기술 개발을 위하여 전문으로 연구하는 전북자치도 내 기관 및 단체를 지도·육성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산업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자치도에 철도산업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철도산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 또는 제공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안 제52조)

개정안은 도지사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동차 대체부품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재 전라북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체부품 기업이 있으나, 지역 내 인증기관의 부재하여 대체부품의 인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는 전라북도의 설명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대체부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보는 것은 인증기준 및 절차의 이원화로 기업과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53조)

개정안은 전북자치도 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택시 등 구역형 유상여객운송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전북자치도 내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화산 등을 위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023. 2. 10.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택시 등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실증사업 허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이 발표[21]되었으므로, 해당 논의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21) "윤석열 정부, 지역 중심의 진정한 지방시대 연다"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3. 2. 10.

(안 제54조)

개정안은 도지사에게 새만금사업지역 내 드론 등 무인이동체산업의 기술상용화를 위한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 구축 등 시책을 마련·추진할 의무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법 체계상 「새만금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참고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청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새만금 내 타 부처의 실증·시범사업 등과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55조)

개정안은 도지사가 하이퍼튜브 등 차세대 철도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연구기관·단체를 지도·육성할 수 있도록 하며, 전북자치도에 철도산업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이퍼튜브는 공기저항이 없는 아진공 튜브 내에서 자기력으로 차량을 추진·부상시켜 시속 1,000km이상으로 주행이 가능한 교통시스템으

로, 세계적으로 광역거점간 초고속 이동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세대 철도기술로 주목받고 있음.

하이퍼튜브 기술은 아직 성공하지 못한 단계로, 핵심기술 확보가 곧 시장 선점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22]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은 현재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아직 사업추진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및 향후 사업 추진경과를 고려하여 도입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 개요>

○ 위　　치 : 새만금 농생명용지(1~3공구) ○ 사업기간 : 2025 ~ 2030년(6년) - 핵심기술확보('25~'26), 핵심기술 구현 및 시작품(2km) 제작('27~'29), 시험 및 성능 검증('30) ○ 사 업 비 : 총 사업비 11,267억원 中 3,377억원(국비 3,313, 지방비 10, 민자 54) - 연구개발비 2,268억원(67%), 시험검증비 1,109억원(33%) * <1단계> 3,377억원 + <2단계> 7,890억원 ○ 사업내용 :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확보 및 단위기술별 인터페이스 검증 - 핵심기술 + 2km 추진·부상(200km/h 구현) + 일부구간 아진공(튜브 200m) 구현 ※ 2단계('31~'37년) : 시험선 12km 실증(800km/h 구현) 및 역사·분기기 등 실용화 연구(7,890억원 규모) ○ 시행기관 :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다부처 협업사업 ○ 향후계획 : R&D 예비타당성조사 추진(23년) 사업단 구성 및 연구개발 착수(25년~)

※자료: 전라북도 바탕으로 재구성

22) 미래형 교통수단 "하이퍼튜브"R&D 테스트베드 공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2.6.16.

(3) 국제 문화관광 거점 조성(제3절, 한병도의원안 제56조부터 제68조까지, 정운천의원안 제56조부터 제74조까지)

1) 케이팝국제교육도시의 조성(정운천의원안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

현 행	정운천의원안
<신 설>	**제56조(케이팝국제교육도시 지정·지원 등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전북자치도는 새만금사업지역을 케이팝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케이팝국제교육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케이팝국제교육도시의 개발은 「도시개발법」 제3조, 제3조의2 및 제4조에서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를 따른다. ③ 국가와 전북자치도는 케이팝국제교육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학교 설립 및 케이팝국제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케이팝국제교육도시에 있는 공유재산 등을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時價) 이하로 양여(讓與)하거나 대부·사용·수익(이하 이 조에서 “무상양여 등”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 등의 무상양여 등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양여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제5항에 따라 무상양여를 받은 공유재산 등을 매각하거나 분양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57조(케이팝국제학교 설립 등)** ① 케이팝국제교육도시에 국제화된 케이팝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

현 행	정운천의원안
	하 “케이팝국제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케이팝국제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 간 상호 병설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케이팝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에서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케이팝국제학교에 케이팝 관련 전문 교원을 파견하여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5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케이팝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59조(케이팝국제학교 설립 자격)** 케이팝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 2. 이 법, 다른 법령 및 외국의 법령(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법인
<신 설>	**제60조(케이팝국제학교 설립 승인 및 운영 등)** 케이팝국제학교의 설립승인, 위탁운영, 국제학교의 운영, 다른 법률의 적용, 교원임용, 회계처리, 설치등기 등에 대한 사항은 이 법 제100조부터 제107조까지를 준용한다.
<신 설>	**제61조(케이팝 육성기업 지원)** 국가는 케이팝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케이팝기업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할 경우에 케이팝국제학교와 연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새만금사업지역을 케이

팝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케이팝국제교육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케이팝국제교육도시에 국제화된 케이팝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케이팝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가 케이팝기업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케이팝국제학교와 연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북자치도는 개정안에 따라 케이팝과 관련된 각종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전북자치도 K-POP 국제교육벨트 사업'을 통해 국제적 케이팝 인재를 양성하며, 이를 통해 국가 문화경쟁력의 증진과 지역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임.

그러나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케이팝국제교육도시 및 케이팝국제학교는 전북자치도가 추구하는 생명경제도시[23]와 관련성이 적다고 보임. 전라북도는 생명경제도시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 전환산업 진흥을 설정하고, 생명과 안전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문화관광 개발을 통해 적자생존 방식의 기존 주력산업을 생명경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설명이

23) 생명경제 활동(생명과 친환경 성장을 목표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공익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적 기준을 적용하는 지역적 단위

나, 케이팝국제자유도시 및 케이팝국제학교는 ‘생명과 친환경 성장’을 목표로 하는 생명경제와는 이질적인 측면이 있음.

둘째, 케이팝은 문화산업으로서, 문화산업에 대한 정책은 사업자의 자유와 자율을 존중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이 지켜질 필요가 있고, 실제로 케이팝을 비롯한 한류의 성공요인에는 팔길이 원칙에 따른 공공부문의 역할이 있었다는 의견도 있음.[24] 케이팝국제학교는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학교설립을 통해 케이팝 아티스트를 직접 양성하는 기관으로, 케이팝 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개입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음.

셋째, 케이팝 국제자유도시 및 케이팝국제학교는 케이팝과 관련된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전라북도는 케이팝과 관련된 각종 사회문제로 ①민간 기획사 자체 운영 등의 방식에 따른 지역·국가발전과 연계성 미흡, ②공교육과 괴리된 상태에서 민간 중심으로 케이팝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발생하는 연예인 자살, 진로변경시 학력인정 어려움 등 발생 등을 들고 있음.

그러나 케이팝은 ‘소프트파워’[25]로서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24) 한류, 정책 산물인가 ‘설계되지 않은 성공’인가, 한겨레, 2022. 5. 7.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41887.html
세계 휩쓰는 K팝, 한국 산업화 성공 공식 따라왔다, 2023. 1. 16.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3847#home

25) 하버드 대학교의 조지프 나이가 고안한 개념으로, 설득의 수단으로서 돈이나 권력 등의 강요가 아닌 매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함(위키백과).

해외 각국에 전파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연예인 자살, 학력인정 어려움 등의 문제는 재취업정책, 연예인 심리상담 강화 등 보다 직접적인 정책을 통해 해결할 문제인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강원도법」의 경우 교육특구 및 국제학교 설립 등과 관련된 내용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교육자유특구와 관련된 내용이 각각 국회 심사과정에서 제외되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학교의 설립을 기반으로 하는 케이팝국제교육도시의 특성상 그 지정·조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새만금개발청은 안 제56조와 관련하여, 「도시개발법」을 적용하는 국제교육도시 개발절차 및 그 밖의 부담금 면제 등의 개별규정은 새만금개발사업과의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 지정 등(한병도의원안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정운천의원안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현 행	개 정 안[26]
<신 설>	**제56조(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 ① 도지사는 한국전통문화에 첨단기술과 현대적인 요소를 융합하

현 행	개 정 안[26]
	여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케이문화융합산업(이하 “케이문화산업”이라 한다)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국제적인 창의활동이 보장되는 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이하 이 조에서 “진흥지구”라 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지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진흥지구 조성과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진흥지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가는 진흥지구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케이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케이문화산업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전북자치도 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케이문화산업진흥 및 기업유치, 입주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지원 3. 지원센터 인프라 시설 구축 및 운영 4. 케이문화산업과 신기술을 접목한 각종 사업의 진흥 5. 그밖에 케이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실시 ⑤ 지원센터는 전북자치도 산하 문화콘텐츠 진흥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제3항에 따른 계획 수립, 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설치·운영,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57조(케이문화융합산업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등 특례)** ① 도지사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현 행	개 정 안[26]
	케이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도조례에 따라 전북자치도에 설립된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가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도지사는 케이문화융합콘텐츠의 효율적인 제작과 품질 향상, 콘텐츠 간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시행을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케이문화융합콘텐츠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2. 그밖에 케이문화융합콘텐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학기술, 디자인, 문화예술, 문화유산, 인문사회 등 다양한 학문 분야 간의 교류와 융합에 기반을 둔 케이문화융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설립된 콘텐츠 관련 기관을 연구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지정된 연구 주관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케이문화융합 기술의 연구 및 기술개발 2. 케이문화융합 분야의 표준화 연구 3. 케이문화융합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4. 케이문화융합 분야의 국내외 산학연 공동연구·기술제휴 5. 케이문화융합 기술의 개발·보급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현 행	개 정 안[26]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연구 주관기관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제2항에 따른 표준화 사업 시행과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58조(케이문화융합산업 관련 기업 지원 특례)**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에서 케이문화융합의 창작성, 성공가능성 및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케이문화프로젝트와 케이문화사업자를 추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케이문화프로젝트와 우수케이문화사업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케이문화프로젝트와 우수케이문화사업자의 지정에 있어 도지사가 추천한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케이문화프로젝트 및 케이문화사업자 추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케이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진흥지구 내 입주기업의 인력·시설 등의 기준을 달리 정하여 부설연구기관이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 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전북자치도에 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케이문화산

26) 한병도의원안과 정운천의원안은 조 번호에 차이가 있을 뿐 조문 내용이 동일함. 이하에서는 먼저 접수되어 의안번호가 앞서는 한병도의원안의 조 번호를 기준으로 함

업진흥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케이문화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등을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케이문화융합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북자치도 내 케이문화프로젝트와 케이문화사업자를 우수케이문화프로젝트와 우수케이문화사업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5 및 제28조의2[27]에 따른 문화산업 연구 주관기관 지정 및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승인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제16조[28]

---

2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5(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과학기술, 디자인, 문화예술, 인문사회 등 다양한 학문분야들 간의 교류와 융합에 기반을 둔 문화산업 복합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을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이하 "연구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제28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세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8)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콘텐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표준화의 추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효율적인 콘텐츠제작과 콘텐츠의 품질 향상, 콘텐츠 간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자에게는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콘텐츠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콘텐츠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2. 콘텐츠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3. 그 밖에 콘텐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에 따른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정부의 권한, 콘텐츠의 표준화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등 각종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은 권한이양 외에 민선 8기 도정이 추진하려는 문화관련 정책이 함축된 '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 '케이문화융합콘텐츠' 등 정책용어가 다수 사용되고 있어, 이를 일반화된 법률용어로 정비하고,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관련 표준화 등 업무 및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설치·운영 중에 있는 점, 표준화 업무에 대한 국가차원의 수행 필요성, 전북자치도 산하기관에 대한 별도지원 및 연구 주관기관 지정은 중복지원 및 지정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별 조항에 대한 삭제·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환경부는 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 지정계획 수립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디지털치유콘텐츠 시범사업 실증 특례 등(한병도의원안 제59조부터 제68조까지, 정운천의원안 제65조부터 제74조까지)

현 행	개 정 안[29]
<신 설>	**제59조(디지털치유콘텐츠 시범사업 실증 특례)** ① 도지사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는 디지털치유콘텐츠 시범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디지털치유콘텐츠 시범사업 추진 및 실증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60조(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이스포츠대회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도지사가 육성·지원하는 이스포츠대회에 대하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61조(태권도특구 지정 및 운영 특례)** ① 도지사는 태권도의 교육·산업·관광 등의 진흥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태권도특구(이하 이 조에서 “특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구에 규제 특례 등을 적용할 때는 이 법에서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

현 행	개 정 안[29]
	에 따른다. ③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구의 활성화 및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62조(태권도원 방문 비자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태권도원에서 실시하는 국제행사 및 연수 등에 참여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의 장에 위임된 사증 발급의 기준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63조(지역특화 관광산업의 육성)** ① 도지사는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 교육 등을 위한 치유관광시설의 조성 및 운영 2.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교육개발 등에 관한 사항 3. 치유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홍보·관광객 유치 확대 4.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야간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야간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야간관광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산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홍보·관광객 유치 확대

현 행	개 정 안[29]
	4. 그 밖에 야간관광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의 진흥 및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전통무예 체험관광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64조(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설치 취지를 살려 전북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북자치도 내의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 2.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3. 국제회의시설의 건립과 운영 촉진 4.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5.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확충 6. 국제협력의 촉진 7. 전자국제회의기반 확충 8.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진흥에 필요한 사업
<신 설>	**제65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①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과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산업과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현 행	개 정 안[29]
	있다.
<신 설>	**제66조(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한국 해양문화유산의 발굴, 연구, 전시, 교류 등을 진흥하고 지역문화관광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국제기구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67조(관광지 등의 처분 특례)** ① 전북자치도의 시장·군수는 「관광진흥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일부를 원형지로 공급(매각, 임대, 위탁·경영)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②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사항은「도시개발법」 제2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의 “개발계획”, “실시계획”은 「관광진흥법」의 “조성계획”으로 본다.
<신 설>	**제68조(관광숙박업의 등급 지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6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9) 한병도의원안과 정운천의원안은 조 번호에 차이가 있을 뿐 조문 내용이 동일함. 이하에서는 먼저 접수되어 의안번호가 앞서는 한병도의원안의 조 번호를 기준으로 함

(안 제59조)

개정안은 도지사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는 디지털치유콘텐츠 시범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을 통해 '기능성게임[30]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전북자치도의 설명을 고려할 때 디지털치유콘텐츠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31]에 해당하는 '디지털의료기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하여는 「의료기기법」 등 기존 법률에 따른 안전상 조치나 규제 등의 적용여부가 불분명하여 별도의 개별법을 통해 규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디지털의료제품법안」[32] 등 제정안이 보건복지위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으므로, 개별법 제정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규율 체계가 갖추어진 후 별도 특례 부여 등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30) 현실에서 일어날 상황을 가상으로 체험하거나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개발된 게임. 건강, 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쓰이고 있음.(네이버 지식백과)

31)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2. 11.>

1.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2) 백종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0713호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치유콘텐츠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60조)

개정안은 도지사가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이스포츠 대회를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은「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1조[33]에 따른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운영 및 이스포츠대회의 육성·지원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취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전북자치도의 이스포츠분야 강점, 관계기관 의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문체부 지

---

33)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진흥에 필요한 경기 및 방송, 연구 등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스포츠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이스포츠대회의 육성·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스포츠대회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정기관과 전북자치도 지정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목적(전문 교육기관의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통한 이스포츠 분야의 다양한 진로 개발, 산업계 선순환구조 조성)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61조·제62조)

개정안은 도지사가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태권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61조), 태권도원(「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태권도공원[34])에서 실시하는 국제행사 및 연수 등에 참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사증 발급의 기준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지속적 성장 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전략적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35]으로 하고 있고, 이 법의 규제특례등을 변경하는 등

---

34)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태권도공원의 조성) ① 국가는 태권도종주국의 위상 제고, 태권도 성지로서의 역할, 태권도의 보급·연구·전시·수련 및 지도자 양성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 무주군에 태권도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3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

의 내용으로 다른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36]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태권도특구에 대하여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과 다른 지정요건·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균형발전 및 전북자치도의 지역특성에 맞는 적합한 방안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안 제62조와 관련하여서는, 내륙에 위치하여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자유로운 전북자치도의 특성상 버스, 승용차, 도보 등을 통한 무단이탈 및 불법체류 외국인의 발생 가능성에 따른 출입국관리의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함)의 경우 관광목적 무사증 입국 특례[37]가 인정되고 있으나, 전북자치도와 달리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항만 또는 공항을 통하여서만 입·출

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규제자유특구에서의 특화사업 및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제특례등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른 법률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제4조 각 항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37) **「제주도법」**

제197조(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외국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증의 발급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도지사의 추천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국하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도가 가능한 차이가 있음.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안 제61조에 대하여 특화특구 지정 시 규제특례에 대한 중앙부처 차원의 조정 및 지역편중여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제도 운영의 일관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법무부는 안 제62조에 대하여 통일적인 사증 정책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일반인이 참가하는 국제행사 및 연수는 참가자의 불법체류 발생 사례가 빈번하여 참가자에 대한 검증방법 등 일관된 사증 기준이 필요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63조)

개정안은 도지사로 하여금 치유관광, 야간관광, 전통무예 진흥 및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 하고, 각각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치유관광은 치료의 목적이 아니나 스트레스나 불안 등을 감소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시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관광활동이며, 야간관광은 야간시간대에 야간에만 즐길 수 있는 관광명

소 및 관광콘텐츠, 축제 등을 즐기는 관광을 의미함.

개정안에 대하여는 치유·야간관광 등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시행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전북자치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인 점, 치유관광 진흥에 대하여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38]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안 제63조제1항·제3항과 관련하여, 「전통무예진흥법」 제4조[39]에 근거하여 관련 사업이 추진이 가능한 점,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64조)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북자치도의 국제회의산업 육성·진흥을 위해 국제회의 유치·개

38) 배현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0576호

39) **「전통무예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주도법」 제254조[40]에 국제회의도시 지정에 관한 특례가 기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북자치도에도 동일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주자치도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닌 제주자치도지사로 하여금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등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자립적 국제회의산업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국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차이가 있음.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주도법」을 참고하여 제2항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의 주체를 도지사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40) **「제주도법」**

제254조(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내의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
2.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3. 국제회의시설의 건립과 운영 촉진
4.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5.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확충
6. 국제협력의 촉진
7. 전자국제회의기반 확충
8.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안 제65조·제66조)

개정안은 도지사가 수상레저산업과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 하고,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각각에 대한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수상레저산업 등 시책마련·시행과 관련하여, 이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전북자치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는 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제교류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국제교류지구 지정 및 국가의 지원에 관한 근거만 마련할 뿐 지구지정의 효과, 지구의 해제 등 실체적인 내용이 부재하여 국제교류지구 지정·운영에 관한 도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안 제67조)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의 시장·군수가 원형지 공급 방식으로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형지란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로, 원형지 공급방식은 부지

조성공사를 부지를 이용할 민간 수요자에게 맡기는 방식임. 원형지의 가격에는 부지 조성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토지공급가격이 저렴한 편임.

그러나, 원형지 공급방식은 원형지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토지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원형지에 대한 난개발 및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제공 등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산업단지, 기업도시개발 등 일부 사업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는 원형지 공급방식의 특징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지 조성사업은 지자체가 주도하여 공공자금 투입을 통해 부지를 안정적으로 조성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원형지 공급방식 도입 시 각종 특혜 시비, 원형지 수급자의 공익기여도와 개발이익 간 차이, 개발된 토지 수급자와의 형평성, 관광지 개발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68조)

개정안은 관광숙박시설의 등급 지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등급 구분, 등급결정 기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라북도는 일괄적인 기준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등급이 지정되고 있어 지역의 특수성 및 여건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권한이양이 필요하다는 설명임.

그러나, 등급지정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관광숙박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관광숙박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인 점, 소비자의 입장에서 관광숙박시설의 등급은 해당 시설에 대한 보증 역할을 하게 되므로 등급 지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점, 등급 지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평가기준을 갖출 필요가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호텔업 등급평가제도의 목적 및 등급평가제도의 객관성·신뢰성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제4절, 한병도의원안 제69조부터 제82조까지, 정운천의원안 제75조부터 제88조까지)

1) 친환경 산악관광특구의 지정

현 행	개 정 안[41]
<신 설>	**제69조(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동부권(전북자치도 동부지역에 위치해 있는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등 6개 시·군 지역을 말한다. 이하 "동부권"이라 한다) 등의 친환경적인 활용과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은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친환경 산악관광특구"(이하 "산악관광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이 지정 목적, 이용계획,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2. 대상지역의 산림자원과 자연생태 및 경관이 친환경 산악관광을 추진하는데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대상지역과 주변 자연환경 여건이 친환경 산악관광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발압력과 환경영향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민간투자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인구소멸 대응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5. 환경적·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 6. 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을 것 7. 산악관광특구에 관한 투자 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8.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도지사는 산악관광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산악관광자

현 행	개 정 안[41]
	원으로서 가치 및 활용이 우수하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정한다. ③ 도지사는 산악관광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이 법 제70조에 따른 산악관광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산악관광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산악관광특구의 위치·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가와 전북자치도는 산악관광특구에서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산지와 산림, 자연생태와 경관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산악관광특구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산악관광특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을-해제할 수 있다. ⑨ 산악관광특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방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70조(친환경 산악관광특구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산악관광특구 활용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악관광특구 활용에 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현 행	개 정 안[41]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악관광특구의 명칭·위치·면적 2.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및 기간 3. 산악관광특구의 지정 목적 및 개발 방향 4. 토지이용 및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5. 도로, 상·하수도 및 전력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비용 부담계획을 포함한다) 6. 생태·경관 및 환경보전계획과 오염방지계획 7. 안전·재해 대책 및 구조·구급계획 8. 산악관광특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등에 대한 비용 부담계획 9. 조성토지 등의 사용·공급·처분에 관한 사항 10.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1.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12. 재원 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13.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신 설>	**제71조(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의 효과)** 산악관광특구가 지정되면 이 법 제70조의 산악관광특구 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수립·승인·변경·폐지 및 구역 변경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현 행	개 정 안[41]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 기본계획의 변경 7.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 기본계획의 변경 8.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9.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10.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 11. 「자연공원법」 제8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구역 변경 1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등

개정안은 도지사가 전북자치도 동부권 등의 친환경적인 활용과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지역을 활성화ㅎ하기 위하여 친환경 산악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구를 지정하려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구의 위치·경계 또는 면적 등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구를 지정하면 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라 총 12개 관계 법률에 따른 각종 계획수립 등 효과가 각각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41) 한병도의원안과 정운천의원안은 조 번호에 차이가 있을 뿐 조문 내용이 동일함. 이하에서는 먼저 접수되어 의안번호가 앞서는 한병도의원안의 조 번호를 기준으로 함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강원도법」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와 관련된 조문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 규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강원도법」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적절히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특구지정의 효과로 부여하려는 12개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지정·수립 등 효과에는 산업단지 조성, 물류단지 지정 등 친환경적인 산악자원의 활용과 이질적인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각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산악관광특구'라는 명칭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와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산림청은 「강원도법」의 산림이용진흥지구 관련 규정들과 내용 및 체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환경부는 기본계획 수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고, 안 제71조의 경우 관계 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내용에 한정하여 효과를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같은 조 제7호·제9호·제12호의 경우 하천구역 결정 및 하천기본계획 변경은 하천치수방제 사업의 주요사항인 점, 「자연공원법」의 입법목적 및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 필요성 고려 시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토교통부는 안 제71조제3호의 경우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조성함이 적절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현 행	개 정 안[42]
<신 설>	**제72조(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시행자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사업시행자(이하 제79조까지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자본금 등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중 둘 이상이 산악관광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出資)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6. 산악관광특구 내의 토지소유자들이 친환경 산악관광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2. 유사 개발사업의 시행 경험

현 행	개 정 안[42]
	3. 그 밖에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73조(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① 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7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4조제5항에 따른 승인 신청 기간까지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7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유로 산악관광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에 관하여는 제72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

현 행	개 정 안[42]
	인에 관한 종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 설>	**제74조(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악관광사업의 명칭·위치·면적 2. 산악관광사업의 개발 목적 및 방향 3. 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5.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6.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였을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군수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제7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 설>	**제75조(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인·허가 등의 의제)** ① 도지사가 제7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현 행	개 정 안[42]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지정·결정·신고·협의·해제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5.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해제·신고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 계획의 승인 6.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

현 행	개 정 안[42]
	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낙농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10.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1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위한 사전협의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5.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 벌채 등의 허가·신고

현 행	개 정 안[42]
	1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8.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9.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22.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 24.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7.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9.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허가 및 같

현 행	개 정 안[42]
	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0.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인·허가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허가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대체지정,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및 그에 따른 인·허가의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강원도법」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와 관련된 각각의 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42) 한병도의원안과 정운천의원안은 조 번호에 차이가 있을 뿐 조문 내용이 동일함. 이하에서는 먼저 접수되어 의안번호가 앞서는 한병도의원안의 조 번호를 기준으로 함

개정안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체계·자구의 수정 등이 필요해 보임.

참고로, 산림청은 「강원도법」의 산림이용진흥지구 관련 규정들과 내용 및 체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는 안 제75조제1항제4호의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는 인·허가시 납부하는 수수료가 아니라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대가이므로, 이를 면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임.

문화체육관광부는 안 제75조제1항제5호의 경우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은 승인기준 판단여부 및 인·허가의제 가능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환경부는 안 제75조제1항제11호 중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부분 및 제22호의 경우 특구 시행계획에 「소음·진동관리법」의 적용대상인 공장시설이 반영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자연공원법」의 입법목적 등 고려시 각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토교통부는 안 제75조제1항제8호의 경우 「강원도법」에 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산업통상자원부는 안 제75조제1항제6호의 경우 광업권 취소처분 등은 타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인·허가의제의 대상으로 포함하기 적절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특구 내 적용되는 각종 특례 등

현 행	개 정 안[43]
<신 설>	**제76조(친환경 산악관광사업 시행에 대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산악관광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토지 등을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74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③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 설>	**제77조(친환경 산악관광특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산악관광특구에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친환경 산악관광사업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0조·제12조, 제15조의2제5항, 제18조제2항·제4항·제5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의 절차, 기준, 조

현 행	개 정 안[43]
	건, 기간·기간연장,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및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서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산악관광특구에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악관광사업에 대하여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청장 및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1. 같은 법 제7조에 대한 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 2.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협의의 범위·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악관광특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에는 「초지법」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지전용 허가 기준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산악관광특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 및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 및 공원관리청의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74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개발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을 정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국유림(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보전국유림을 포함한다)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거나 매각·교환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43]
	이 경우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림에 시설물을 기부·철거하거나 원상회복할 것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산악관광특구에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악관광사업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기준과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기준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⑧ 산악관광특구에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악관광사업에 대하여는 「궤도운송법」 제2조제13호에도 불구하고 산악벽지형 궤도의 요건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신 설>	**제78조(친환경 산악관광특구의 조세·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산악관광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취득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산악관광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현 행	개 정 안[43]
	4.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하천법」에 따른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신 설>	**제79조(친환경 산악관광특구의 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 ①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산악관광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 유치를 위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80조(「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6조(산악관광특구에 한정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제외한다), 제15조의2(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제외한다), 제17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9조제2항·제3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1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2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9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5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현 행	개 정 안[43]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신 설>	**제81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제77조제7항 및 제80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 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보전산지가 편입된 산지일시사용허가 3. 「산림보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신 설>	**제82조(산림문화·휴양·복지 특례)** ① 도지사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3항·제4항, 제14조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해제되는 자연휴양림과 별도로 전북자치도에 지역특화 자연휴양림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북자치도 내 지역특화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제27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29조제1항, 제33조제1항·제3항·제4항, 제35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36조,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에 따라 지정·조성되는 산림복지지구 등과 별도로

현 행	개 정 안[43]
	전북자치도에 지역특화 산림복지지구 지정·조성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북자치도 내 지역특화 산림복지지구 등에 대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산림복지지구 등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토지 등의 수용·사용, 「산지관리법」 등 적용특 등 특구 내 산악관광사업의 용이한 수행을 위한 각종 특례를 도입하고 있음.

다만, 각각의 규정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안 제76조는 사업시행자가 산악관광사업의 시행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보상법」 제4조의2[44]는 「토지보상

43) 한병도의원안과 정운천의원안은 조 번호에 차이가 있을 뿐 조문 내용이 동일함. 이하에서는 먼저 접수되어 의안번호가 앞서는 한병도의원안의 조 번호를 기준으로 함

44) **「토지보상법」**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8호에 따른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폐지, 변경 또는 유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4조 또는 별표의 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바, 「토지보상법」의 개정이 전제되지 않는 한 안 제76조는 삭제·조정이 필요해 보임.

동일한 사유로 「강원도법」의 경우에도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토지의 사용·수용에 관한 규정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제외되었음.

둘째, 안 제78조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등 조세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부과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먼저,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개별법상 조세 감면 근거가 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감면 근거가 직접 규정[45]되어야 하므로 개별법상 재량규정을 두는 것은 실질적인 조세 감면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이해관계자의 불필요한 기대 및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45)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 25. (생 략)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음,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감면과 관련하여, 적정한 개발이익의 환수 및 배분이라는 개발부담금 제도 등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개정안에서는 사업시행자에 혜택만 부여하고 있고 개발이익의 재투자 등 공익적 기여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규제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개별법을 통한 면제·감면 특례 등으로 인해 각종 부담금 제도의 실효성 문제[46]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종 부담금 면제·감면에 대해서는

---

46) 특히, 개발부담금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부과 제외 및 감면 대상 법률 및 관련 사업을 나열하고 있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동을 말한다)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면·동(행정동을 말한다)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인 경우를 제외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관광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물류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범위에서 경감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동일한 사유로 「강원도법」의 경우에도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관련 규정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제외되었음.

셋째, 사업의 시행 이후 사업의 완료절차(준공검사) 등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바, 관련 입법례를 참고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임.

기타 권한이양 및 특례에 대하여는 부처 의견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산림청은 「강원도법」의 산림이용진흥지구 관련 규정들과 내용 및 체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안 제77조의 경우 친환경 산악관광특구의 지정 목적, 백두대간 보호구역 중 핵심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의 특별한 보호 및 엄격한 관리 필요성,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조항에서 도입하려는 특례의 삭제 또는 수정이 필요하고, 안 제82조의 경우 전북자치도의 산림복지 인프라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일부 권한의 이양에 따른 보완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범위에서 요청대로 경감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경감 대상, 경감 기준 및 경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는 입장임.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안 제78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며, 개별법 규정의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농림축산식품부는 안 제77조제3항의 경우 초지 훼손의 심화가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토교통부는 안 제76조의 경우 산악관광사업이 공익성을 가진 사업인지 불분명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는 소유자 등과 협의를 통해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신중함 검토가 필요하고, 안 제77조의 경우 「궤도운송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산악벽지형 궤도사업의 승인에 대한 권한이양은 가능하다는 입장임.

환경부는 안 제77조제2항의 경우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대한 일관된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같은 조 제3항의 경우 「강원도법」에 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 생명경제 기반 구축(제3장, 한병도의원안 제83조부터 제116조까지, 정운천의원안 제89조부터 제116조까지)

(1)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이민·외국인근로자 및 생활인구 확대(제1절, 한병도의원안 제83조·제84조, 정운천의원안 제89조부터 제97조까지)

1) 이민·외국인근로자 확대를 위한 특례(정운천의원안 제89조부터 제95조까지)

현 행	정운천의원안
<신 설>	**제89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이 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전북자치도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 자격을 받은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국적법」에 따른 민원업무처리를 위한 접근성 보장 2.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현 행	정운천의원안
	관한 법률」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사회통합교육 제공, 사회적응 지원, 내국인·외국인의 상호이해 증진 등의 사항 3. 그 밖에 전북자치도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제90조(외국인 유학생 특례)** ① 도지사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의 장기체류자격 중 유학자격을 적용받아 전북자치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다른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의 장기체류자격 중 유학자격을 적용받는 외국인으로서 전북자치도 교육기관에 등록한 사람에게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시간을 확대 적용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전북자치도 내 이공계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연구경력·실적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에 대하여 영주·국적 취득 필요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고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영주·귀화 허가를 허용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추천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 및 배우자에게도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신 설>	**제91조(중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중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중·고등학교 외국교육기관, 이 법 제98조에 따

현 행	정운천의원안
	른 중·고등과정 국제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외국인으로서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에 대하여 체류자격 요건을 달리 부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추천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에게도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신 설>	**제92조(전북자치도 이민비자자격 신설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전북자치도에 거주 또는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전북자치도 이민자격”이라고 한다. ② 전북자치도 이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전북자치도에서 생계에 필요한 주 경제활동을 하며 전북자치도에 정착할 것 2.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3. 전북자치도의 지역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이해 등 전북자치도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전북자치도 이민자격 발급 요건의 기준·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항에 따른 전북자치도 이민자격을 도지사의 추천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신 설>	**제93조(기술연수자격 확대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달리 정

현 행	정운천의원안
	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지사가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94조(새만금 고용특구 특례)** ① 도지사는 새만금 사업지역의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 사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새만금 고용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새만금 고용특구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 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새만금 고용특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주의 고용조정 2. 근로자의 실업 예방 3.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4. 그 밖에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④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 및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새만금 고용특구 내의 기업에 고용된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현 행	정운천의원안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 자격을 받은 사람 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고용특구 내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라고 한다)는 도조례에 따라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고용특구 내 기업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가 도지사가 정하는 수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업활동 제한기간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⑦ 새만금 고용특구에 한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4제1항, 제20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⑧ 새만금 고용특구에 한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제3항·제4항, 제6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⑨ 새만금 고용특구에 한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3항,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이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현 행	정운천의원안
	도 불구하고 새만금 고용특구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총리 소속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정한 것으로 본다. ⑪ 새만금 고용특구에서 내국인 구인노력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도조례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95조(해외 우수창업기업 체류자격 지원시설 특례)** ① 도지사는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지원을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이 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지정·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정운천의원안은 법무부장관이 전북자치도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의 요건 및 도내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요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도내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영주·국적취득 필요기간 단축 적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전북자치도에 거주 또는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인 “전북자치도 이민자격”을 신

설하려는 것임.

또한 외국인 기술연수생의 모집·입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 취업활동 제한기간 등이 달리 적용되는 새만금 고용특구 및 해외 우수인력과 창업기업의 국내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운천의원안은 전북자치도 내 외국인 이민자의 정착을 유도하여 인구 및 인재영입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특례를 적용받은 외국인의 거주지 변경에 따른 출입국·이민 제도의 혼란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 인력 유입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47]

---

4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6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정운천의원안 제94조의 경우 외국인력(E-9) 도입·활용은 노사 단체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고용허용 업종 결정 등의 업무는 국가 차원의 산업정책, 인력공급 정책과도 연계되어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협조가 필요하므로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과의 상충가능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법무부는 정운천의원안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 및 제95조의 경우 비자 업무는 전속적 국가 사무로서, 국가에서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고, 외국인의 국내 체류, 활동 범위와 관계된 비자 사무의 특성상 외교, 고용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및 이민정책과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1.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국적법」에 따른 민원업무처리를 위한 접근성 보장
2.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사회통합교육 제공, 사회적응 지원, 내국인·외국인의 상호이해 증진 등의 사항
3.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특례(한병도의원안 제83조·제84조, 정운천 의원안 제96조·제97조)

현 행	개 정 안[48]
<신 설>	**제83조(인구감소특별광역지역 지정 특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법법」 제2조제12호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인구유입과 정착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전북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을 포함하여 전북자치도를 인구감소특별광역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특별광역지역에 지원·교부할 수 있다.
<신 설>	**제84조(귀농어·귀촌 활성화 특례)** 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등 귀농어 후 안정적인 영농영어를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초기 지원 기간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귀농어·귀촌 청년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귀농어·귀촌 청년의 농어촌 취업 및 창업 지원 2. 귀농어·귀촌 청년의 정주여건 지원 3. 귀농어·귀촌 청년의 능력개발 및 생활 안정 지원

48) 한병도의원안과 정운천의원안은 조 번호에 차이가 있을 뿐 조문 내용이 동일함. 이하에서는 먼저 접수되어 의안번호가 앞서는 한병도의원안의 조 번호를 기준으로 함

(안 제83조)

개정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12호[49]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내 시·군이 아닌 전북자치도 자체를 인구감소특별광역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에 대하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한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특성에 따른 기금의 합리적 배분 필요성, 도내 시·군과 도에 대한 중복지원 가능성, 2022년부터 운용되기 시작하여 아직 초창기인 지방소멸대응기금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전북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시·군(전주·군산·완주)에 대한 기금 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4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안 제84조)

개정안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제1항[50]에도 불구하고 귀농어 후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농어업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귀농어·귀촌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외 국가가 시행하는 초기지원사업의 기간 또한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초기지원에 한정하여 지원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50)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귀농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농어업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기준과 대상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생명경제 인재거점 조성(제2절, 한병도의원안 제85조부터 제98조까지, 정운천의원안 제98조부터 제110조까지)

1) 전북과학기술원 설립(한병도의원안 제85조)

현 행	한병도의원안
<신 설>	**제85조(전북과학기술원 설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경제 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과 국내외 및 산업계와의 교육·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전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북과학기술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한병도의원안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자치도에 전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전북자치도의 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관련 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과학기술원의 경우 현재 대전(KAIST), 광주(GIST), 대구·경북(DGIST), 울산(UNIST)에서 설치·운영 중에 있음.

또한 2021년 기준 17개 광역·시도별 총 연구개발비[51] 및 국가R&D 사업 투자액 현황을 보면, 2021년 총 연구개발비는 102조 1,352억원으

51) 정부·공공부문, 민간부문 외국부문 연구개발비의 총합

로 나타났으며, 이 중 전라북도의 총 연구개발비는 1조 4,112억원으로 나타났음. 또한 국가R&D사업 투자액은 전체 24조 2,125억원이었으며, 이 중 전라북도에 투자된 금액은 9,296억원으로 나타났음[52].

<2021년 총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억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162,043	17,627	14,876	32,270	11,089	94,428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11,900	6,534	519,571	6,859	21,307	36,330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4,112	8,143	27,751	34,080	2,433	1,021,352

※자료: 2022년 지역 R&D 실태조사 바탕으로 재구성

<2021년 국가R&D사업 투자액 현황>

(단위: 억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48,767	10,002	7,168	5,243	5,708	68,208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3,651	5,877	28,082	3,601	7,656	6,455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9,296	3,654	7,271	19,628	1,858	242,125

※자료: 2022년 지역 R&D 실태조사 바탕으로 재구성

52) 2022년 지역 R&D 실태조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상술한 과학기술원 설치 현황 및 연구개발 관련 투자현황을 고려할 때 전북자치도에 과학기술원을 설립함으로써, 자생적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라 전북과학기술원이 설치되려면 별도의 법률이 제정될 필요가 있고, 「강원도법」의 경우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에 관한 규정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제외되었음.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대학과의 관계, 연구역량 분산, 과학기술 인력 수급 전망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호남지역 이공계열 대학들의 반발 우려, 전국적인 학령인구 및 전북지역 대학 신입생 충원률과 입학정원의 감소추세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국제학교 설립 등(한병도의원안 제86조부터 제98조까지, 정운천의원안 제98조부터 제110조까지)

현 행	개 정 안[53]
<신 설>	**제86조(국제학교의 설립)** ① 전북자치도는 환황해권시대를 선도하는 새만금 지역의 개발과 부흥, 글로벌경쟁력 증진과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정주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53]
	② 국제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 간 상호 병설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87조(국제학교의 설립 자격)**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 2. 이 법, 다른 법령 및 외국의 법령(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법인 **제88조(국제학교 설립승인)** ① 제87조제1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려면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87조제2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려면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교육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국제학교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국제학교의 명칭,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등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제학교의 설립·운영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사항 중 도조례로 정하는 주요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학교의 설립 협의 또는 승인과 그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현 행	개 정 안[53]
	정한다. **제89조(국제학교의 위탁운영 등)** ① 제88조제2항에 따라 국제학교 설립승인을 받은 법인(이하 “국제학교법인”이라 한다)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운영을 제87조제2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87조제1호의 자는 설립한 국제학교의 운영을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제87조제2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국제학교는 국제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제학교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90조(국제학교의 운영 등)** ① 국가와 전북자치도는 국제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정하되, 국어 교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입학하는 외국인에게는 국어 교과와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제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학년도,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등 수업에 관한 사항 2. 학년제, 수업연한 등에 관한 사항 3. 국제학교의 교과용 도서 사용에 관한 사항 4.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입학자격, 입학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④ 국제학교의 학교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재학 중인 학생과 학교의 평가, 평가의 절차 및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도조

현 행	개 정 안[53]
	례로 정한다. 다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인 국공립 국제학교의 수업료에 관한 사항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다. ⑤ 국제학교의 장은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해당 학교 과정에 입학(재입학·전학·편입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⑥ 국제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⑦ 국제학교의 학생은 국제학교 수학으로 인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1조(다른 법률의 적용)** ①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징계, 학교생활기록, 학생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 「유아교육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5조제1항 및 제30조의6을 적용한다. 다만, 학생생활기록의 구체적인 작성과 그 방법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유아교육법」 제31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라 휴업명령·휴원처분 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제92조(국제학교의 교원임용 등)** ①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의 자격과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국제학교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제외한다)이 설립·운영하는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임면, 복무, 신분보장·사회보장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제54조의2,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 제66조의4

현 행	개 정 안[53]
	및 제70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에게는 같은 법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학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제87조제1호의 자가 설립한 국제학교의 교원에 한정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35조 각 호의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제87조제1호의 자가 설립한 국제학교의 장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국제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제87조제1호의 자가 설립한 국제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3조(국제학교의 회계처리 등) ① 국제학교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처리는 그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을 따른다. ③ 국제학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잉여금은 학교 설립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④ 국제학교법인의 기관과 해산·합병은 그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국제학교법인의 기관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현 행	개 정 안[53]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제94조(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① 국제학교법인은 설립승인을 받은 국제학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승인일로부터 3주 안에 「민법」 제50조에 따른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5조(「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국제학교의 지도·감독, 재정지원 및 이에 따른 조치, 국제학교의 폐쇄승인 등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학교법인”은 “국제학교법인”으로, “외국교육기관”은 “국제학교”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국제학교의 장”으로, “교육부장관”은 “도교육감”으로, “대통령령”은 “도조례”로, “학과”는 “학교”로 본다. **제96조(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북자치도에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외국대학의 설립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53]
	③ 제2항에 따라 도교육감 또는 도지사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승인하는 경우 각각 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마쳐야 한다. ④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외국대학의 설립기준에 관하여 도조례로 정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도교육감과 도지사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에 소속되는 위원회를 둔다. ⑥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⑦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은 “도교육감”으로, 외국대학은 “도지사”로 보고, “대통령령”(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은 제외한다) 또는 “교육부령”은 “도조례”로 본다. ⑧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⑩ 전북자치도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또는 제

현 행	개 정 안[53]
	14조에 따라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을 지원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학교기관의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참여 여부와 참여 방법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97조(외국교육기관의 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등을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時價) 이하로 양여(讓與)하거나 대부·사용·수익(이하 이 조에서 “무상양여 등”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등을 받은 공유재산 등을 매각하거나 분양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무상양여 등을 받은 자가 양여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8조(대학 학생정원 조정 특례)** ① 도지사는 「고등교육법」 제32조(보건의료 정원과 사범계열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학생정원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안 제86조부터 제97조까지)

개정안은 「제주도법」과 동일·유사하게 전북자치도에 교육 관계 법률

53) 한병도의원안과 정운천의원안은 조 번호에 차이가 있을 뿐 조문 내용이 동일함. 이하에서는 먼저 접수되어 의안번호가 앞서는 한병도의원안의 조 번호를 기준으로 함

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북자치도의 국제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보임.

국제학교란 「제주도법」에 근거하여 제주자치도에 설치된 학교로, 내국인 및 외국인 학생정원 쿼터없이 제주자치도 영어교육도시에 국가·제주·국내외 법인(영리법인 포함)이 설립할 수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등을 적용받지 않아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함.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또는 제주자치도 내에 설립되며, 내국인 쿼터를 30%로 두고 있음.

<국제학교 등 유사 교육기관 비교>

구분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제주 국제학교
근거 법령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 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유아교육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설립 자격	● 비영리 외국 학교법인	● 외국인 ● 비영리 외국법인 ● 국내 학교법인	● 국가 ● 제주특별자치도 ● 국내외 법인
설립 목적	●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투자 유치	● 국내거주 외국인 자녀교육	●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

구분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제주 국제학교
		• 해외거주 후 귀국한 내국인의 교육	• 국제화된 전문 인력 양성
설립 가능 지역	• 경제자유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 행정중심복합도시(고등) •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거점지구 • 기업도시(고등) • 새만금지역 • 평택시	• 전국 설립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내국인 입학 비율	• 초·중등 : 총 정원의 30%(50%까지 확대 가능) • 고등 : 제한 없음	• 학생 정원의 30% (50% 까지 확대 가능)	• 제한없음
설립 운영 현황	• 유・초・중등: 2개교 • 고등: 5개교	• 외국인유치원(1개교) • 외국인학교(38개교)	• 4개교 (한국국제학교, NLCS Jeju, Branksome Hall Asia, SJA Jeju)

※자료: 교육부,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를 바탕으로 작성
(https://www.isi.go.kr/EgovPageLink.do?link=isi/kr/serviceIntro/service04&menuId=A004)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 당초 설립목적의 변질, 학교 서열화 및 교육양극화 심화 등의 이유로 교육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폐지·축소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과 학생의 선택권 및 학교간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적수준 제고 등의 이유로 교육의 자율성·수월성을 고려하여 유지·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으므로, 특례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어보임.

참고로, 「강원도법」의 경우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제외되었음.

또한 교육부는 현재도 「새만금법」에 근거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점, 국제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이 배제되고, 내국인학생이 비율·자격 제한없이 입학할 수 있으며, 영리법인이 설립할 수 있는 등 예외적 제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98조)

개정안은 「고등교육법」 제32조[54]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주도법」 제218조[55]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교육자치의 확대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나,

---

54) **「고등교육법」**

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55) **「제주도법」**

제218조(대학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②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제1항(제4호의 사항만 해당한다), 제24조, 제32조(보건의료정원과 사범계열정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5조제6항, 제36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0조의2 및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조례로 정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주도법」과 달리 국립학교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보임.

참고로, 교육부는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립학교 운영에 관한 국가의 책무성 등을 고려할 때 국립학교는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권한이양에 맞추어 대학에 대한 점검조치 등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금융산업 및 투자유치 진흥(제3절, 한병도의원안 제99조부터 제113조까지, 정운천의원안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1) 금융산업 진흥(한병도의원안 제99조부터 제103조까지)

현 행	한병도의원안
<신 설>	**제99조(금융전문인력 양성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있는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의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 행	한병도의원안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전북자치도에 금융중심지가 지정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신 설>	**제100조(생명경제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 지원 특례)** ① 도지사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 등을 통한 생명경제 금융산업(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누리기 위한 연금 및 보험업과 생명경제도시 형성을 위한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및 연기금·보험 상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업을 말한다)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제사업을 하는 단체 및 기관 2. 국가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및 기관 3. 제1호나 제2호를 투자자로 두고 있는 자산운용사 4. 새만금 및 생명경제도시를 대상으로 부동산간접투자상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및 부동산투자회사 ② 국가는 도지사가 제1항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전북자치도에 금융중심지가 지정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신 설>	**제101조(생명경제 금융교육 특례)**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금융에 관한 올바른 이해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 금융복지를 누릴

현 행	한병도의원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에 따라 수립되는 금융교육에 관한 정책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자산운용 및 금융투자 환경 변화에 따라 도민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2. 금융지식이 취약한 금융소비자의 금융교육과 평생교육 측면에서 복잡하게 진화하는 고도의 전문적인 금융지식 및 실무에 대한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 ②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서 제안된 금융교육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전북자치도 소재 금융교육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102조(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 특례)** ① 도지사는 전북핀테크육성지구(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누리기 위한 연금 및 보험업과 생명경제도시 형성을 위한 부동산간접투자상품 및 연기금·보험 상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업과 연계되는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기업들을 집적할 목적으로 설치한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북핀테크육성지구에 입지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이하 “전북핀테크 기업”이라 한다)가 금융규제 샌드박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 제25조의 사항을 말한다)를 신청하기 전 컨설팅을 하는 기관을 지정하거나 설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전북핀테크 기업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북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두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현 행	한병도의원안
	④ 제3항에 따른 전북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03조(전자적 투자조언장치 활용 특례)** ① 도지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전북핀테크육성지구에 입지한 핀테크기업이 개발한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심사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센터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설치·운영하거나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북핀테크육성지구에 입지하여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테스트베드센터의 심사를 통과하고 금융투자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등록요건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등록업무 단위별 자기자본 보유 규모 2.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 보유 규모 ③ 도지사는 금융투자업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금융투자업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을 등록한 투자자문업자와 투자일임업자가 전북핀테크육성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경우 도지사는 금융투자업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5호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한병도의원안은 전북자치도에 금융중심지[56]가 지정될 때까지 금융위원회가 전북자치도에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새만금 및 생명경제도시를 대상으로 부동산간접투자상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등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도지사가 도민의 금융복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각종 교육프로그램 및 금융역량 강화 시책을 제안하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제안받은 사항을 금융교육에 관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며, 전북자치도에 전북핀테크육성지구를 지정하여 지구에 입지하는 전북 핀테크기업이 지정 신청한 혁신금융서비스[57]를 별도로 심사하는 전북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육성지구 내 금융투자업 등록기준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전북자치도의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특화 핀테크산업을 육성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에 대하여는 금융중심지 분산으로 인한 기존 금융중심지(서울·부

---

56)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2. 3. 21.>
1. “금융중심지”란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금융거래 및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말한다

57)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산)의 집적효과 약화 가능성, 비대면 서비스 전환의 가속화에 따라 지역적 경계가 약화되고 있는 금융산업의 특징,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금융산업의 전문성,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기존 금융중심지의 반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을 통한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금융중심지 지정제도의 취지, 정책 효과성, 전문성 및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단위 통일된 수행이 필요한 금융교육 업무의 특성, 고도의 전문성과 수행경험을 지닌 기관이 전담하는 것이 적절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선정 관련 컨설팅 업무의 특성,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의 일관성·공정성 확보 필요성, '동일기능·동일규제'라는 금융규제의 핵심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투자유치 진흥(한병도의원안 제104조부터 제108조까지, 정운천의원안 제111조 및 제112조)

현 행	개 정 안[58]
<신 설>	**제104조(새만금개발 촉진을 위한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등 금융 특례)** ① 새만금사업지역 내 부동산과 시설 개발

현 행	개 정 안[58]
	에 자산을 투자하여 운용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그 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출자한도 제한, 자산운용제한 및 투자 제한 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 제37조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제10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344조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기업결합신고 대상 회사 또는 상대 회사가 되어 새만금사업지역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통한 자산의 양수를 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 3. 제2호에 따른 회사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로 한정한다) 4.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신 설>	**제105조(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등 특례)** 지방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24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현 행	개 정 안[58]
	률」 제38조에 따라 대통령령 혹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한 국비 보조비율, 지원한도액 등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06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특례)**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자치도 지방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이라 한다) 중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유리한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투자진흥지구의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등 주요 사업내용 4.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진흥지구는 도지사가 관리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58]
	⑤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07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제106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108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특례)** 국가는 전북자치도 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제14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현금지원의 국가분담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지역 내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개별 법률상의 각종 출자제한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전북자치도의 지역특화산업 등의 육성을 위한 국가의 지원 한도액 등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전북자치도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하여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59]에 따

58) 정운천의원안 제111조 및 제112조는 한병도의원안 제105조 및 제108조와 조 번호를 제외한 실질적 내용이 동일함. 이하 먼저 접수되어 의안번호가 앞서는 한병도의원안의 조 번호를 기준으로 함.

59)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국비분담비율을 상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국가 지원 확대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임.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현재도 「새만금법」에 따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운영할 수 있는 점[60], 한정된 국가예산의 합리적 배분 필요성,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설·증설,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60) **「새만금법」**

제11조의5(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주요 사업내용
3.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③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청장이 관리한다.

④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6(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5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안 제105조의 경우 국비 보조비율, 지원한도액 등의 결정은 국가사무로서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안 제106조의 경우 전북자치도에 대한 우대 근거가 미흡한 점, 현행 지방비 매칭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정책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금융위원회는 안 제104조제1항과 관련하여, 타 회사의 주식소유 제한 제도는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금융안정, 이해상충 방지, 경제력 집중 억제 등을 위한 우리 금융제도의 중요한 원칙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특례조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산업단지 등 조성 특례(한병도의원안 제109조부터 제113조까지, 정운천의원안 제113조)

현 행	개 정 안[61]
<신 설>	**제109조(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생명경제 연구산업진흥을 위하여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새만금

현 행	개 정 안[61]
	사업지역에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10조(연구개발특구의 변경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특구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2. 특구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특구의 변경에 관하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제7항 중 “지정”은 “변경”으로 본다.
<신 설>	**제111조(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등 특례)** ① 도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의 요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법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중 100만㎡ 미만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2.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법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시행자와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

현 행	개 정 안[61]
	행자가 시행하는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의2제1항, 제21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37조제1항·제2항·제5항,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산업단지 지정 제한 기준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산업단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기반시설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2조(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특례)** 전북자치도 내 국가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관리 기본계획 승인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신 설>	**제113조(국가 IT창업특구 조성·운영)** ① 도지사는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 있는 IT 기업의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국가 IT창업특구를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창업특구의 성장과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자치도는 공동으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담하는 상설조직을 전북자치도 관할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61) 정운천의원안 제113조는 한병도의원안 제113조와 내용이 동일함. 이하 먼저 접수되어 의안번호가 앞서는 한병도의원안의 조 번호를 기준으로 함.

(안 제109조·제110조)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새만금사업지역에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지역에 관한 사항이므로 기본적으로 「새만금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연구개발특구 축소·확대의 경우 그 상한과 축소·확대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강원도법」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강원자치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강원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또한 안 제109조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만금 산업단지는 아직 조성단계에 있고, 2023년 5월 현재 입주기업이 29개소에 불과하여 연구산업 발전기반이 미비한 점, 연구산업진흥단지는 지방자치단체 공모,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될 필요가 있는 점, 공모 등의 절차에 참여했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111조·제112조)

개정안은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발계획 수립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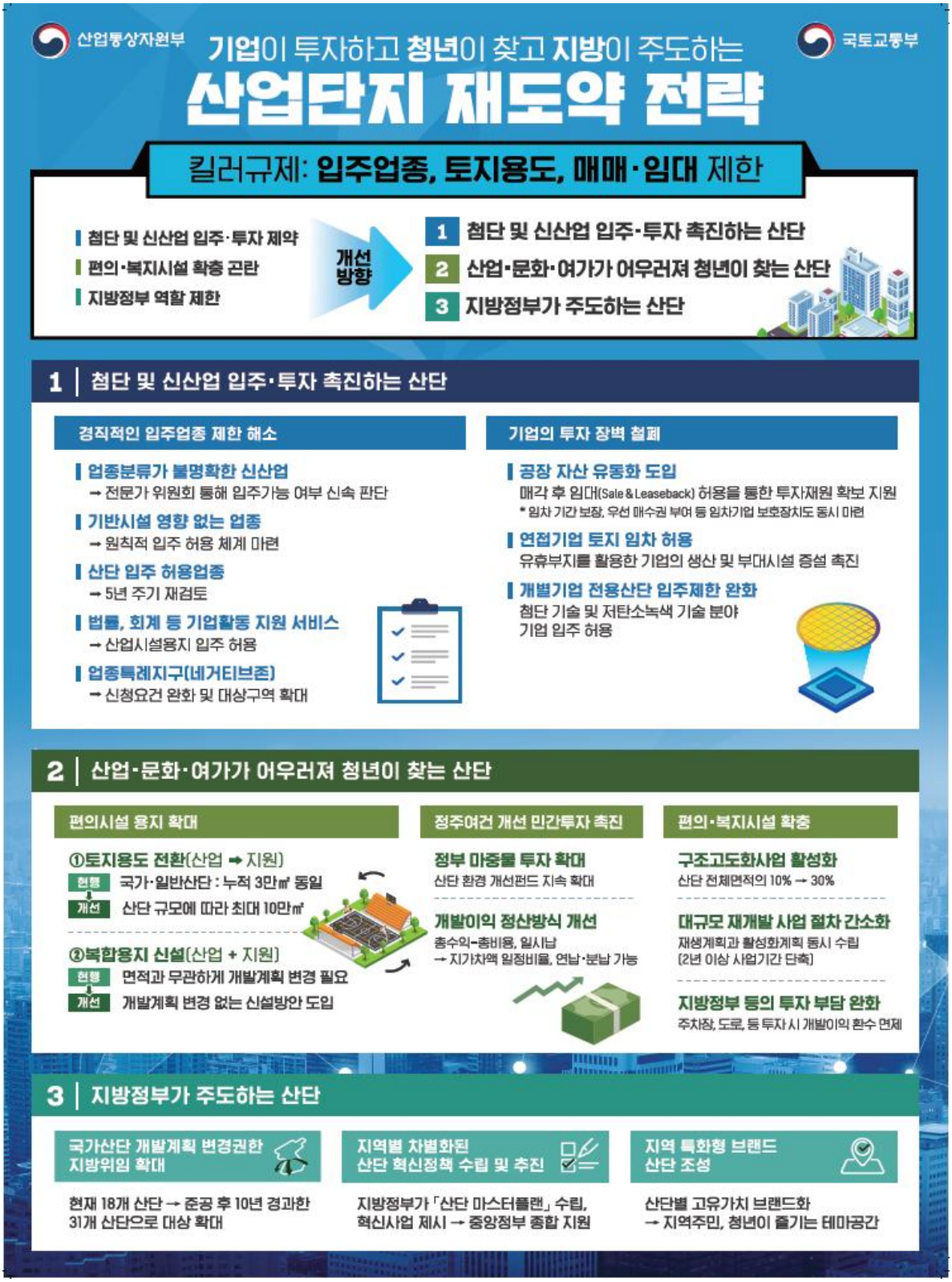
개정안에 대하여는 현재 각종 산업단지의 조성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이미 시행중에 있는 점,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실시계획 변경권한의 시·도지사에 대한 위임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2023. 8. 발표[62]된 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안 제111조와 관련하여, 국가기간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 등의 국가산단 목적을 고려할 때 국가산단 관련 권한의 위임은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산업통상자원부는 안 제112조와 관련하여, 현재도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는 점, 국가산단의 체계적 관리 및 조성목적 달성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62) 산업단지 3대 킬러규제 혁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2023. 8. 24.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 인포그래픽>



※ 자료: 산업단지 3대 킬러규제 혁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2023. 8. 24.

(안 제113조)

개정안은 도지사가 IT기업의 창업촉진을 위한 국가IT창업특구를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IT창업특구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조성·운영하는 특구에 “국가”가 포함된 명칭을 사용할 경우 국민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분장 및 사무에 따른 비용부담원칙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안 제113조제3항에 대하여 사업전담 상설조직이 중소벤처기업부의 하부조직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글로벌 관문 및 생명경제 거점 조성(제4절, 안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4조(새만금의 생명경제 거점화를 위한 특례)** 새만금 지역을 생명경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현 행	개 정 안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에 따른 새만금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신 설>	**제115조(새만금 연결 지방도의 국도 또는 국가지원지방도 지정 특례)** ① 도지사는 「도로법」 제12조제1항,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과 연결된 지방도 구간을 국도 또는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 지정 시 이를 우선 반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16조(새만금사업지역의 국가예산 공모사업 신청 특례)** 전북자치도는 새만금사업지역의 행정구역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안은 「새만금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 새만금개발사업에 관한 새만금개발청장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도지사가 새만금사업지역과 연결된 지방도 구간을 국도 또는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새만금사업지역의 행정구역이 확정되기 전까지 전북자치도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지역 및 새만금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이므

로, 법 체계상 「새만금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안 제114조 및 제116조의 경우 「새만금법」에 따라 새만금사업 단계별로 전북자치도의 의견제시 및 참여기회가 적극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점, 새만금사업의 안정적·효율적 추진필요성, 전북자치도에서 추진하려는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새만금청 등과 협의·조정을 통해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공정한 삶의 질 제고(제4편, 안 제117조부터 제163조까지)

가. 균등한 정주기반과 생활환경 개선(제1장, 안 제117조부터 제136조까지)

(1) 교통여건 개선(안 제117조부터 제123조까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7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례)**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내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은 대도시권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로 본다. ③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내 “광역버스운송사업”이란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운행되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신 설>	**제118조(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특례)** ①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제3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는 「국가 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신 설>	**제119조(국가지원 지방도의 권한 이양 특례)** 도지사는 「도

현 행	개 정 안
	로법」 제3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내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120조(광역교통시설 국비 추가지원 특례)** 국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중 전북자치도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21조(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지원 특례)** 국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0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를 건설·개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22조(수요응답형교통체계 운영 특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본다.
<신 설>	**제123조(버스 공영제 지원 특례)** 국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군에서 노선버스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17조)

개정안은 전북자치도 내 인구 50만 이상인 도청소재지(전주시) 및

인근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63]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이에 대하여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시키려는 취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64]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대도시권의 정의 및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안 제118조·제119조)

개정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65],

---

6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도시권"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64) 의안번호 제2102276호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6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 및 환경친화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로법」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 실시[66]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2023. 2. 10.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인구 10만명 미만의 지역에 대해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이 발표[67]되었으므로, 해당 논의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적용이 필요한 점, 현재 인구 10만명 미만의 도시교통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고시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국토교통부와 광역지자체 모두 조사·설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66)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③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도로공사에 필요한 조사·설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의 국가지원지방도 구간에 대한 조사·설계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실시하되,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건설·관리계획과 제3항에 따른 조사·설계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67) "윤석열 정부, 지역 중심의 진정한 지방시대 연다"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3. 2. 10.

(안 제120조·제121조)

개정안은 광역교통시설 및 복합환승센터의 건설·개량 등의 사업에 대한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광역교통시설 및 복합환승센터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이므로, 안 제117조 등에 따라 전북자치도 내에 대도시권이 지정되지 않을 경우 입법실익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안 제117조의 도입여부에 따라 도입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안 제120조에 대하여 전북자치도는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아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대상지역이 아니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기획재정부는 안 제120조·제121조에 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에 반하는 점, 「강원도법」의 사례, 규제개선을 통한 자율 성장이 우선될 필요가 있는 특별자치도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122조·제123조)

개정안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대상지역을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북자치도 내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노선버스운송사업 등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에 대하여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68]에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가 기 마련되어 있는 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안 제122조와 관련하여, 현재도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농어촌 지역 및 대중교통 부족지역 등에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도입할 수 있으므로 전북자치도에 대한 추가적인 특례 부여는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안 제123조와 관련하여,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등은 지방이양 사

---

6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무로써, '05년 이후 교부세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비지원은 현행 예산지원 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기타 생활환경 개선(안 제124조부터 제126조까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4조(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물 지정 특례)** ① 도지사는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3항·제5항에 따른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외에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방위경보 전파대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125조(소음 진동 관리 등 특례)** ①「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6조 후단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2호, 제12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5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5항제1호, 제6항, 제24조제2항, 제26조 전단, 제27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35조, 제46조제1항·제2항(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한정한다), 제49조(도조례로 정한 강화된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한정한다) 및 제60조제4항(도 조례로 정한 강화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환경기준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26조(도서관 조성에 관한 특례)** 「도서관법」 제36조(사립공공도서관에 한정한다) ·제45조제1항 및 제4항(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에 한정한다) 및 같은 법 제48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안 제124조)

개정안은 도지사가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3항·제5항에 따른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69]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지역 현황을 고려하여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물을 도지사가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생활여건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물로 지정될 경우 해당 건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 전파를 위하여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의무적으로

69) **「민방위기본법」**
제33조(민방위 경보) ③제1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 대상 건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 전파를 위하여 제33조의2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운수시설, 대규모점포 및 영화상영관 중 민방위 경보 대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설치해야 하므로, 관리주체의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정 전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보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안 제125조)

개정안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공장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마련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이에 대하여는 전북자치도의 특성을 고려한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의 마련 필요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자치단체별 상이한 기준에 따른 주민 혼란,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환경부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적용할 필요가 있고, 생활소음 규제기준 등을 다르게 정할 경우 적용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126조)

개정안은 사립공공도서관 등록 및 공공도서관의 인력배치기준, 시설 및 자료기준, 도서관 이용료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에 대하여는 전북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도서관 기준 등의 마련 필요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필수 의료·복지·안전체계 구축(제2장, 안 제127조부터 제134조까지)

(1) 필수의료·복지체계 구축(안 제127조부터 제131조까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7조(의료취약지 응급의료 특례)** 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취약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현 행	개 정 안
	장관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28조(성장촉진지역 지방의료원 운영 지원 특례)** 국가는 전북자치도 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에 설립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에 한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29조(산재보험 시설 등 설치·운영 특례)**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산업재해 근로자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연구기관 등을 전북자치도에 우선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30조(보건·복지 시설 설치·운영 기준 특례)** ① 「노인복지법」 제37조제5항 및 제39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아동복지법」 제45조제5항 및 제5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6항 및 제59조의13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31조(어린이집 운영 기준에 관한 특례)** ① 「영유아보육법」 제23조제1항, 제23조의2제1항, 제23조의3,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11조제3항,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1항제8호, 제29조제5항, 제37조 및 제43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안 제127조·제128조)

개정안은 「공중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취약지[70]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27조), 성장촉진지역에 건립된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국가의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8조).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71]에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의 비용

7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고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주기적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분석하여야 한다.
1. 인구 수, 성별·연령별 인구 분포, 소득 등에 따른 지역 내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의료인력·의료기관의 수 등 지역 내 의료공급에 관한 사항
3.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의료기관 접근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 공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의료취약지를 지정할 때에는 부족한 의료서비스의 대상 및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의료취약지(이하 "의료취약지"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에 대한 지원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의 보조 등

71)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

지원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점,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안 제127조의 경우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특례 적용 실익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안 제128조의 경우 현재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및 의료인력 파견사업 등을 통해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고지원을 기 시행중에 있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비는 설치·운영 주체인 자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129조)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 및 의료기관·연구기관 등[72]을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립,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7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 1. 27., 2015. 1. 20.>

5.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5의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요양 및 재활

5의3.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검정 및 보급

전라북도는 2021년 전라북도의 산업요양재해율은 0.77%로 전국 4위[73]이나, 도내 공공 산재의료기관이 부재하여 순천병원, 대전병원 등 인근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임.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산업재해 환자 수,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 및 의료기관 외 공공병원 분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 등의 설치 필요성,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현행법의 취지·목적 및 산재병원 설치 필요성 검토(산재환자 수, 근로자 수, 입·통원환자 비중 등)의 제약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130조·제131조)

개정안은「노인복지법」및「아동복지법」등 개별 법률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에

5의4.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 질병 관련 연구
5의5.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 사업
② 공단은 제1항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73) 전국 평균 0.63, 1위는 강원(1.32), 공동2위는 경남·울산(0.83)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대하여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의 제공 필요성, 전국적 기준에 따른 체계적이고 최소한의 수준이 보장된 복지서비스의 제공 필요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안 제130조와 관련하여, 전국 시도에 지역별 편차가 없는 동일한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안 제131조와 관련하여, 제1항 중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74]에 따른 권한이양 부분은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및 지정취

---

74)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2(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종류, 평가등급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3(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소에 관한 사항으로, 보육품질 담보를 위해 국가 권한이 유지될 필요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안전체계 구축(안 제132조부터 제134조까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2조(소방용수시설 설치·관리 특례)** 전북자치도의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 설치기준은 「소방기본법」 제10조제3항을 따르되, 상수도가 연결되지 않은 지역은 전북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33조(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특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34조(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의 자격과 임명·위촉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의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병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수의사에게도 같은 항 제2호·제3호·제5호의 업무로 한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의사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3.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의 검사관 임명을 위하여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다.

(안 제132조·제133조)

개정안은 상수도가 연결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기준[75]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범위 등[76]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대통령령이 아닌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소방서비스 지원체계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기본적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

75)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급수탑(給水塔)·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이하 "비상소화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7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법률」

제23조(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① 소방관서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안 제132조와 관련하여,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로서 모두 상수도와 연결하여 설치되며, 비상소화장치는 소화전 등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소방호스 등이므로, 상수도가 연결되지 않은 지역에는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없음.

안 제132조와 같이 상수도가 연결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 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 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소방청은 안 제132조와 관련하여,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기준은 화재 안전 및 대비·대응,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유지될 필요가 있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134조)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자격과 임명·위촉에 관한 사항[77]을 대통령령이 아닌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사법」 제21조[78]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에서 근무하지 않는 수의사 등을 도축검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의 가축 방역 및 축산물위생 검사 등의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보임.

참고로, 「제주도법」 제285조 및 제286조[79]에 개정안과 동일·유사한

---

77)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에 가축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은 수의사여야 한다.

78) **「수의사법」**

제21조(공수의) ① 시장·군수는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는 제3호와 제6호의 업무만 위촉할 수 있다.

1. 동물의 진료
2. 동물 질병의 조사·연구
3.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4. 동물의 건강진단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6.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시장·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진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이하 "공수의(公獸醫)"라 한다]는 시장·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촉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79) **「제주도법」**

제285조(가축방역관의 역할 등에 관한 특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의 자격과 임명·위촉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86조(수의사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수의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수의사에게도 같은 항 제2호·제5호의 업무로 한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동물진료 업무에 관한 수의사의 위촉·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취지의 규정이 기 마련되어 실시 중에 있음.

다. 지역특화 발전과 민생경제 활력(제3장, 안 제135조부터 제149조까지)

(1) 지역중소기업 등 지원·육성(안 제135조부터 제138조까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5조(지역중소기업 지원 특례)**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한정한다)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신 설>	**제136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례)** 도지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의 기준을 달리 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활성화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37조(학교·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① 전북자치도에서 학교·공공급식 등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

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전단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은 전북자치도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단순처리품을 포함한다)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38조(식품위생에 관한 특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의 식품접객업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제41조제1항·제8항,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항·제2항·제4항, 제51조제1항 본문, 제56조제2항, 제75조제5항, 제82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89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90조제2항,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101조제5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75조제5항, 제8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안 제135조)

개정안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및 제26조[80]에 따른 중소기업자 개발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8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요구, 중소기업 판로거점확보 지원을 위한 유통망 구축 등 사업수행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81]에 따라 도지사가 중

에게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 이들 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판로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중소기업의 국외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지원에 관한 사업
6. 중소기업의 국외시장개척단의 파견과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에 관한 사업
7. 중소기업의 국외진출을 위한 통·번역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중소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내외 판로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위탁하거나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 및 국내외 시장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공동으로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81)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하여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이전 등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생산이나 판매 활동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위기에 처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지정 기간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여부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을 구성하여 경영환경의 악화 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정 사항을 관

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를 위한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한이 이양될 경우 해당 업무는 종전의 행정주체가 아닌 이양받은 행정주체가 수행하게 되는 바, 권한이 이양되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권한의 이양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그런데 개정안에 따라 이양되는 '중소기업자 개발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요구 권한'은 이양되는 업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현행법의 지역적 적용범위는 전북자치도에 한정되는 바, 전북자치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의 기술개발제품에 한정하여 도지사가 우선구매요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우선구매요구에 따라 의무가 부여되는 상대방이 전북자치도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등인지, 소재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 등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함.

따라서 개정안을 입법화한다면 도지사가 우선구매요구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 및 그 상대방의 범위, 한계 등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정 신청·절차·기간, 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36조)

개정안은 도지사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2호의2[82]에 따른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 8. 16.부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에 대하여 종전보다 완화된 지준을 전국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전북자치도에만 추가적으로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안 제137조)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에 소재하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장 등이 전북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강원도법」제54조[83]에 따른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 급

8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식 공급지원에 관련된 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는 질좋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한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의 특성, 전북자체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현황,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안 제138조)

개정안은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영업허가 기준·절차, 식품위생교육의 내용 등 「식품위생법」에 따라 총리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에 대하여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등 마련의 필요성, 전국적 기준에 따른 일관된 제도 운영의 필요성, 다른 지방

---

83) **「강원도법」**

제54조(접경지역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군 급식 공급지원 등) ① 국가는 군부대에 납품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의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단순처리품을 포함한다)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군부대에 납품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의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국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 제3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품질 좋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이 군부대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섬 및 수산업 관련 지원(안 제139조부터 제144조까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9조(섬발전촉진법에 따른 개발대상섬 지정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소재 섬 지역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섬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대상섬으로 지정할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대상섬의 지정을 신청받은 때에는「섬 발전 촉진법」제14조에 따른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대상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40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등 특례)** ①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 및 제23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산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시험어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41조(관리선의 사용과 제한·금지 특례)** ①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의 제한 및 금지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선의 지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42조(낚시어선의 이용 등 특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제4항, 제38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43조(유어장의 지정 등 특례)**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업법」 제8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른 유어장(遊漁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어장의 일부를 유어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기준, 유어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수량 및 유어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가 그 유어장을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지 아니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안 제139조)

개정안은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섬에 대하여도 「섬발전촉진법」 제2조제1항[84]에 따른 개발대상섬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발대상섬에 대하여는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각종 섬발전사업 등이 추진되는 바, 개정안은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이에 대하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한정된 섬발전사업 재원에 따른 국가예산의 효율적·합리적 배분 필요성,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발대상섬 지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경우 생활환경이 열악한 다른 시도의 섬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140조)

개정안은 수산종자산업[85]의 종류, 시설기준, 허가우선순위 등 「수산

---

84) **「섬 개발 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섬"이란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2. 22.>
1.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2.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섬

85)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2. 18.>
1. "수산종자"란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2. "수산동물종자"란 수산동물의 정액, 알, 치어, 치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산식물종자"란 수산식물의 씨앗, 포자, 영양체인 잎·줄기·뿌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수산업법」 제46조제2항[86]에 따른 지역특화어종 시험어업계획 승인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의 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해양수산부는 전국을 조업지역으로 하는 근해어업의 특성상 권한이양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고, 전북자치도의 시험어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안 제141조부터 제143조까지)

개정안은「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2항[87],「낚시 관리 및 육성법」

것을 말한다.

4. “수산종자산업”이란 수산종자를 연구개발·보존·육종·증식·생산·유통·수출·수입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86) **「수산업법」**

제46조(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상태와 어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7조·제40조·제43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어업 외의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어업자, 제1항에 따른 신청자 및 시험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험어업계획을 세워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제1항·제4항[88]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의 제한 및 금지, 낚시어선업 신고요건 및 행정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업법」에 따른 유어장 지정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낚시어선업 및 유어장과 관련된 개정안의 규정들은 「제주도법」 제253조 및 제293조[89]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는 전북자치도의 어촌활력 및 낚시어선업 발전·증진 필요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전국적 기준에 따른 양식장 관리 필요성, 수산자원 남획가능성,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87)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② 면허권자는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양식업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식업의 종류와 양식장의 면적 또는 양식수산물의 종류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과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어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8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낚시어선업의 신고) ①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대상·규모·선령·설비·안전성 검사, 선장의 자격, 전문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신고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신고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절차와 신고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89) **「제주도법」**

제253조(유어장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유어장(遊漁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어장의 일부에 대하여 유어장(遊漁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에 대해서는 「수산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기준, 유어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방법·수량 및 유어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가 그 유어장을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지 아니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93조(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특례) 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제3항, 제38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해양수산부는 안 제141조의 경우 양식장 관리선 사용에 관한 사항은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조정·관리 중이며, 특례 규정 적용 시 지역·업종 간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각종 점용·사용료, 개발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4조부터 제149조까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4조(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징수 특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북자치도의 수입으로 한다.
<신 설>	**제145조(계약의 방법에 대한 특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내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계약 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146조(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특례)**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자치도에서 기업유치, 투자촉진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민간 또는 공공사업에 부과되는 부담

현 행	개 정 안
	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제147조(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특례)**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및 시·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해서도 고향사랑 기부금(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②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및 시·군은 법인에 대하여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③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및 시·군에 대하여는 개인별, 법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48조(혁신도시 지정신청)** ①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할구역 중 혁신도시(「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역의 혁신도시 지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9조(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① 도지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 혁신도시 외 지역을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규정된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적용한다.

(안 제144조부터 제147조까지)

개정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점용료·사용료의 80%를 전북자치도의 수입으로 하고(안 제144조), 전북자치도 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계약방법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며(안 제145조), 전북자치도에서 추진하는 민간 또는 공공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46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대하여도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안 제147조) 개별법 적용의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안 제144조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발생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는 국가수입이며, 점용·사용료는 수산발전기금으로 편입·운용되고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145조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체계의 형해화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146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각각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불균형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147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아직 제도도입 초창기인 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기부강요 및 경쟁과열 등 부작용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148조 및 제149조)

개정안은 도지사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북자치도의 혁신도시 외의 지역을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혁신도시는 국가정책에 따라 각 시·도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비수도권의 시·도별로 균형있게 지정·운영되고 있는 점,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점[90]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현재도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

90) 공공기관 2차 이전…수도권과 지역 민심 '두 개의 산' 넘을까?, 한겨레21, 2023. 8. 22.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54268.html

체는 개발예정지구 신청이 가능한 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지역 성장거점 조성·지원이라는 혁신도시의 조성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라. 생태자원의 현명한 활용(제4장, 안 제150조부터 제162조까지)

(1) 생명경제 녹색도시의 조성 등(안 제150조부터 152조까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0조(생명경제 녹색도시의 조성)** ① 국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선도적 실현과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를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이념이 모범적으로 구현된 도시(이하 “생명경제 녹색도시”로 한다)로 조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전북자치도를 생명경제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탄소중립 시범사업, 녹색기술산업 및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사업 등의 녹색성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명경제 녹색도시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51조(지역특화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 등)** ① 도지사는 주민자치적인 환경보전 참여 및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체험환경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의 환경교육계획 시행이 국민의 환경보전의식을 향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

현 행	개 정 안
	우에는 해당 시범도시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고 환경교육도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52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환경 및 생태자원의 적극적인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원은 전북자치도 귀속분으로 한정한다. 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3.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6.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7.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먹는물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계 법률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8. 전북자치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전북자치도를 생명경제 녹색도시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지사가 주민자치적인 환경보전 참여 등을 위하여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 및 생태자원의 적극적인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각각 「강원도법」 제59조, 제62조 및 제63조[91]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환경부는 안 제152조제2항제1호·제5호와 관련하여, 환경개선

---

91) **「강원도법」**

제59조(탄소중립 녹색자치도의 조성) ① 국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선도적 실현을 위하여 강원자치도를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중점 지역(이하 이 조에서 "탄소중립 녹색자치도"라 한다)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강원자치도를 탄소중립 녹색자치도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 녹색기술 산업 및 기후변화사업 등의 녹색성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자치도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2조(환경보전협력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환경 및 생태자원의 적극적인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전협력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원은 강원자치도 귀속분으로 한정한다.

1. 「하수도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4.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5.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관계 법률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6. 강원자치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력기금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3조(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 ① 도지사는 주민자치적인 환경보전 참여 및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체험 환경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의 환경교육계획 시행이 국민의 환경보전의식을 향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범도시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고 환경교육도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담금은 관할구역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징수비용교부금은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각각 사용되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환경영향평가 등 권한 이양(안 제153조부터 156조까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3조(환경영향평가 권한이양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같은 법 제8조,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 제2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5조, 제46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6조,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한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한다. 1. 이 법 제15조, 제29조, 제35조, 제39조, 제43조, 제48조, 제56조, 제61조, 제66조, 제69조, 제82조, 제83조, 제106조, 제109조, 제111조, 제112조, 제113조, 제118조, 제139조, 제150조에 따른 지구, 특구, 산업단지, 복합단지 등에서의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지정·고시, 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등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를 포함한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제외한다.
<신 설>	**제154조(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자연경관영향평가 대상 사업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영향협의에 관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자연환경보전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 등이 자연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자치도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자연경관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은 「자연환경보전법」을 준용한다.
<신 설>	**제155조(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관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6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등 특례)**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건강영향항목의 추가·평가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등 권한이 기 이양된 강원자치도의

사례 및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강원자치도의 경우 「강원도법」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92]에 따라 법

92) **「강원도법」**

제64조(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사업(「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개발사업은 제외한다)
2. 사업지역에 강원자치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도지사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4조, 제2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66조, 제66조의2 및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④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에 따른 재평가기관에는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고시하는 기관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6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도지사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사항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및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66조(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이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심의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협의의 방법 및 절차, 자연경관심의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자연환경보전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도지사"로 본다.

제67조(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제64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기후변화평가의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시행 후 3년간 한시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항목의 추가·평가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일부 이양받았음.

참고로,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국가기능 존치가 필요하며, 현행법의 목적·취지 및 「강원도법」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개정안의 핵심적인 지구·특구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의 권한을 이양하되, 특례의 존속기한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3) 물·해양·공원관리 권한 이양(안 제157조부터 160조까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7조(수질오염총량관리 등 특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

제68조(「환경보건법」에 관한 특례) ① 제64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평가할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협의에 관한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69조(특례의 존속기한 등) 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24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24조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26조에 따른 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신 설>	**제158조(섬진강유역 물관리위원회 및 유역관리청 신설 특례)**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섬진강유역 물관리위원회 및 유역관리청을 분리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9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신 설>	**제160조(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자연공원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의 협의가 이뤄진 경우 같은 법 제4조의3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안 제157조, 제159조 및 제160조)

개정안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오염부하량 할당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변경승인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자연공원법」에 따른 도립공원의 지정 해제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각각 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개정안의 도립공원 지정해제 권한의 이양에 관한 부분은「제주도법」제366조제1항[93]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는 통일적 기준에 따른 오염총량제 등 운영 필요성,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환경부는 안 제157조의 경우 수질오염총량제는 전국에 걸친 통일적 체계와 원칙에 따라 운영될 필요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해양수산부는 안 제159조의 경우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기 위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158조)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섬진강유역 물관리위원회 및 유역관리청을

93)**「제주도법」**
제366조(도립공원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자연공원법」 제4조의3제2항 및 제73조의2제3항(도립공원에 대한 권한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재 섬진강유역 물관리위원회 및 유역관리청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영산강유역관리청 등과 통합·운영중에 있음.

섬진강유역 물관리위원회 및 유역관리청의 별도 설치는 각각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사항으로서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입법권 및 정부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정부의 자율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유역관리청의 경우 환경부의 하부조직인 바, 정부조직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제 개정을 통해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환경부는 현행과 같이 단일 위원회에서 유역간 물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 유역관리청 신설의 경우 조직 내 타 기관과의 유역 대비 관할면적, 유역관리 효율성 및 환경관리 대상사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각종 부담금 징수비용 특례(안 제161조부터 163조까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1조(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특례)**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위임위탁에 따라 발생하는 징수비용에 대하여 전북자치도에 징수된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50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2조(대기·폐수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등 특례)**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 배출부과금을 전북자치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1. 도지사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같은 법 제35조의3에 따라 조정하여 부과한 부과금 및 가산금 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의 비율(이하 “징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30 2. 징수비율이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40 3. 징수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 ② 환경부장관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 배출부과금을 전북자치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1. 도지사가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부과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 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징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30 2. 징수비율이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40 3. 징수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징수한 부과금 및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가산금의 100분의 50 **제163조(수질개선 부담금 징수비용 특례)** 환경부장관은 「먹는물관리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징수된 개선부담금 전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에서 부과·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폐수배출부과금 및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한 환경부의 징수비용 교부비율을 상향하려는 것임.

이에 대하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징수비율 확대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환경개선특별회계[94]의 재원감소에 따른 각종 환경개선사업의 축소가능성,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환경부는 안 제161조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훼손 우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일관된 법규정 적용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안 제162조의 경우 재정당국과의 협의

94)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정부는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회계는 환경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제46조(회계의 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가산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총량초과과징금·가산금
4. 「먹는물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가산금
6.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가산금
1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및 제20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거쳐 각 호의 수치에 대한 적절한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163조의 경우 현재 정부차원에서 수질개선부담금 관리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5. 자치권 강화(제5편, 안 제164조부터 제210조까지)

가. 자치 조직과 인사 보장(제1장, 안 제164조부터 제175조까지)

(1) 자치조직권 특례 등(안 제164조 및 제165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4조(자치조직권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2.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3.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원이 증가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국가와 전북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도지사는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제165조(국가와 전북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기간·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는 국가정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전북자치도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제2항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며, 각각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음.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제주도법」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95]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도입여부는 전북자치도의 조직권 확대 필요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관계기관 의견 및 현재 중앙지방협력회의 차원에서 전북자치도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강원도법」의 경우 개정안과 유사한 규정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제외되었음.

또한 행정안전부는 전북자치도 출범에 따른 사무 특례 확정 후, 중

---

95) **「제주도법」**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02조제3항, 제103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25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
2. 부지사의 수와 사무분장
3.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4. 지방공무원(도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을 포함한다)의 정원기준
5.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6.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부지사 1명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1. 1. 12.>

③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부지사 1명 외에는 제주자치도에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제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도지사는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도서관법」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의 직렬은 도조례로 정하되,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대된 사무량에 대한 분석 등을 거쳐 자치조직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정원·승진·승급·채용 등 특례(안 제166조부터 170조까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6조(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특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소속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인건비성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67조(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 특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에서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제168조(특별승급 특례)** ①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에 따른 특별승급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제2항 및 제78

현 행	개 정 안
	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을 1호봉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매년 전북자치도 근무 공무원 총정원의 100분의 1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인원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급심사와 운영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169조(공모직위 및 개방형직위 지정·운영 등 특례)**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위별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는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모직위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3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의 지정·임용요건과 그 절차·시험실시기관 및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도조례로 정	**제170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특례)**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보 임용을 면제한다.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96]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에 대하여는 인건비성 예산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기준인건비제[97]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2항, 제45조제2항[98]에도 불구하고 우수공무원의

---

96)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97) 지방자치단체가 기구·정원에 수반되는 인건비성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98)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8조 및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승진 의결 대상자로 할 수 있다.

1.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
3. 제78조에 따른 제안을 채택하고 시행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운영

특별승진요건, 특별승급 등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도지사가 공모직위 또는 개방형 직위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의 인사, 승급, 채용, 공무원 정원운영 등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공직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로,「제주도법」제47조제7항, 제49조, 제54조 및 제55조[99]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전북자치도의 인사운영 자율성 확대 필요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할 때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
② 특별승진임용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수당과 제76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9) **「제주도법」**

제47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⑦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3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의 지정·임용요건과 그 절차·시험실시기관 및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①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성 총액 등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54조(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에서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5조(특별승급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법」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에 따른 특별승급은 같은 법 제45조제2항 및 제7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을 1호봉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시킬 수 있는 사람은 매년 제주자치도 근무공무원 총정원의 100분의 1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인원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급 심사와 운영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참고로, 「강원도법」의 경우 안 제166조와 유사한 규정(기준인건비제 배제 특례)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제외되었음.

또한 행정안전부는 안 제166조부터 제169조까지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정부 조직인력 기조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의 필요성, 특별승진 및 채용과정에 요구되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상 객관성 및 타당성, 방만한 특례운영에 따른 인사운영의 공정성 저해 우려,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각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도의회 조직 및 의원정수·선거 등 특례(안 제171조부터 175조까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1조(도의회기구 및 정원 등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 및 제12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2.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 기준 ② 도의회의장은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2조(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원 및 시·군의회의원

현 행	개 정 안
	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도의 경우 5급 이하, 시·군의 경우 6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173조(도의회의원의 정수 특례)** ①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도의원의 정수를 산정하고,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지역구 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이 되도록 전단의 도의원의 정수에 추가하여 정한다. ② 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도의원정수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신 설>	**제174조(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과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그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공직선거법」 제26조 및 같은 법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제175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175조(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특례)** ①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둔다. ②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안 제171조)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 제103조제1항, 제125조제1항·제2항은 전문위원, 사무직원의 수,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이며, 각각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음.[100]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주도법」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101]를 상당부분 참

---

100) **「지방자치법」**

제68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한다.

③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01) **「제주도법」**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02조제3항, 제103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25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

2. 부지사의 수와 사무분장

3.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4. 지방공무원(도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을 포함한다)의 정원기준

고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도입여부는 전북자치도의회의 인사권 확대 필요성, 인사권 확대에 따른 방만한 인사운영 등 부작용 가능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강원도법」의 경우 개정안과 유사한 규정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제외되었음.

또한 행정안전부는 전북자치도 설치에 따른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 확대 수준, 인사권 확대에 따른 비효율적 조직 운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5.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6.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부지사 1명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1. 1. 12.>

③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부지사 1명 외에는 제주자치도에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제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도지사는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도서관법」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의 직렬은 도조례로 정하되,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안 제172조)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102)]

또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103)]은 시·도와 시·군·구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을 각각 6급 이하와 7급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①전북자치도 및 도 내 시·군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를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범위”로 확대하고, ②전북자치도 및 도 내 시·군의회 소속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을 각각

---

102)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5급 이하, 6급 이하로 각각 상향하며, ③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먼저, ①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수 확대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의 도입 경과[104],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다음, ②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 상향은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행업무의 특성 및 난이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105], 강원자치도의 경우에도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삭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마지막으로, ③하위규범 위임 대상 변경과 관련하여, 개정안과 같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할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전북자치도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방공무원의 임용 절차 등에 관한 일반 규정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는 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10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 4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 당시 제주자치도의 경우 도의회 정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정책연구위원을 두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되었음.

105) 제주도는 5급으로 정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업무 지원을 위한 하급 실무직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발생한다고 함.

참고로, 「강원도법」의 경우 개정안과 유사한 규정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제외되었음.

또한 행정안전부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취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에 대한 주민·지역언론 등의 공감대 형성 여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역할·권한범위, 추가재정소요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173조부터 제175조까지)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 단서 및 제4항[106]은 자치구·시·군별 지역구시·도의원 최소정수는 해당 자치구·시·군의 인구가 5만명 미만인 경우 1명, 5만명 이상인 경우 2명으로 하면서, 비례대표시·도의원은 지역구 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6조제1항[107]은 지역구시·도의원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공직선거법」 별표

106) **「공직선거법」**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①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

④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다만, 산정된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

107) **「공직선거법」**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①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市·道議員地域區"라 한다)는

2와 같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①전북자치도 내 시·군·구별 도의회의원 최소정수는 인구에 관계없이 2명으로 하고, 비례대표의원정수는 도의원정수의 20%로 하면서, ②도의회의원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먼저, ①도의회의원 정수의 특례와 관련하여,

현재 지역구도의원정수는 36인이며, 도 내 시·군 중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에 각각 1인씩의 도의회의원정수가 배정되어 있으므로, 최소정수 충족을 위해 이들 지역에 추가 의원정수가 배분될 경우 지역구도의원정수는 총 42인이 될 것임.

그런데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정수 현황을 보면, 지역구의원정수가 36인 이상인 시·도는 서울(101), 부산(42), 인천(36), 경기(141), 전남(55), 경북(55), 경남(58), 강원(44), 충남(43) 등 9곳으로, 강원도를 제외하면 모두 전라북도보다 인구수가 많음.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하나의 自治區·市·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하며, 行政區域의 변경으로 國會議員地域區와 行政區域이 合致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行政區域을 말한다)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1명으로 하며, 그 시·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현행 시·도별 지역구의원정수 및 인구수[108]>

(단위: 명)

시도	인구수	지역구 정수	시도	인구수	지역구 정수	시도	인구수	지역구 정수
서울	9,570,210	101	광주	1,443,406	20	경기	13,598,766	141
부산	3,359,266	42	대전	1,455,336	19	강원	1,539,032	44
대구	2,393,179	29	울산	1,124,613	19	충북	1,599,140	31
인천	2,955,354	36	**전북**	**1,791,536**	**36**	충남	2,123,365	43
경북	2,629,979	55	전남	1,836,262	55	경남	3,321,460	58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자치도에 한정하여 지역구 도의회의원 최소정수의 특례를 따로 규정할 경우 시·도별 인구수의 추이에 비해 전북자치도의의원정수가 과다해져 시·도간 의원 1인당 주민대표성의 편차가 커지고,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례[109]에 따라 지역구도의회의원선거구 획정시 준수해야 하는 인구편차 상하기준(3:1)에 배치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바,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다음, ②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도 조례를 통한 선거구획정 특례와 관련하여,

시·도의원선거구의 경우 각 시·도주민의 대표인 시·도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구인 만큼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시·도별 개별성 및 특수

108) 인구수는 선거구획정의 기준이 되었던 2021. 10.말 기준 인구임. 제주도, 세종시는 제외
109) 2014헌마189, 2018. 6. 28.

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대 전북자치도에 설치되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임.

다만,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신설될 경우 도의회의원 및 시·군의회의원선거구획정 단계가 '1)국회의 의원정수(도의원정수 및 도내 시·군의원총정수) 확정 및 도의원선거구획정 → 2)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시·군별 기초의원정수 분배 및 시·군선거구획정'의 2단계에서 '1)국회의 의원정수 확정 2)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도의회의원선거구 획정 → 3)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자치구·시·군선거구 획정'의 3단계로 변경되어 기초의원선거구획정 절차가 복잡화되고 지연될 우려가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다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강원도법」의 경우 개정안과 유사한 규정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제외되었음.

또한 행정안전부는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국회 정개특위 등 논의결과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안 제173조의 경우 시·도의원 정수에 대한

시·도간 형평성 문제의 발생이 우려되며, 안 제174조·제175조의 경우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 절차에 모순 및 절차적 모호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임.

나. 자치 행정의 확대(제2장, 안 제176조부터 제185조까지)

(1) 통합지방자치단체 특례 등(안 제176조부터 제179조까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6조(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안의 2개 이상의 시·군의 통합은 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기간을 10년으로 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및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추가 지원 기간을 20년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7조(특별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특례)** ①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내에 설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재정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나 도지사가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전북자치도는 그 사무 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8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구역 특례)**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폐치분합의 결과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9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등 특례)**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경쟁력 제고와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전북자치도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전북자치도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의 전북자치도 이관에 관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지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

현 행	개 정 안
	다.

(안 제176조)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통합 후 향후 4년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통합 이전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보정할 수 있고,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하며, 통합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간 세출예산의 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10]

---

1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시·군·구의 통합절차)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투표법」 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5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제52조(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①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합한 금액보다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이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통합 지방자치단체가 1월 1일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를 말한다)부터 4년 동안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매년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의 요건·기간·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2025년 12

개정안은 ①도지사 또한 도 내 시·군의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②도 내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보정기간을 10년으로 하면서, ③도 내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기간을 20년으로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해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광역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 삶의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의 내용 중 재정관련 특례는 다른 통합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한정된 지방교부세 예산의 효율적 배분 필요성,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안 제176조제2항·제3항의 재정관련 특례의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월 31일까지, 충청북도 청주시의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54조(예산에 관한 특례)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출예산의 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8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한다. 다만, 제53조는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안 제177조)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에 설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교부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특별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법」제199조[111]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로, 2022. 1. 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음.

그러나, 도입 이후 현재까지 설치·운영중인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는 상황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또는 보조금 교부의 필요성을 검토할만한 충분한 사례가 축적되지 못한 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지방자치법」제206조[112]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

111)「지방자치법」

제199조(설치)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구성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2)「지방자치법」

제206조(경비의 부담)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사무처리의 수혜범위 등을 고려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참고로, 지방교부세 교부대상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113]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

또한 행정안전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경비의 부담원칙, 지방교부세 별도교부시 발생하는 중복지급의 문제,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자치단체이므로 현재도 보조금 교부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178조)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114]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내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을 폐치분합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의 자율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 및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113)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2495호

114)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안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전북자치도를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조성하는 것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에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 폐치분합 승인권한의 이양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결기구인 지방의회의 고유한 권한[115]이므로, 집행기관인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배분과 상호견제 및 균형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제주자치도의 경우 행정체제의 특수성(단층제)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개정안과 유사한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 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읍·면·동 폐치분합은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사항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115)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안 제179조)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에 경쟁력 제고와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제1항), 지원위원회가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전북자치도 이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2항).

먼저, 제1항과 관련하여, 「정부조직법」 제3조제1항[116]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117]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시 지역적 특수성, 행정수요, 다른 기관과의 관계 및 관할구역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도의 경쟁력 제고와 도민의 복리 증진'은 특별행정기관의 설치목적 및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다음, 제2항과 관련하여, 「제주도법」에 유사한 규정[118]이 기 도입되

---

116) **「정부조직법」**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117)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특별지방행정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 ①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당해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두는 경우에는 지역적인 특수성, 행정수요, 다른 기관과의 관계 및 적정한 관할구역 등을 고려해야 한다.

118) **「제주도법」**
제26조(이양대상사무 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 ① 도지사는 제24조에 따른 이양대상사무

어 있고, 전북자치도의 실질적 지방분권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안 제1항에 대하여 현행 정부조직 관계법령에 따라서도 필요한 경우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의 경쟁력 제고, 도민 복리증진 등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목적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주민투표 특례 등(안 제180조부터 제185조까지)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제180조(주민투표 특례)** (현행과 같음)
제16조(주민참여 예산제도)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1조(주민참여 예산제도)**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	② (현행과 같음)

외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제주자치도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사무의 제주자치도 이관에 관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지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 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4조(특례부여 및 지원) ① 전북자치도의 시장·군수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시·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82조(특례부여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전북자치도는 특례를 부여받은 시·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사회협약) ① 도지사는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83조(사회협약)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사회협약의 체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1.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사	1.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항	
2.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항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현행과 같음)
③ 사회협약을 체결할 때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관련된 사안은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해외협력) 전북자치도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제·문화·교육·과학·기술·체육·환경·관광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교류할 수 있다.	**제184조(해외협력)** (현행과 같음)
제27조(국가공기업의 협조)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전북자치도에 소재한 기관에 한정하며, 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5조(국가공기업의 협조)**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공기업과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안 제180조부터 제185조까지는 조 번호의 이동 외의 내용은 모두 현행과 동일하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 자치 교육의 실현(제3장, 안 제186조부터 제196조까지)

(1) 교육지원청 설치 등 특례(안 제186조부터 제191조까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6조(교육지원청 설치 특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다.
<신 설>	**제187조(방송통신중·고등학교 독립 설치 특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3조의2, 제51조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은 공립 방송통신중학교와 공립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제188조(특성화고등학교 지정 특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중 특수목적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신청서의 제

현 행	개 정 안
	출, 교육감의 해당 학교 평가에 따른 지정 취소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신 설>	**제189조(특성화고 지역인재 채용 특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4제1항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 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일정 비율 채용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0조(지방교육 재정 특례)**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에 대하여 매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91조(학교신설 교부금 특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학교 신설을 대체하여 이전하는 학교 외에도 교육감이 학생배치계획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립학교 이전, 공립 통합·운영학교 이전을 추진하는 경우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기준에 포함한다.

(안 제186조)

개정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119]에도 불구하고

11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 외에 '자치구가 아닌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제주도법」 제80조[120]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며, 전북자치도의 교육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에 대하여는 인구수 및 학생수 감소로 인한 교육행정 수요 변동 추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강원도법」의 경우 개정안과 유사한 규정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제외되었음.

(안 제187조)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의 관계 규정[121]에도 불구하고 공립 방송

120) **「제주도법」**
제80조(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5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며, 교육장을 임명할 때에는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교육장의 자격, 공개모집절차, 후보자의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121) **「초중등교육법」**
제43조의2(방송통신중학교)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교육방법·수업연한,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중학교와 고등학교 부설의 형태가 아닌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라북도는 부설형태로 운영하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원이 본교와 겸임을 하여 본교의 학사운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독립된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설명임.

이에 대하여는 일반 학교를 다니지 못한 사람들에게 중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방송통신 중·고등학교의 취지·목적, 독립된 학교부지, 시설 및 교원 확보의 가능성,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안 제188조·제189조)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학교의 지정, 지정해제 등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도교육감에게 이양하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무원 채용시 전북자치도 내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일정비율 채용

제51조(방송통신고등학교) ① 고등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교육방법, 수업연한, 그 밖에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은 현재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에게 부여되어 있는 점[122],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의무채용에 따른 다른 학교 졸업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공공기관 등의 채용의 자율성,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2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1. 삭제 <2010. 6. 29.>
2. 삭제 <2010. 6. 29.>
3. 삭제 <2010. 6. 29.>
4. 삭제 <2010. 6. 29.>
5.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6.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7.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와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8. 삭제 <2010. 6. 29.>
9. 삭제 <2010. 6. 29.>
10.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

④ 교육감은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8., 2020. 2. 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제1항제6호의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①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신청서의 제출, 교육감의 해당 학교 평가에 따른 지정 취소에 관하여는 제90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본다.

참고로, 교육부는 안 제188조에 대하여 고입전형 단계에서의 사교육 영향, 학교·지역 간 교육격차 확대 우려, 특목고 등 지정(취소)의 절차적 적법성을 담보하는 통제장치 부재에 따른 교육감-학교간 갈등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토교통부는 안 제189조에 대하여 현행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어렵게 결정된 제도인 점, 현행 제도에서도 특성화고를 포함한 고교졸업(예정)자는 지역인재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점, 공공기관의 인력운용 경직화 및 경쟁력 저하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190조·제191조)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을 25%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배치계획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공립학교 이전, 공립 통합·운영학교 이전을 추진하는 경우 보통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의 교육재정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합리적 배분 필요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시·도교육청간 재정 균형,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지방교육재정 관련 특례(안 제192조부터 제196조까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2조(정원 책정 특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책정 등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는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1. 일반직 3급 이상의 정원 책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될 수 있는 교육전문직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교육감에 소속된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의 정원 책정 가. 본청의 과장·담당관(각각 일반직 3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보직되는 직위로 한정한다) 이상 나. 국을 설치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다. 직속기관의 부서장(일반직 3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보직되는 직위로 한정한다) 이상
<신 설>	**제193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전북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현 행	개 정 안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94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①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9조제4항(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5항(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5항, 제26조제3항, 제27조 및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장관령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95조(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①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4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2의제3항, 제60조의3제3항 및 제63조제3항·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43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경우 그 입학자격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96조(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농어촌유학(전북자치도 외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 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도교육감, 시장·군수는 각급 학교의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촌유학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안 제192조)

개정안은 일반직 3급 이상의 정원 책정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책정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권한[123]을 도교육감에 이양하려

12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정원 책정의 승인) ① 교육감은 일반직 3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 및 직렬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될 수 있는 교육전문직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교육감에 소속된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청의 과장·담당관(각각 일반직 3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보직되는 직위로 한정한다) 이상
2. 국을 설치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3. 직속기관의 부서장(일반직 3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보직되는 직위로 한정한다) 이상

는 것임.

개정안에 대하여는 3급 등 상위직급(국장)의 신설이 교육행정 및 조직체계에 미치는 영향, 총액인건비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안 제193조부터 제195조까지)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에 자율학교인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 등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도교육감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강원도법」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124]를 참고한 것으로

---

124) **「강원도법」**

제45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강원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①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9조제4항(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5항(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5항, 제26조제3항, 제27조 및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

보임.

다만, 안 제193조는 「강원도법」 제45조와 달리 초·중등학교 외 “고등학교와 특수학교”까지 자율학교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율학교에 적용받지 않는 「초·중등교육법」의 관련 조항에 “제23조제2항[125]”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조정이 필요해 보임.

참고로, 국가교육위원회는 안 제193조 중 제23조제2항(교육과정) 관련 부분의 경우 지역간·학교간·학생별 발생할 수 있는 교육 격차의 최소화 필요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196조)

개정안은 전북자치도 외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을

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①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4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2제3항, 제60조의3제3항 및 제63조제3항·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43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경우 그 입학자격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25)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체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학교로 전학하는 사례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도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강원도법」 제46조[126]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며,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지속가능한 자치 재정 확보(제4장, 안 제197조부터 제201조까지)

(1) 지방교부세 특례 등(안 제197조 및 제198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7조(지방교부세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북자치도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시·군 포함)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

126) **「강원도법」**
제46조(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농어촌유학(강원자치도 외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도교육감, 시장·군수는 각급 학교의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촌유학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에 100분의 125를 곱한 금액을 교부한다.
제8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98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특례) ----------위하여----------.

(안 제197조)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에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25% 만큼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의 재정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한정된 지방교부세 재원의 합리적 배분 필요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시·도간 재정 균형,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보통교부세 특례는 추가적 사무이양, 시·군 통

합 등 행정체계 개편 등을 전제하나 전북자치도는 이와 무관하며, 지방교부세 재원감소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198조)

현행법은 전북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별도 계정의 설치 목적 중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이 설치될 경우 계정 운용 목적 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2)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등(안 제199조부터 제201조까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9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된 용지매립 및 조성, 제7조에 따른 광역단위의 기반시설 설치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신 설>	**제200조(지방세 특례)**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7조제1항제3호, 제8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8조제1항제5호 및 제147조제3항,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 및 제106조제1항제4호, 「지방세법」 제19조제4호, 제30조제2항·제3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152조제3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201조(지방소비세 안분기준 변경 특례)** 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하는 지방소비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가중치에도 불구하고 가중치를 100분의 500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새만금법」에 따른 새만금기본계획에 포함된 용지매립 및 조성 등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관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전북자치도에 지급되는 지방소비세의 안분

비율[127]을 5%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지방세관계법령의 통일적·체계적 운영 필요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면제요건 완화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및 균형발전 필요성,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안 제200조 및 제201조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저하 및 혼선가능성, 납세협력비용 증가, 체납자 행정제제 실효성 저하 우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대한 영향,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마. 감사위원회의 설치(제5장, 안 제202조부터 제210조까지)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	제202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

127) 「지방세법」
제71조(납입)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현 행	개 정 안
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제21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도의회에서, 2명은 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	⑥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다.	
⑦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203조(감사위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제204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① ----------두되, 사무기구(국)의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은 일반직·특정직 국가·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대상·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205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치감사계획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장,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그 계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는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1.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에 대한 봉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1. (현행과 같음)
2. 제1호 외에 감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2. (현행과 같음)
⑥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전북자치도의 소속 직원이나 회계법인·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분석하게 할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자치감사 결과의 처리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	제206조(자치감사 결과의 처리 등)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되는 자치감사 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자치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징계·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도지사(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07조(징계·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감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23조(비밀유지의무)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8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등) ①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 및 제205조제6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신 설>	②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안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4.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5. 제209조에 따른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신 설>	③ 감사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재적위원

현 행	개 정 안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면직하거나 해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 설>	**제209조(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지방공무원법」 제8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제210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2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그 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사업·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와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감사원과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

현 행	개 정 안
	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재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재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재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감사담당공무원을 재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안 제204조)

개정안은 감사위원회 사무기구의 직원을 도지사가 감사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감사위원회는 전북자치도 소속 행정기구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안 제2항은 사무직원의 지위를 '일반직·특정직 국가·지방공무

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명권자의 조정에 맞추어 사무직원의 지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강원도법」의 경우 개정안과 유사하게 도지사가 감사위원회의 사무기구 직원을 임명하도록 하면서, 사무기구의 직원은 지방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인 특정직 국가공무원(임명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에 한정[128]하고 있음.

(안 제208조·제209조)

현행법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직무상 알게된 비밀의 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임기 안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하도록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감사위원회 위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려는 것임.

---

128) **「강원도법」**

제23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며, 사무기구의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은 지방공무원 또는 특정직 국가공무원(도지사가 임명하려는 직원이 소방공무원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개정안은「강원도법」제27조 및 제28조[129]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며,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안 제210조)

「지방자치법」제190조[130]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대상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

129) **「강원도법」**

제27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① 감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 및 제24조제6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안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4.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5. 제28조에 따른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감사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면직하거나 해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지방공무원법」 제8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30)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자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감사실시를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제주도법」 제139조[131]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며, 전북자치도의 사무집행에 대한 자율성을 증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가감독권 행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사전적·포괄적 합목적성 감사[132]가 인정되고 있는 점, 자치사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상호보완적 지도·지원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의 필요성, 국가행정의 통일성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강원도법」의 경우 개정안과 같은 규정이 국회 심사과정에

131) **「제주도법」**

제139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그 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사업·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와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감사원과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재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재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재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감사담당공무원을 재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132)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서 제외되었음.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한계, 지방자치단체 책임성 확보를 위한 외부감사의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6. 보칙 및 벌칙(제6편 및 제7편, 안 제211조부터 제219조까지)

가. 청문(안 제211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1조(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69조제8항에 따라 산악관광특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2. 제212조제1항에 따른 인가·승인·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개정안은 산악관광특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제212조에 따라 도지사가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의 각 호 외에 농생명지구 지정해제(안 제17조[133]), 산악관광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안 제73조[134]) 등의 경우도

133) **안 제17조(농생명지구 변경 및 해제)** ① 도지사는 정책 및 환경 변화로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농생명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34) **안 제73조(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① 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7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4조제5항에 따른 승인 신청 기간까지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7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유로 산악관광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에 관하여는 제72조를 준용한다.

처분대상에 불이익을 초래하므로[135], 개별 본칙 규정의 도입여부에 맞추어 관련 내용을 청문대상에 추가할 필요성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나. 개별 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안 제216조부터 제218조까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6조(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을 방해한 자 3. 제208조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사람
<신 설>	**제217조(국제학교에 관한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8조제2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④ 제3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35)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현 행	개 정 안
	2. 제88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4. 제9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폐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를 폐쇄한 자 ② 제9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국제학교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21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은 감사위원회, 국제학교 등과 관련된 개별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관련 본칙규정의 도입여부에 맞추어 조정이 필요해 보임.

7. 부 칙

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종전의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이 법에 따라 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종전 전라북도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서 전라북도,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지방의원, 전라북도 조례 및 전라북도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북도지사 또는 교육감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인가·허가 등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신청 등의 행위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법률 제1921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24년 1월 18일 당시 종전 전라북도 조례·규칙은 이 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조례·규칙이 새로 제정·시행될 때까지 계속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및 도조례에서 종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유효기간) ① 제108조는 2030년 1월 1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44조는 2025년 9월 1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안의 부칙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첫째,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이양받는 본칙이 도입되는 경우 그에 맞추어 적절한 적용례를 두어 권한의 이양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다른 법률의 개정 규정을 신설하여 다른 법률에서 전라북도, 전라북도지사 등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지도지사 등으로 개정하여 법률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전라북도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개정이 필요한 법률(예시)>

「국민연금법」

제27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제31조에 따라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수·순천 10·19사건”이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①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주된 영업소(이하 “본점”이라 한다) 소재지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5. 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구역

셋째, 전라북도의 폐지 및 전북자치도의 설치에 맞추어 전라북도의 관할구역에 존재하는 시·군의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전의 전라북도의 관할구역에 설치된 시·군은 이 법에 따른 전북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설치된 시 또는 군으로 본다.' 등의 경과조치를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넷째, 현행법 상의 일부 부칙규정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과 같은 '전부개정법률안'은 입법에 반영될 경우 종전 법률에 따른 부칙 규정들의 효력이 상실되는 바, 전부개정안의 입법화 후에도 해당 규정의 효력을 유지시키려면 해당 규정을 전부개정안에 반영해야 함. 개정안의 경우 법률 제1921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안의 논의경과 및 시점에 따라 반영이 필요한 부칙 규정의 범위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반영이 필요한 현행 부칙 규정>

제3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 법 시행 전 전라북도지사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4조(전라북도지사 및 도의회의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된 전라북도지사(전라북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라북도의회 의원은 이 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본다.

제5조(종전의 전라북도의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북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인가·허가 등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신청 등의 행위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

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북도의 조례·규칙은 이 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의 조례·규칙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북도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 및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소속의 직원 및 위원이 된다. 다만, 임기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새로 위촉·임면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북도의 사무와 전라북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그 소관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전라북도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여 온 재산, 기금, 금전 급부 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승계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가 승계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소관에 관하여 지정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문 의 처
02)6788-5334

[참고자료]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방향, 비전 및 주요 추진 과제[136]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방향 및 비전

1. 생명경제 실현을 위한 4대 자치권 구현

□ 금융, 인력, 농업, 환경 등 **4대 분야 자치권 확보**로 농생명, 청정에너지, 수소 등 전북의 특화산업인 생명산업 육성 및 기존 주력산업을 생명산업으로 전환하는 **생명경제 실현**

□ 4대 분야 자치권 구현 방향

분 야	자치권 제약 내용	자치권 구현 방향
금융	▸핀테크 관련 자산운용업 창업 규제로 차별화된 생태계 구현 한계 ▸금융전문대학원 신규 설립 불가(교육부)로 인해 금융전문인력 양성 공급 어려움 ▸새만금과 같은 대규모 부동산개발 수요가 있음에도 현행 금융규제로 인해 투자 유치 한계 ▸현행 금융중심지법상 금융기관을 전북으로 유치하는데 필요한 인센티브 제공 불가	▸자산운용 특화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금융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새만금개발 PF, 리츠, 부동산펀드 활성화 ▸국내외 글로벌 금융기관 유치 인센티브 제공
인력	▸고령화로 일한 근로자조차 없으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의 지역 권한 부재로 지역산업 붕괴 위기 ▸극단적 인구감소를 막을 유일한 방안으로 이민이 제시되나, 국가주도 이민정책으로 지역 실행 불가	▸지역 특화 산업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민 확대 환경 조성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술연수생, 우수 창업기업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 체류자격 제도를 국가와 협력하여 마련
농업	▸전통농업 방식에서 농생명산업으로 전환에 필요한 농지(농업진흥지역)의 효율적 활용 불가 ▸제한적이고 까다로운 농지 임대 대상, 임대 기간, 절차 등으로 귀농귀촌 및 첨단농업 활성화 미흡 ▸법률에 따른 농지소유 제한, 용도구역 행위 제한 등으로 융복합형 생명산업 도입과 진흥의 어려움	▸전통농업 중심의 현 농지 규제를 규제샌드박스 성격의 지구를 지정하여 해소 ▸청년창농 활성화, 첨단 스마트농업 육성 등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 구축 ▸지역의 자율적이고 특성화 전략에 따른 생명산업 육성이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
환경	▸환경영향평가 협의, 검토, 사후환경영향조사, 재평가 등에 따른 생물·청정자원 활용의 한계 ▸전북은 비도시지역 89.1%, 법정보호지역 29%이나, 타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 지역발전의 심각한 피해 ▸「금강수계법」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및 수변구역 지정 등으로 친환경 지역개발 불가능	▸농지·산악 많은 지역이 차별받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 등) 제도 개선 ▸새만금유역의 지자체 책임과 권한으로 하천 수질개선 등 자율 관리 ▸도립공원 지정·해제·축소 권한 일원화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친환경 개발 추진

136) 자료: 「전북특별자치도 발전방향 및 주요전략(안)」(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제1차회의 보고안건 자료) 중 발췌·재구성

2. 생명경제 도시 : 농도 → 생명산업 진흥 → 생명경제 실현

□ 생명경제 기반 구축

○ 생명경제도시 구현에 필요한 **금융·인력·농업·환경** 등 **4대 자치권***과 글로벌 SOC, 자치 행·재정 **권한 확보**로 생명경제도시 육성 환경 조성

* 새만금의 대규모 정부정책(투자) **성공 요인**으로 "**규제를 푼 결과**"로 언급 (MP, '23. 6. 27. 국무회의)

□ 생명산업 진흥

○ 전북이 가지고 있는 **농생명·의생명·청정에너지·생명서비스산업** 등 풍부한 생명자원과 첨단기술 융합을 통해 **생명산업 육성**

○ **친환경 모빌리티, 지속가능한 문화·관광, 친환경 소재·부품산업** 등 기존 주력사업에 생명요소를 가미한 **전환산업 진흥**

□ 생명경제 실현

○ 규제프리존이 가능한 새만금을 중심으로 글로벌 **신산업** 및 **특화산업** 선제적 집중 육성

- 수소,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산업 집적화로 **신산업 육성**
- 하이퍼튜브, 이차전지, 한류(케이팝), 금융산업(부동산) 등 각종 **정부정책의 선제적 실행**



3. 전북특별자치도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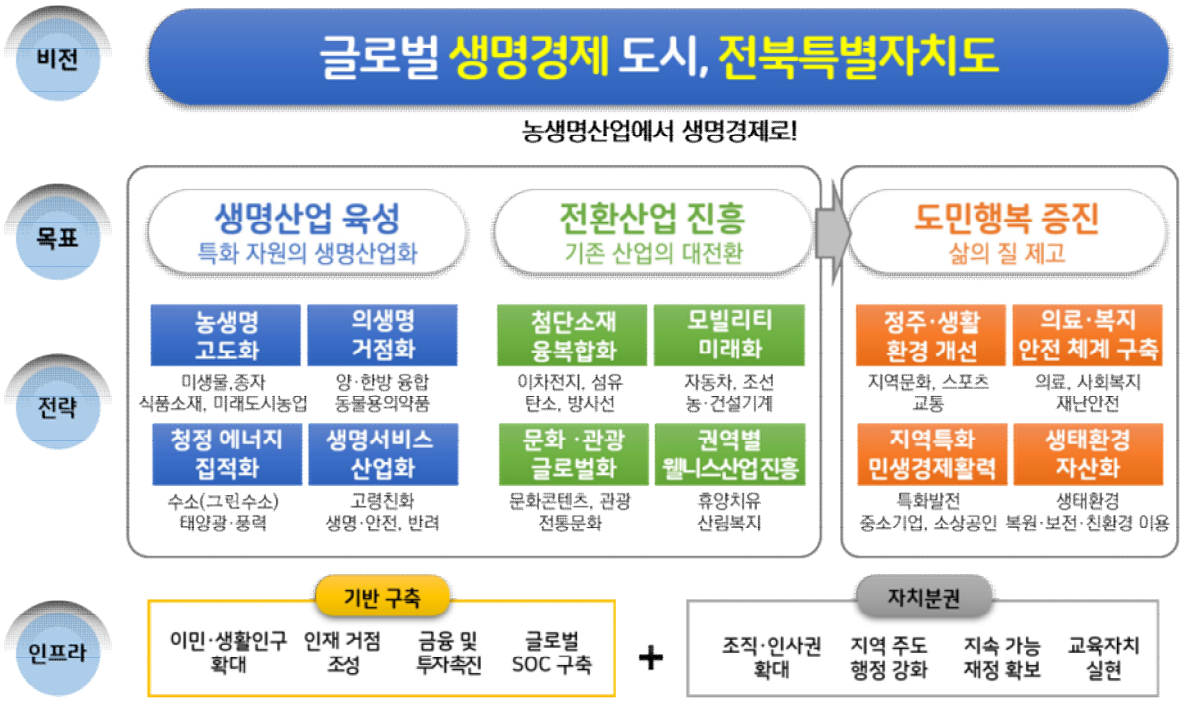
□ [비전]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

○ **(비전)** 기존 적자생존 경제를 **지속가능한 공존·공영의 생명경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대한민국 생명경제 중심을 넘어 **세계 생명경제**를 **선도**하는 전북특별자치도

○ **(생명경제) 생명과 친환경 성장**을 **목표**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한
공익적 부가가치 창출 활동

○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생명자원**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지속 가능한 생태적 기반을 유지하는 **공익적 부가가치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와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

<전북특별자치도 비전 체계>



분야별 주요 추진 과제

1. 생명자원과 첨단기술의 융합, ‘생명산업 육성’

□ 필요성

○ 생물·청정자원 등 생명자원에 바이오기술(BT)을 접목한 생명산업의 급부상으로 생명자원을 융복합한 전북형 생명산업 육성

- 농생명산업수도로서 **국제적 농생명산업 선도 및 거점화**
- 新산업으로서 고령사회 대응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등장 등

□ 목표 및 전략

○ **(목 표)** 생명(생물·청정)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생명산업 육성

생명산업 육성 전략	
▸ **농생명산업의 고도화**	▸ **의생명산업의 거점화**
▸ **청정에너지의 집적화**	▸ **생명서비스의 산업화**

□ 주요과제

○ **농생명산업의 고도화**

- **(농생명지구 지정)** 규제샌드박스 성격의 농생명산업 지구를 지정, 농림부의 ‘농생명 혁신자원 산업화’를 선도하는 거점으로 조성
- **(새만금농생명용지의 활성화)** 농업·농생명 전문가 중심의 새만금농생명용지위원회 설치와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 **(농생명산업 위한 농지의 활용)**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하여 농지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
- **(지역특화산업 육성)**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및 식품·바이오산업 활성화, 종자산업·곤충산업·꿀벌산업·반려동물사료산업·한우산업 등 지역특화 민간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

○ **의생명산업의 거점화**

- **(기술경쟁력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 바이오·의료기기·고부가가치식품 등 지역의 의생명 분야 기술경쟁력을 활용하여 지역특화형 라이프·디지털헬스케어, 동물용의약품, 바이오융복합 산업을 육성
- **(의생명 신규분야의 선도)** 의료용 복합재료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탄소소재 의료기기 R&D,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선도사업 추진

○ **청정에너지의 집적화**

- **(수소·그린수소 특화단지 육성)**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부안군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수소상용차 생산 거점지역 등과 연계한 수소 및 그린수소 특화단지를 지정, 수소거점도시로 육성
- **(신·재생에너지의 공공적 관리)** 공공적 관리를 통한 신·재생에너지의 지역발전 연계 및 주민참여 확대 추진

○ **생명서비스의 산업화**

-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육성)**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과 사회서비스 실증사업 및 인력양성을 위한 복합단지 조성

미래상

▸ (농생명산업) 청년창업 스마트팜 100ha, 청년창업농 10,000명 육성

▸ (의생명산업) 천연물신약·동물의약품·라이프케어, 1.7조 규모 사업화

▸ (청정에너지)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3GW, 38.29㎢)의 효과 극대화

▸ (생명서비스) 1조 규모오송의료복합단지5.6조 고령친화·사회서비스복합단지 조성

2. 기존 산업의 생명경제로의 전환, ‘전환산업 진흥’

□ 필요성

○ 적자생존 방식의 기존 주력(자동차·조선)산업을 생명경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모델을 구축하여 **한국형 전환경제로 확산**

- 기존 제조업과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 생명과 안전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문화관광 개발**

□ 목표 및 전략

○ (**목 표**) 기존 주력산업의 대전환과 K-문화관광의 국제거점 조성

전환산업 진흥 전략	
▸ 첨단소재의 융복합화	▸ 친환경 모빌리티 선도
▸ 문화·관광의 글로벌화	▸ 권역별 웰니스산업 진흥

□ 주요과제

○ **첨단소재의 융복합화**

- **(글로벌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 조성)** 기업 및 연구기관 집적화 등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사용후배터리 검사·인증 활성화와 기술개발 시범사업 등 추진

○ **친환경 모빌리티 선도**

-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 육성)** 연평균 3.1% 성장하는 자동차 대체부품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성능·품질 인증 등의 기반 구축
- **(미래 모빌리티산업 거점화)**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촉진을 위한 연구·시범운행 기반 마련, 무인이동체 기술상용화를 위한 종합실증단지 구축, 드론 실증시험구역 조성 등 모빌리티 거점화 추진
- **(차세대 철도기술 개발)**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와 연계, 차세대 철도기술을 위안 연구·교육기관 육성과 연구개발 진흥

○ **문화·관광의 글로벌화**

- **(케이팝국제교육도시 조성)** 케이팝인재를 양성하는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여 지속가능한 케이팝을 진흥하는 교육도시를 조성
- **(케이문화융합산업 진흥)** 한국전통문화에 첨단기술(CT)·디자인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케이문화융합산업을 진흥
- **(태권도특구·태권도도시 조성)** 태권도특구를 지정하고 태권도원의 국외 방문객 증가 사업을 추진하여 국제적인 태권도시를 조성
- **(친환경 관광산업 개발·진흥)**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지역특화 관광개발, 해앙문화유산 활용, 수상레저·마이스산업 진흥을 추진

○ **권역별 웰니스산업 진흥**

-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조성)** 산악지역의 청정자원을 활용한 산악관광특구 지정으로 상대적 소외를 겪는 동부권의 발전을 도모
- **(산림자원의 현명한 활용)** 산림복지지구 등 산림자원 활용 활성화

미래상

▸ (첨단융복합산업) 이차전지+폐배터리* 등 글로벌시장 10%(37조) 점유

* 이차전지 글로벌 시장 '40년 287조원, 폐배터리 글로벌 시장 '40년 87조원

▸ (친환경모빌리티) 하이퍼튜브 연계 고용창출 9천명, 모빌리티 新기술개발 1조

▸ (K-문화산업) 케이팝교육도시 누적('40)인구 7.3만명, 외국인 11,000명*

* 제주영어교육도시 : 인구 9,701명(2019~2020), 외국인 15%(1,465명)

▸ (웰니스산업) 동부권(6개 시군) 연평균 관광객 ('21년) 1,000만명→('30년) 1,500만명→('40년) 2,000만명

3. 사람 · 자본이 모이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기반 구축'

□ 필요성

○ 11개 시군이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으로 지정되어 광역소멸을 막을 인구 유입정책이 필요하며, 글로벌생명경제도시에 필요한 우수인재 양성과 자본(기업) 유치

- 지역경제 지표*가 전국 시도 중 최하위로 지역 여건 열악(도부 최하위)

  * 1인당 지역내총생산 등 (재정자립도 23.8%('22), 재정자주도 65.5%('22), 1인당 GRDP 30,912천원('21))

- 전북 소멸을 막기 위해 **사람·자본이 모이는 경제기반 마련**

□ 목표 및 전략

○ **(목 표)** 정주·생활인구 확대와 생명경제도시의 경제기반 구축

기반 구축 전략	
▸ 이민·외국인근로자 확대	▸ 글로벌인재 양성거점 조성
▸ 기업유치와 투자촉진	▸ 글로벌 SOC 구축

□ 주요과제

○ **이민·외국인근로자 확대**

- **(이민 확대 위한 광역비자 추진)** 지역 산업·대학 등이 겪는 인구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에 맞는 외국인 유입·정착 방안 마련

- **(외국인 근로자·창업 유입 확대)** 지역특화 체류자격 제도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유학생, 기술연수생, 우수창업기업 유치를 확대

- **(귀농어·귀촌 활성화)** 귀농어 및 귀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 **글로벌 인재 양성거점 조성**

- **(고급과학기술 인재 양성)** 생명경제 분야 혁신 선도할 고급과학

기술인재를 양성, 산업계와의 협력을 촉진하여 관련 산업 진흥

- **(생명경제 우수인재 양성)**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서 경쟁력과 생명경제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우수인재 양성 생태계를 구축

○ **기업유치와 투자촉진**

- **(생명경제 금융산업 육성)** 노후 연금 및 보험업과 생명경제도시 형성을 위한 부동산간접투자상품 및 연기금·보험 상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업 등 생명경제도시 특화 금융산업을 육성
- **(국내·외 투자유치 확대)** 국가식량생산기지인 농도전북을 생명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대규모 투자 및 우량기업을 유치

○ **글로벌 SOC 구축**

- **(글로벌 관문 기반 마련)** 글로벌 관문으로서 새만금공항 활성화
- **(생명경제 거점으로서 새만금 개발 촉진)** 생명경제도시의 거점으로서 새만금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새만금 개발 효과를 내륙으로 확산하기 위한 기반사업 추진

미래상

▸(인구) 10% 인구 유입으로 20년 전 전북인구 회복 * ('40년) 1,947천명

▸(경제_'40년) 기업유치 1,900개, 투자유치 64조 3천억, 일자리 15만개

4. 규제 해소와 필수 의료 제공 등 '도민 삶의 질 제고'

□ 필요성 및 목표

○ 응급환자사망률 격차[국토연구원(22년)] 등 수도권·대도시와 도농복합 지역 간 **문화·보건·교육 등 삶의 질 격차 완화를 위한 대책**

- 정부 중심의 농지·산림 규제로 경제기반 붕괴 및 인구 유출 심화
- 대도시와 동일한 기준 적용 등 지역특성 미반영 정책 개선

□ 목표 및 전략

○ **(목 표)** 도시 수준의 생활·의료 체계와 농촌 활력 기반 구축

삶의 질 제고 전략	
▸ **정주·생활 환경 개선**	▸ **농촌 필수 의료·복지 제공**
▸ **지역특화 민생경제 활력**	▸ **농지·산림의 현명한 활용**

□ 주요과제

○ **정주·생활 환경 개선**

- **(균등한 정주기반 구축)** 도시-농어촌 주민 모두 동등한 교통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불평등한 정주여건을 개선
- **(문화·여가 환경 마련)**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예술·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하는 환경(시설·인력·프로그램)을 제공

○ **농촌 필수 의료·복지 제공**

- **(필수 의료체계 구축)** 의료시스템 붕괴로 인한 농촌인구 유출을 막고, 농촌주민의 의료복지를 위하여 필수 의료체계를 구축·지원
- **(지역맞춤형 보건·복지·안전 시설 설립·운영)** 수요가 급증하는 보건·복지·안전시설에 대한 신속한 설립과 효율적 운영을 추진

○ **지역특화 민생경제 활력**

- **(중소기업·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역의 중소기업, 전통시장, 상점가를 활성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 사업을 개발·추진
- **(지역농·수산업 활성화)** 지역 농수산물의 구매 촉진, 어촌 개발과 활성화, 수산종자업 및 수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 **(지역경제 활력 제도 마련)** 지역기업 활력을 촉진하는 사업을 마련하고, 고향사랑기부금 등 기존제도를 활용한 지역발전전략 추진

○ **농지·산림의 현명한 활용**

- **(생명경제 녹색도시 조성)** 생명경제 가치를 실현하는 모델도시 및 지역특화 환경교육도시를 조성하고, 환경의 사회적 인식 확산
- **(지속가능한 생태자원 활용)** 농지·청정자원을 활용하되, 지속가능한 친환경 활용이 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

미래상

▸ (생활환경개선) 대중교통 취약 및 사각지역(법정동기준) ('21년)54%→('40년)30%

▸ (필수의료제공) 전국평균의 응급실 도착이전 사망환자 25~30명도부평균 60~70명

▸ (민생경제) 중소기업 등 맞춤형 지원 특례로 7년 생존율* 35%('40년)

* ('21년 기준 신생기업 7년 생존율) 전국평균 25.1%, 전북 25.2%

▸ (규제해소) 규제혁신으로 8개 군지역 지역경제력지수* 30 이상('40년)

* 지역경제력지수(KREI): 사업체수, 사업체연평균 변화율, 일자리, 지방소득세, 재정자립도 등 지표로 측정 ('22년 : 전국 완주군 35.8(전국 29위), 전주시 30.4(전국 42위))

5.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자치권 강화'

□ 필요성 및 목표

○ 자치단체 구성의 다양성 부족으로 기관구성 형태가 획일적인 기관 대립형이며, 재정여건 열악 및 지역 내 인구 불균형 등으로 지방시대 구현에 한계

- 최근 5년간('18년~'22년) 평균 재정자주도 63.8%(도부 최하위), '22년 재정자립도 23.8%(전국 최하위)
- 지역 내 인구규모 차이(인구최대지역/인구최소지역)가 '80년 6.5배에서 '00년 21.2배, '22년 30.5배로 확대

□ 목표 및 전략

○ **(목 표)** 안정적 재정과 실질적 지방분권 권한 확보

자치권 강화 전략	
▸ 자치조직·인사권 보장	▸ 지역주도 행정체계 강화
▸ 지역맞춤 교육자치 추진	▸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

□ 주요과제

○ **자치조직 및 인사권 보장**

- **(특별자치도 맞춤 자치조직 구성)** 특별자치도 설립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자치조직을 구성하고,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 **(지방의회의 자치권 강화)** 특별자치도 의회의 자치권한을 강화하는 기반으로서 의회기구 및 정원, 정책지원인력 등 제도 마련

○ **지역주도 행정체계 강화**

-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단체 통합·연계)** 생활권 지역 간 공동의 지역발전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통합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

- **(통합적 자치행정을 위한 체계 마련)**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자치권의 통합적 실현에 필요한 조직체계를 마련

○ **지역맞춤 교육자치 추진**

- **(자치교육을 위한 기관·조직 확대)** 특별자치도의 설립취지에 맞는 자치교육 확대에 필요한 기관 설립 및 적정 조직을 구성
- **(지속가능한 교육재정 확보)** 지속가능한 교육자치 재정을 확보

○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

- **(안정적인 재원 마련)**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에 필요한 자치재정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 **(신속한 국책사업 추진)** 광역소멸위기 극복과 생명경제 특화발전에 필요한 국책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환경 구축

미래상

▸ (지치단체 유형) 14개 시군→14개 시군+특별지방자치단체(1개소 이상)

*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99조)

- 광역 행정 수요에 대응해 공동으로 특정한 광역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새만금과 군산·김제·부안, 지리산권(남원·장수) 등을 대상으로 설치

참고 2040 기대효과 (미래상)

□ (경제) 기업유치 1,900개, 투자유치 64조 3천억, 일자리 15만개 창출

○ 기업유치 : (최근 5년) 연평균 70개 → ('24~'40년) 누적 1,900개

* 제주 사례의 10% 적용('06년~'19년 연평균 50% 증가), 전북 기업유치('18년~'22년) 연평균 70개

○ 투자유치 : (최근 5년) 연평균 2조 4,000억 → ('24~'40년) 누적 64조 3,000억

- 1,900개(기업유치 '24년 ~ '40년)) × 338.3억(최근 5년 기업 당 투자 금액)

○ 일자리 : (최근 5년) 연평균 5,963개 → ('24~'40년) 누적 약 150,000개

- 1,900개(기업유치) × 338.3억(최근 5년 기업 당 투자 금액) × 0.235명(최근 5년 1억당 고용인원)

○ GRDP(실질) : ('21년) 50조 3,982억(통계청) → ('40년) 84조 3,945억

- 68조 4,945억('40년, 산업연 추계) + 15조 9,000억('19년 1인당 부가가치 창출액 1.06억×150,000명)

□ (인구) 10% 인구 유입으로 20년 전 인구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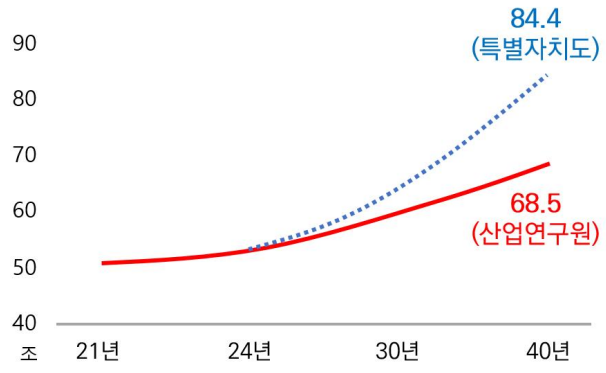
○ 인구규모 : ('22년) 1,770천명 → ('40년) 1,947천명 *↑10%(177천명)

- 인구유입 : 91,781천명(새만금 및 산단개발 등) + 68,678명(해외 유입) + 16,800명(기업 유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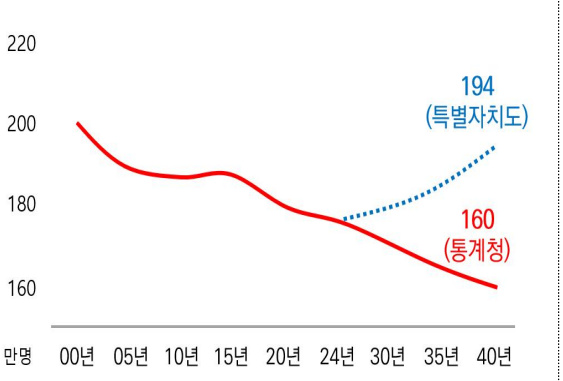
* 새만금 및 산단개발 등 : 국토부 승인(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

* 해외 유입 : 32,243명(전북 외국인 증가 추세) × 2.13배(제주 사례의 10% 적용)

* 기업유치 등 : 700개(특례 적용 추가 유치 기업) × 80명(평균 일자리) × 20%(외부 유입율)



GRDP(실질)



인구